

慶南地域의 烽燧

—경남, 부산, 울산지역 문헌자료—



2012. 11.

경남지역의 붕수

▣ 일러두기

1. 자료집 『慶南地域의 烽燧』는 경남, 부산, 울산을 포함한다. 각종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특히,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 한국의 지식콘텐츠(www.kripa.co.kr)에서 많은 활용을 하였다.
2. 각종 지도는 『조선 후기 지방지도(경상도)』, 『지승(경상도)』(서울대 규장각), 『한국의 옛지도』(영남대학교), 『창구도』, 『대동여지도』, 『해동지도』를 참고하고, 사용하였다.
3. 각종 문헌자료나 지도에 나타나는 봉수와 봉수군의 명칭은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실증자료이다.
4. 표지의 전면 사진은 『조선 후기 지방지도』에서 밀양의 추화산봉수와 분향산봉수가 함께 표기된 지역을 게재하였다. 후면 사진은 『해동지도』의 통영지도를 게재하였다.

퍼내는 말

경상남도에는 수많은 봉수자리가 봉우리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닷가의 봉우리에는 적의 침입을 조정으로 알리기 위한 봉수대가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어 우리의 국방의식을 살필 수 있습니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경상도에는 무려 134개소의 봉수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산성이 있다고 하여 산성산, 산성마을, 산성터란 지명이 있는 것처럼 봉수에 의하여 봉화산, 봉수산, 봉수골, 봉하마을 등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역사적 산물이기에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봉수가 있었던 자리에 봉수대를 복원해 가고 있지만, 과연 정확한 고증을 거쳐 잘 복원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가야문화권 지식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 여러 문화유적에 대한 연차적인 정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사유적, 가야고분, 성곽, 폐사지 보고에 이어 이번에는 봉수유적을 조사·정리·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 등 사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자료를 가지고 봉수자료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의 가라산봉수를 포함하여 126개소의 각종 봉수대 명칭이 확인되어 차후 이들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봉수유적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료를 모아 책자를 발간 하오니 일반 및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강 순 형

목 차

I . 들어가는 말	13
------------	----

II . 봉수(烽+燧)	17
--------------	----

1. 봉수의 개요	19
가. 봉수의 역사	19
나. 봉수의 설치목적	23
다. 봉수의 종류	25
라. 봉수의 조직	26
마. 봉수군의 운용	27
바. 봉수의 위치와 상거거리	28
2. 봉수노선	29
3. 봉수시설	31
가. 중심시설 - 연조, 연대, 망대, 방호벽과 호, 보관시설	34
나. 보조시설 - 주거지, 창고, 우물, 경작지	37

Ⅲ. 문헌자료와 지도 39

1. 경남의 봉수자료와 지도	41
2. 부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88
3. 울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95
4. 봉수관련 각종 문헌자료	103
5. 봉수 비치물목	165

Ⅳ. 참고자료 175

1. 참고문헌	177
2. 참고자료	186
3. 참고용어	196

표 목차

표 1.	봉수대 지역별 현황	30
표 2.	봉수대 노선별 현황	30
표 3.	경상도지역 봉수 일람표	72
표 4.	부산지역 봉수 일람표	92
표 5.	울산지역 봉수 일람표	99
표 6.	『여지도서』에 나타난 위천·금성봉수대 시설 및 비치물목	170

그림 목차

경상도 각 지역 봉수

그림 1.	창원	75
그림 2.	진주목	76
그림 3.	김해	77
그림 4.	거제	78
그림 5.	통영	79
그림 6.	칠원	80
그림 7.	웅천	81
그림 8.	진해	82
그림 9.	사천	83
그림 10.	삼가	83
그림 11.	남해	84
그림 12.	고성	85
그림 13.	합천	86
그림 14.	밀양	87

부산 각 지역 봉수

그림 15.	동래	93
그림 16.	기장	94

울산지역 봉수

그림 17.	울산	100
그림 18.	조선시대 봉수망	160
그림 19.	대동여지도의 봉수노선	161
그림 20.	청구도의 봉수노선	163



I. 들어가는 말

봉수(烽燧) 하면 5개의 연통에서 연기나 불이 피어오르는 서울 남산의 봉수대나 수원 화성봉돈을 이야기하게 된다.

봉수는 봉(불빛)과 수(연기)를 이용하여 그 위급한 상황 정도에 따라 정해진 체계대로 전달하는 고대의 통신시설물이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금관가야에서 수로왕이 허황후를 맞이할 경우에 횃불을 들어 신호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는 〈한중왕 현덕편〉에 관운장이 양양을 점령하한 대목에 ‘... 나 역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대가 이 일을 맡아보도록 하되 강기슭을 연이어 20리 혹은 30리마다 높은 언덕을 골라 봉화대를 세우고, 봉화대마다 군사 50명씩을 두어 지키도록 하시오. 동오군이 강을 건너오거든 밤에는 불을 밝혀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워 올려 신호하시오. 내가 그 신호를 보고 나가 적을 무찌르겠소.’ 하는 내용이 있다. 상설적인 봉수가 아니라 전시에 임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이 당시에 봉수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어릴 적 정월대보름날 달집놀이를 할 경우 앞서있는 저 건너 산에서 달집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서 우리의 달집에다 불을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불을 신호로 한 목시적인 전달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신호 등 연락도구가 무수히 많은 세상이지만, 옛날 연락방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당시에 연락을 꼭 이루어야만 하였을 상황과 그냥 무시하여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등 얼마나 많은 애로점이 있었을 것인가.

부산, 울산을 포함하는 경남지방에는 많은 봉수가 설치되고 철거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해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일본의 침입 등 해안이 어수선했을 경우 많은 상황이 중앙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해안의 연변 봉수가 많으니, 자연히 내륙지방에는 중간거점이 많이 생겨 그 상황을 중계하여 중앙으로 전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봉수의 흔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그 정확한 전달체계와 구조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록문화인 고문헌과 옛 지도 등에서 그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어 자료수집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차후 자료집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봉수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현장조사보다는 우선적으로 봉수제도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문헌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경남지역 봉수의 일단을 살펴본 후 다음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Ⅱ. 봉수(烽+燧)

1. 봉수의 개요
2. 봉수노선
3. 봉수시설

1. 봉수의 개요

가. 봉수의 역사

1) 봉수의 개념과 기원

烽燧는烽(햇불)과 燧(연기)로써 접경지역의 위급한 소식을 중앙에 전하던 것으로 현대적인 통신체제 이전의 통신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보낸 것으로 驛馬나 人便보다 시간상으로 단축된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이는 신속한 효용성으로 지방의 급변하는 민정이나 국경의 적황을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연락하던 것으로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을 목적으로 설치 활용된 통신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문명의 역사는 불의 사용을 근간으로 한다. 선사시대에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하여 난방, 요리, 방호에 이용함과 아울러 신호기능으로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봉수제도의 기원이 언제부터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선사시대부터 불을 다양하게 이용할 줄 알았음에 비추어 불 때 불빛과 연기는 중요한 통신수단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이미 주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전한시대에 봉수가 있었다고 하며, 점점 발달하여 당나라시대에는 완전히 제도화되었던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三國遺事』에서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 치세 중에 烽火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遺事』卷第二 奇異 第二 駕洛國記

후한 建武 24년(戊申, 48) 7월 27일 구간 등이 조회(朝會) 때 왕께 아뢰었다. … 그리고 유천간에게는 가벼운 배와 날랜 말을 주어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도록 명하고, 또 신귀간에게는 승점(勝點)으로 가도록 명하였다. 그때 갑자기 바다 서남쪽 모퉁이에서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붉은 깃발을 나무끼며 북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유천간 등이 먼저 섬 위에서 햇불을 들자 배는 재빨리 육지 쪽으로 달려왔다. 신귀간 등이 이 사실을 보고는 대궐로 달려와 아뢰었다. 수로왕은 이것을 듣고서 기뻐하였다.

(遂命留天干押輕舟 持駿馬 到望山島立待 申命神鬼干 就乘站 忽自海之西南隅 掛緋帆 張~~赤~~旗 而指乎北 留天等 先舉火於島上 則兢渡下陸 爭奔而來 神鬼望之 走入闕奏之 上聞欣欣)

또 『三國史記』를 통하여 백제는 온조왕 10년(B.C. 9)의 烽峴 싸움, 고이왕 33년(266) 8월의 烽山城 싸움 등으로 보아 이미 봉수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2) 봉수제의 성립

기록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봉수제의 출발은 고려 중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봉수제는 삼국시대보다 월등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高麗 仁宗 元年(A.D. 1123)에 宋나라 使臣 盧允迪와 함께 고려에 왔던 徐兢의 見聞錄(『高麗圖經』 卷35 海島2 黑山)에 봉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흑산은 백산 동남쪽에 있어 바라보일 정도로 가깝다. 처음 바라보면 극히 높고 험준하고, 바짝 다가서면 산세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앞의 한 작은 봉우리는 가운데가 굴같이 비어 있고 양쪽 사이가 만입(灣入)했는데, 배를 감출 만하다. 옛날에는 바닷길에서 이곳이 역시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었다. 관사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런데 이번 길을 잡음에는 여기서 더 이상 정박하지 않았다. 위에는 주민의 부락이 있다. 나라(고려를 말함) 안의 대죄인으로 죽음을 면한 자들이 흔히 이곳으로 유배되어 온다. 언제나 중국 사신의 배가 이르렀을 때 밤이 되면 산마루에서 봉화불을 밝히고 여러 산들이 차례로 서로 호응하여서 왕성(王城 개경을 말함)에 까지 가는데, 그 일이 이 산에서부터 시작된다.

(宣和奉使高麗圖經卷第三十五 黑山, 在白山之東南 相望甚邇 初望極高峻 逼近 見山勢重複 前一小峯 中空如洞 兩間有澳 可以藏舟 昔海程 亦是使舟頓宿之地 館舍猶存 今取道 更不~~北~~泊 上有民居聚落 國中大罪得貸死者 多流竄於此 每中朝人使舟至 遇夜於山顛 明火於燧燧 諸山次第相應 以~~北~~王城 自此山始也)

즉, 송나라 사신들이 배를 타고 흑산도에 도착하면 언제나 야간에는 항로의 주변에서 산정에 있는 봉수소의 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봉화는 순차적으로 밝혀서 임금이 있는 왕성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는 흑산도에서 왕성까지 봉수가 실시되어 사신이 도착한 사실을 중앙에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의종 3년(1149)에 봉수의 炬火數를 규정하고 봉수군에게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주고 감독책임자까지 배치한 사실은 서북면병마사 曹晉若이 임금에게 올린 글에서 나타나고 있다.

『高麗史』 卷81 志 卷35 兵1 兵制 毅宗 3년 8월조에

「... 서북면병마사 조진약(曹晉若)이 아뢰기를 “봉획의 법식을 정하여 평시에 밤에는 불을 들고 낮에는 연기를 피우되 각각 한 번씩으로 하고 2급(二急)이면 2회, 3급이면 3회, 4급이면 4회로 하고 매 곳에 방정

(防正) 2명과 백정 20명씩 두고 전례대로 각각 평전(平田) 1결(一結)을 주기로 합시다.”라고 하였다.

(西北面兵馬使曹晉若奏定烽獲式 平時夜火晝烟各一 二急二 三急三 四急四 每所防丁二 白丁二十人 各例給平田一結)

위의 글에서 볼 때 의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봉수의 격식이 규정되어 夜火와 晝煙으로 구분하였고, 적과 접근하는 변경과 해안지방의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거화수를 정하였다.

평상시 부근의 주민들이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고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1炬를, 변방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사태의 추이가 험악하게 진행될 때는 2炬, 적이 침입하여 곧 전투가 시작되려 할 때에는 3炬, 적과 아군이 접전하여 전황이 급박한 상황에는 4炬를 하였다.

따라서 의종 3년 曹晉若의 상주에 의거하면 이는 뒷날 조선 세종 때에 이루어진 시책과 같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각 봉수에서 정세의 危急에 따라 올리는 炬數와 烽燧를 지킬 요원의 배치 및 그들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 등을 정한 봉수 규정의 정비로 볼 수 있다.

『高麗史』卷81 志 卷35 兵1 兵制 「忠定王 三年 八月 置松嶽山烽獲所」

『高麗史』卷81 志 卷35 兵1 兵制 신우 3년(1377) 5월에 「강화에서 봉화를 낮에 계속 올리고 수도가 위급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원수를 동강과 서강에 파견하여 각각 주둔하게 하고 용사들을 거두어 모아 매 개인에게 피륙 50필을 주었다.」

(辛卯 三年 五月 烽火自江華_五舉不絕京城戒嚴遣諸元帥分戍東西江召募勇士官給布人五十匹)

즉 충정왕 3년(1351) 8월의 기록(置松嶽山烽獲所), 禘王 3년(1377)의 기록 등을 통하여 고려의 봉수제는 원나라의 지배력 강화와 왜구의 침입에 따라 점점 체계적으로 편성 강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3) 조선시대의 봉수

고려 말 왜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봉수제를 강화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 대에 이르러 이미 봉수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이는 봉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로 봉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봉수제는 세종 대에 이르러 종래에 계승되어 온 고려의 봉수제를 바탕으로 하고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炬火數 등 關係規式을 새로 정하며, 제도연변의 각 烟臺를 새로이 축조하고 나아가 烽燧線路를 일제히 획정하는 등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 ① 세종 1년(1419) 5월에 평상시의 1炬로부터 적과의 접전을 알리는 5炬의 炬火法과 관계요원의 근무 부실에 대한 죄를 묻는 규정을 정하였다.

- ② 세종 4년(1422) 8월에는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의 상계를 받아들이며 각도의 봉수처에 烟臺를 높이 쌓고, 그 위에 활쏘는 집을 설치하고 화포와 병기를 비치하여 적변을 주야로 간망토록 하였고, 12월에는 병조로 하여금 의정부 및 육조와 더불어 봉수를 정하게 하였다.
- ③ 세종 14년(1432)에 왕 스스로 우리나라의 외환은 북방에 있다고 하면서 연대를 높이 쌓고 방어에 필요한 물건을 갖추어 지키도록 하고 있다.
- ④ 세종 18년(1436)에는 4품 이상의 여러 관리가 건의한 制寇之策에서 연대축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세종 20년(1438) 정월에는 연대의 축조규정과 봉수군의 정원 및 교대근무 일수를 규정하고 도절제사가 연대축조를 감독하게 하는 등 북변연대의 축조가 진행되고 있었다.
- ⑥ 세종 20년(1438) 5월에는 왜구들의 초입지로서 요해지가 많은 전라도 진도군에 연대를 설치하는 등 변란에 대응토록 하고 있다.
- ⑦ 세종 26년(1444) 10월에서 익년 3월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된 烽燧救弊策은 봉수의 시설, 관장, 요원 및 그들에 대한 처벌, 행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봉수망 즉 경, 내지, 연변봉수를 유기적으로 정비한 일대 개혁이었다.

즉, 세종 초기에는 왜구와의 관계로 남방연변에서, 세종 10년을 전후하여서는 야인과의 관계로 북방연변에서 연대를 중심으로 한 봉수시설을 확충하고 세종 20년경부터는 다시 제주도 및 서남해안의 연대축조로 봉수역할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세종 28년부터 29년까지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봉수제 전반에 걸친 정비된 체제를 갖추어 봉수제 본래의 조직과 기능을 전국적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세종 29년경에 그 확립을 보았고 나아가서 『經國大典』의 봉수조에 실린 규정의 원형을 이루었다. 즉 「平時則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로 구분하여 사태의 안심과 위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 전후에 확정된 봉수선로는 『世宗實錄地理志』 등에 수록된 내용으로 그 면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전국적인 봉수조직이 편성되었지만, 봉수는 경비가 덜 들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적정을 오직 5炬만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는 애로점이 생겨 파발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봉수제는 점점 복구되었으며, 숙종 이후부터는 무너진 봉대를 다시 쌓고 봉수를 더 설치하기도 하였고, 봉수군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봉수제도의 근본적 모순과 운영상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봉수변통론 등)이 있었다.

봉수제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제도적인 보완을 거듭하면서도 봉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란이 발생하였을 때 봉수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로 즉 변란이

발생한 지역·적수·장비·이동경로 그리고 아군의 피해상황 등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봉수군의 신분문제로 국역부담이 무거웠던 신양역천의 계층과 일수만 채우면 방견되는 도형자가 후망을 맡았다는 것이 봉수운영의 부실을 가져왔고 봉수군의 근무규정으로 복무여건상의 문제가 자주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리적인 측면에서 우선 기후적인 제약으로 주로 봉수망이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안개·강수·흐린 날 등으로 연중 1/3 이상 봉수를 올릴 수 없는 실정과 지형적인 제약으로 봉수를 올릴 수 없는 경우 도보로 알리게 되어 변경의 급보를 알리는 데에 있어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평화가 지속할 경우 불근후망의 태도로 간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주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봉수제가 거의 무익한 존재로 되자 변보를 예지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걱정하면서 선조 30년(1597)에 왕이 봉수제의 개혁을 물었을 때 영사 김응남이 발군을 세워 급보로 보고함이 봉수보다 나았다고 함으로써 파발의 시행을 서두르게 되었다. 즉 동년에 승지 한준겸이 ‘명조의 예에 의거하여 변경의 문서를 전하도록 기발은 25리마다 1참을 두고, 보발은 30리마다 1참을 두는 파발을 설치’ 하도록 건의하여 서발(서울-의주), 북발(서울-경원), 남발(서울-동래)의 3대로를 근간으로 한 파발제도가 설립되어 실시되었던 것이다.

봉수제는 파발, 역참제도와 병행되면서 그 치폐를 거듭하다가 고종 31년(1894)에 동학, 갑오경장 등의 변화 속에 팔로봉수가 폐지되고 다음 해(1895) 7월 봉수군이 폐지될 때까지 지속되다가 현대적인 전화통신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나. 봉수의 설치목적

1) 봉수 설치목적과 기능

조선 전기에 봉수의 설치목적은 태종 6년(1406) 초적이 나오는 중요길목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상소를 통해 건의되기도 하였다. 이후 세조 10년(1464) 京畿忠淸全羅慶尙道 都巡察使 尹子雲의 진언에 “연대·봉화의 설치는 본래 후망을 통해서 변방의 일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듯이 봉수의 설치목적은 오로지 지방의 번고를 중앙에 전달하는 하의상달의 기능에 있었다.

이러한 봉수설치의 중요성은 조선 초기인 성종 19년(1488) 왕이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내려 보낸 馳書에 “봉수를 설치한 것은 변방의 경계를 알리기 위함”이나 중종 17년(1522) 전교에 “봉수를 설립한 목적은 변방

에서 일어나는 변을 알리기 위함” 등 하교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이외에 “봉수는 국가의 중요한 일”, “봉수의 설치는 변고를 알리기 위함”, “우리 국가는 삼면으로 적을 받아, 변경의 경계를 봉수가 아니면 속히 전달할 수 없으며, 순장도 또한 야경을 주관”, “봉수는 예나 지금이나 중대한 일”, “봉수는 중요한 일로 진실로 군사의 작전에 관한 것”, “봉수는 변방의 급보를 전하는 것”(정원의 진언), “변경을 알리는 데는 봉화보다 더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전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의 기록에서 보듯이 조선 전시기에 걸쳐 여러 신하들에 의해 봉수의 중요성이 누차 강조되었다.

2) 봉수 설치조건

조선 전기 봉수의 설치조건은 다음의 기사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태종 6년(1406) 동북면 도순문사의 상소에 초적이 나오는 중요길목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통해 도적이 주로 출몰하는 지점에 봉수의 위치가 건의됨.

둘째, 세종 14년(1432)에는 당시 국가의 환난이 북방에 있음을 강조하여 방비책으로 연대를 설치하고 소화포 외에 신포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대설치의 간격을 연화가 서로 바라보이는 것 외에 신포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는 거리로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시각과 청각의 가시권 내에서 서로 대응할 수 있는 곳을 봉수의 설치조건으로 하였음.

셋째, 문종 대에는 왕이 “우리나라는 산천이 험조하니 만약 높은 산이 아니면 멀리 바라볼 수 없겠다. 그러나 꼬불꼬불하고 멀어서 적당하지 못한 곳과 작은 산으로도 적당한 곳이 간혹 있으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의 하교를 통해 구체적인 봉화의 위치선정 지시가 내려졌다. 반면, 세조 10년(1464)에는 경기 충청전라경상도 도순찰사 윤자운(1416~1478)의 “연대·봉화의 설치는 본래 후망을 통해서 변방의 일을 보고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여러 도의 연대를 설치한 곳이 낮고 작아서 봉홧불을 서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 청컨대 여러 도의 도절제사로 하여금 연대를 순찰조사하여서 아뢰도록 하소서.”의 진언을 통해 조선 초에 경기도를 포함한 3남 지역에 설치된 연대는 대체로 그 위치가 낮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이 확인됨.

넷째, 연산군 대에는 동지사 안침이 고성현의 각 포구에 산이 높아서 두루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봉수를 쌓아서 포구로부터 주진에 알리고 주진에서 병영과 수영에 알리면 구원할 수 있다 하여 봉수의 설치를 건의 하였다. 따라서 이때 봉수 설치의 주된 요건은 해안과 인접하여 4방이 두루 조망되고 산이 높은 곳이 고려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안침의 건의를 통해 제시된 봉수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해당 주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짐.

조선 후기인 영조 33년(1757)에는 좌의정 김상로가 황해수사 최진해의 장계를 통해 본영 육로의 봉수는

앞뒤로 서로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성 안의 덕월산 가장 높은 곳에 봉수를 설치하지는 건의가 있었다. 이어 동왕 46년(1770) 병조참의 신일청의 상소를 통해 봉화의 신호가 통하느냐 막히느냐는 전적으로 돈대의 원근에 매여 있으므로 편의에 따라 추가로 봉대를 설치하여 중간에 후망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라고 한 것에 따라 간봉의 증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기록들이 확인된다.

여기서는 도적들의 출몰을 살필 필요성 제기, 시각과 청각의 가시권 내 설치, 봉수대 설치지점의 높이 문제, 해안과 인접하여 4방이 두루 조망되고 산이 높은 곳이 고려된 점에서 봉수의 설치 필요성과 조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 봉수의 종류

봉수는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과 연대의 설치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1) 전달수단에 의한 구분

烽은 밤에 불로써, 燧는 낮에 연기로써 알리는 방법이다.

원래 봉화는 夜烽만을 가르키는 말이었으나 널리 晝燧까지 포함한 뜻으로 쓰여져 고려 이래로 봉화라고 통칭되었고, 간혹 晝煙과 夜火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하였다. 야화보다는 주연이 바람, 비, 구름 등으로 가려질 경우 관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수로는 바람을 쉬이 타지 않는 낭분을 태웠으므로 낭연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낭연의 실례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봉수 비치물목에서 그 실례를 파악할 수 있다.

2) 연대설치에 의한 구분

조선시대 봉수는 경봉수인 목멱산봉수와 지방의 해안 및 변경지역에 설치되어 연대라고도 한 연변봉수, 그리고 육지내륙의 내지봉수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설치되어 지역 방위의 임무를 띤 권설봉수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가) 京烽燧: 전국의 모든 봉수가 집결하는 중앙봉수로서 서울 목멱산에 위치하여 木覓山烽燧 또는 南山烽燧라고 불렸다. 목멱산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햇불이 5개로 전국의 봉수를 신속히 보고 받는 곳이다.

(나) 沿邊烽燧: 해륙변경의 제1선에 설치하여 烟臺라 호칭한 것으로 그 임무수행이 가장 힘들었다. 위치상 적의 접근을 알리는 최초의 봉수대로 적의 공격 목표가 되기 쉬운 시설물이었기 때문에 유사 시에 대처할 수 있는 화기와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변봉수는 세종 20년(1438)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 內地烽燧: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중간봉수로 수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복리 봉수라고도 하였다.

(라) 權設烽燧: 조선 후기에 지방의 중요지역에 설치되어 지역방위의 임무를 가진 것으로 소수가 있다.

이밖에 직봉, 간봉이라는 구분이 있으나 이는 직선봉수와 간선봉수의 약칭으로서 봉수대 자체의 구분은 아니고 그 봉수가 위치한 선로상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봉수의 조직

(가) 경봉수

경봉수는 병조의 관장 하에 실무는 무비사가 담당하였다. 아울러 경봉수인 목멱산에는 매 소마다 봉수군 4인, 오원 2인 등 총 30인을 배치하였다. 이에 병조는 사람을 지정하여 봉수를 망보게 하다가 다음날 새벽에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보고하였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야간이라도 즉시 보고하게 하였다.

그 뒤 목멱산의 봉수장이었던 충순위군이 혁파된 후에는 금군 중에서 녹봉이 후한 자로 하여금 윤번 수직케 하였다. 다음 목멱과 무악 두 산의 봉군 30호에는 매 호마다 각각 보 3명씩을 지급하여 모두 120명을 24번으로 나누었다. 아울러 매번 5명이 6일마다 교대 입번케 하였다.

(나) 내지 · 연변봉수

지방은 각 도의 관찰사 밑에 수령이 진장을 겸직하여 각 부 · 목 · 군 · 현별로 봉수의 오장과 봉수군을 지휘 · 감독토록 조직되었다. 연변봉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10인, 오장 2인 등 총 60인, 내지봉수에는 매 소에 봉수군 6인, 오장 2인 등 총 40인을 배치하여 상 · 하 2번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아울러 내지 · 연변봉수의 보고체계는 감고가 유사 시에는 즉시, 무사 시에는 매 10일에 1회 소관 진장에게 보고하였다. 수령은 감고의 보고를 받으면 유사 시에는 즉시 관찰사와 병조에 보고하고, 무사 시에는 관찰사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아울러 매 계절 끝 달(3·6·9·12월)에 병조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무의 양호

여부는 수령의 근무 성적과 직접 관련되어 승진은 물론 파직 또는 논죄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정조 10년(1786) 헌납 김광악의 상소로 봉수의 법은 매우 중함에도 봉수를 신중하게 하지 않은 충청수사 이연필을 파직하기도 하였다.

영조 때에 공포된 『續大典』에는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품관 각 4인을 특별히 정하고 감고에 서임하여 2번으로 교대하면서 밤낮으로 봉수 올리는 것을 점검토록 하였다.

마. 봉수군의 운용

봉수군은 항상 봉수에 상주하며 후망과 다음 봉수로의 전보와 같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하였다. 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봉졸·봉화간·봉화군·간망군·간망인·후망인·해망인·연대군·수직군·봉수군 등이 있다. 이 중 해망인·연대군·수직군의 용어는 연변봉수군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 봉수군의 신분은 “봉화간은 봉화를 드는 자이니, 국속에 신량역천인 자를 혹은 간 혹은 척이라 칭한다.”의 기록을 통해 신분은 양인이나 천인의 역에 종사하였던 중간계층이었다. 이들 봉수를 담당하였던 계층은 고려 후기에 죄지은 자를 봉졸로 편배하면서 천시되어 조선시대 신량역천의 계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典通編』(1785)에는 봉수군 외에 오장을 봉수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임명토록 규정함으로써 조선 후기에 신분은 법제상 양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봉수·연대 소재의 봉군은 타 역의 종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후망에만 전념토록 하였다. 그러나, 근무여건은 매우 단순하고 힘든 고역이자 천역이었다. 즉, 세조 2년(1456) 남포 봉화군 이덕명이 나이 65세가 되었어도 현감에 의해 면방되지 못하자 승 학수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봉화군 한영과 더불어 도망하여 군역을 피한 사실이 있었다. 성종 때에는 재위 25년간의 긴 치세기간 동안 특별한 전란이 없이 평화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봉수가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완되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 역에 비해 그 신역이 험하다 하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가려고까지 하였다. 또한, 봉수군은 당시 모든 역에서 면제되는 등의 특혜로 본연의 임무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듯 연산군 9년(1503) 사재감 첨정 유계종의 진언에 “신은 근지에 평안도 위원군에 원으로 갔다가 국경을 지키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봉화대 군인들은 그 일이 매우 괴로워 다른 군인들보다 갑절이나 되기 때문에, 무예를 가진 사람은 모두 갑사나 기병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약하고 빈곤한 사람만이 모두 봉화대 군인에 소속되므로 혹시 적변이 있으면 적에게 대응하지 못하여 왕왕 포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봉수군은 기피의 대상으로 고역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북방연대의 봉수군들은 적을 교란하고 봉수를 방어하기 위해 연대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위장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인 숙종 46년(1720)에는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접한 자리에서 영의정 김창집이 외방의 봉수군은 본래 고역이기 때문에 이미 복호를 주었고, 또 세 사람의 보인을 정하였는데, 근래에 한정을 얻기 어려우며, 경기 고을은 더욱 심하여 군정의 결원을 뽑아 메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또, 영조 22년(1746) 병조에서 봉수군을 선왕조의 수교에 따라 빙역에 종사하지 않도록 계청하니 윤허하여 일체의 모든 잡역에서 면제하여 본연의 임무만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각 봉수에는 봉수별장이 1인씩 있었다. 이들은 봉수군을 지휘·감독 및 봉수에 기거하면서 후방과 신호를 위한 거화·전보 및 봉수의 자체 방어를 관장하는 하급장교였다. 또한, 조선 후기 경상우병영의 사례를 통해 봉수별장은 병사의 부임 시 현신하며 별 때 거안을 바치기도 하였다. 즉, 병사가 부임 시 고을의 경계에서는 아전 한 명이 나아가 공장을 드리고 오리정에서는 삼공형이 함께 나아가 공장을 드린다. 봉수를 지나갈 때에는 깃발을 올리고 포를 쏘되, 담당관리가 말 앞에서 신고 후,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거안을 바치는 것 외에 별장이 현신하여 별 때도 거안을 바쳤다.

바. 봉수의 위치와 상거거리

봉수대가 위치하는 곳은 비교적 식별이 용이하고 사방을 둘러보기에 좋은 산정이어야 한다. 즉, 「衛公兵法曰 烽臺於高山 四顧險絕處置之」라 하며 자체방호도 가능한 곳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봉수대는 부산,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 봉화산(해발 468m), 황령산(해발 427m), 고성 좌이산(해발 415m), 사천 각산(해발 398m), 남해 금산(해발 701m) 등 대개 높은 곳으로 멀리서도 잘 보이고, 그곳에서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곳 등이 대부분으로 쌍방이 연락하고 받을 수 있는 편리한 곳이어야 하고, 자체 방어를 위한 시설과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봉수의 상거거리는 각기 산세와 운무 등 자연조건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는 처음 축조될 때부터 10~15리를 기준으로 신포성과 각성이 서로 들리는 멀지 않는 거리였고, 세조 때 기록으로는 40리에 7개소 즉 평균 6리의 경우도 있어서 연대감축의 주요요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연대의 거리가 가까웠음은 『慶尙道地理志』를 통해서도 능히 밝혀지는데 평균 10리 이내, 내지봉수의 경우는 가까우면 10리, 멀면 70리로 4~50리 정도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다.

또 연대는 그 변방 제1선에서의 요새적 임무에 비추어 10~15리 이하로 조밀하게 배치하였고, 거기서 내지봉수로 갈수록 상거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즉 서울에서 먼 주연지역은 2~30리, 서울에서 가까운 야화 지역은 4~50리 정도가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상 시에 올랐던 5炬의 烽火가 20~30리 밖에서 식별되기 위해서는 연조의 상대거리가 최소한 3m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2. 봉수노선

봉수는 위치나 임무에 따라 京烽燧, 沿邊烽燧, 內地烽燧, 權設烽燧가 있었으며, 그것이 전달될 때 한편에서 연락을 받아 다음 봉수로 연락을 해주던 통신선로가 거미줄처럼 짜여 있다.

그 기점이 변경인 두만강, 압록강,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5개의 직봉노선으로 그 기점은 달라도 모두가 경봉수인 중앙의 목멱산을 종점으로 하여 집결되었다.

『增補文獻備考』 봉수조에 의하면 전국 5로의 주요노선을 直烽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동북 두만강변의 우암(慶興 西水羅), 동남 해변의 응봉(東萊 多大浦), 서북 압록강변의 여둔대(江界 滿浦鎭)와 고정주(義州), 서남 해변의 돌산포(順天 防踏鎭)를 기점으로 하여 모두 서울의 목멱산(남산)에 도달하게 되어 있었다.

조선의 봉수제는 국초부터 5거의 거화제로 확립되어 조선 전시기를 통해 국가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런 만큼 전국에서 오는 봉수를 받기 위하여 목멱산에 5소의 봉수가 설치되었다. 『世宗實錄』 地理志 경기도 경도의 봉수는 다음과 같다.

木覓祠 在都城南山之頂小祀有烽火五處
 第一所 准咸吉江原道來楊州~~崧~~嵯山烽火
 第二所 准慶尙道來廣州穿川山烽火
 第三所 准平安黃海道陸路來母嶽東烽火
 第四所 准平安黃海道海路母嶽西峯烽火
 第五所 准全羅忠清道海路來陽川開花烽火
~~崧~~嵯山烽火准咸吉江原道來豐壤大伊山烽火
 母嶽 在慕華館之西上有烽火二處
 東峯准平安黃海道陸路高陽所達山烽火
 西峯准平安黃海道海路來迎曙驛西山烽火

다시 말하면 서울의 목멱산봉수에 있는 5소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제1은 永安道(咸鏡道)로부터 강원도를 거쳐 양주 아차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2는 慶尙道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광주 천림산에 이르는 봉수를, 제3은

平安道 강계로부터 내륙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동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4는 平安道 의주로부터 해안으로 황해도를 거쳐 한성 무악서봉에 이르는 봉수를, 제5는 全羅道로부터 충청도를 거쳐 양주 개화산에 이르는 봉수에 각각 상응하였다.

이상의 직봉 외에도 간봉이라는 보조선이 각 직봉선상에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중에는 직봉사이의 중간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의 것과 특히 국경방면의 전선초소로부터 본진, 본읍으로 보고하는 단거리의 것도 있었다.

【표 1】 봉수대 지역별 현황

도 별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증보문헌비고	대동지지
한 성 부	2	2	2	2	2
개 성 부	3	4	2	2	3
경 기 도	40	35	36	38	39
충 청 도	51	41	40	40	44
경 상 도	135	140	131	133	135
전 라 도	42	45	43	43	42
제 주 도	23	23	0	0	25
황 해 도	39	40	46	46	46
강 원 도	49	47	11	10	11
평 안 도	115	120	128	132	135
함 경 도	108	169	160	163	146
합 계	607	666	599	609	628

【표 2】 봉수대 노선별 비교현황

	직 봉		간 봉		계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	만기요람	증보문헌	만기요람
제 1 로	122	120	58	60	180	180
제 2 로	44	40	110	123	154	163
제 3 로	79	78	19	22	98	100
제 4 로	70	71	21	35	91	106
제 5 로	61	60	25	34	86	94
계	376	369	233	274	609	643

조선 전기 봉수망의 구체적 배치를 오늘날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續撰地理志』, 『經國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봉수조가 있다. 또 후기에 들어 『輿地圖書』와 신경준의 『道路考』,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각 읍지, 『大東輿地圖』, 『大東地志』 등이 있다.

3. 봉수시설

조선 초기에는 봉수대의 시설이 보잘 것 없고 또, 京, 沿邊, 內地烽燧에 따른 별다른 구분도 없었던 것 같다. 세종 4년(1422) 8월부터 특히 연변봉수에 아무런 방벽이 없는 까닭으로 도리어 적의 침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서 그 시설개선을 도모하게 되었고 이는 동왕 20년(1438) 1월부터 정제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왕 29년(1447) 3월경에 이르러 그 제도(沿邊築造規式)가 확립된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조선왕조실록의 자료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종 4년 8월 19일

–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가 계하기를, “봉화불을 올리는 장소에 보루와 장벽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흔히 적의 검탈을 당하게 됩니다. 법령이 비록 엄하나,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려 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게 연대(烟臺)를 쌓고, 활쏘는 집과 화포(火砲)와 병기(兵器)를 설치하여, 밤낮으로 그 위에서 적의 변동하는 것을 관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여러 도에 명하여 모두 연대를 쌓으라고 명하였다.

(慶尙道水軍都安撫處置使啓: “烽燧之處, 無堡壁可據, 因此或爲賊所掠, 法令雖嚴, 人皆疑畏, 不肯用心瞭望 請高築烟臺, 上設弓家, 置火砲兵器, 晝夜常在其上, 看望賊變” 從之, 命諸道皆築烟臺)

② 세종 19년 2월 19일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후로는 각도의 극변(極邊) 초면(初面)으로서 봉화가 있는 곳은 연대를 높이 쌓고 옆 근처에 사는 백성 10여 인을 모아서 봉졸로 정하여, 매번(每番)에 세 사람이 모두 병기를 가지고 항상 그 위에서 주야로 정찰하여 5일 만에 교대하게 하고, 비록 극변(極邊)이 아니더라도 악한 짐승이 사람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 수령으로 하여금 연대의 예에 의하여 적당하게 배치하여 엄하게 고찰하도록 하고, 만일 사변이 있거든 급히 치보하게 하여 《육전》의 봉화법을 거듭 밝히고, 매 월말에 병조에 이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己卯/議政府啓: “今後各道極邊初面烽火之處, 高築烟臺, 聚旁近居民十餘人, 定爲烽卒, 每番三人, 兼持兵器, 常在其上, 晝夜偵候, 五日而遞 雖非極邊, 惡獸傷害可慮, 令守令依烟臺例, 量宜布置, 嚴加考察, 若有事變, 須急馳報, 申明《六典》烽火之法, 每月季, 令移牒兵曹” 從之)

③ 세종 20년 1월 15일

-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 연대를 설치한 것은 적을 망보는 것인데, 이제 여연 등 각 고을에 연대는 쌓았지만 1년도 못되어 혹 무너지기도 하니, 이것을 쌓는 일을 감독한 관리가 애쓰지 않은 때문입니다. 연대는 사면으로 아래쪽이 넓어 한 면의 넓이가 20척(9.8m), 높이는 30척(14m)인데, 모두 포백을 재는 자의 치수를 제도로 하여 고쳐 쌓도록 하고 사면에는 구덩이를 파 두도록 합니다. 군사 다섯 사람에게 병기와 화포를 가지고 열흘 만에 서로 교대하며 밤낮으로 망보게 하고, 만일 함부로 위치를 이탈하는 자가 있으면 올에 의하여 엄하게 징계할 것입니다. 연변 여러 구자에 돌 보루를 쌓을 때에도 적대·옹성 및 연대의 건양(見樣)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에게 도본을 만들게 한 다음, 도절제사에게 내려 보내 이를 참고하고 쌓는 것을 감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 烟臺之設, 所以候賊也 今間延等處各官造築烟臺, 未經一年, 或致傾圮¹², 專是監築官吏不用心也 烟臺四面下廣, 每一面二十尺, 高三十尺, 皆用布帛尺定制改築, 四面皆置坑坎, 使五人持兵器火炮, 十日相遞, 晝夜候望, 如有擅離者, 依律痛懲 沿邊各口子造築石堡時, 敵臺甕城及烟臺見樣, 令修城典船色圖¹³, 下送都節制使, 憑考監築” 從之)

④ 세종 29년 3월 4일: 연변축조규식(沿邊築造規式)

-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연변의 연대를 축조하는 방식과, 복리에 봉화를 배설하는 제도와, 감고하는 군인을 권려하고 완호하는 조목을 폐지할 점과 마련할 점을 참작하여 후면에 기록합니다.
- 연변의 각 곳에 연대를 축조하되, 높이는 25척(7.8m)이고 둘레는 70척(21.84m)이며, 연대 밑의 사면은 30척(9.36m)으로 하고, 밖에 참호를 파는데 깊이와 넓이는 각기 10척(3.12m)으로 하고 모두 영조척을 사용하게 하며, 또 갱참(坑塹)의 외면에 나무 말뚝을 설치하는데 길이 3척(0.936m)이나 되는 것을 꺾질을 깎아버리고 위를 뾰족하게 하여 땅에 심고 넓이는 10척(31.2m)이나 되게 하며, 연대 위에는 가옥(假屋)을 만들어 병기와 조석에 사용하는 물과 불을 담는 기명(器皿) 등 물건을 간수하고, 망보는 사람은 10일 동안에 서로 번갈아 이를 지키게 하고, 새로 온 사람과 그전에 있던 사람 사이에 양식이 떨어질 때에는, 있는 곳의 고을 관원과 감사와 절제사가 적당히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주게 하다.
- 감고(監考)와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인호(人戶)는 공부(貢賦) 외에 잡역은 일체 모두 감면하게 하다.

- 감고 중에 부지런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은 매 6년마다 한 차례씩 산관직을 제수하게 하며, 봉화와 바다를 망보는 사람이 능히 사변을 알려서 적을 잡게 한 사람은 《속병전》에 의거하여 서용하고 상을 내리게 하며,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선군(船軍)의 예에 의거하여 그 도숙(到宿)을 계산하여 해령직(海領職)을 임명하게 하다.
- 복리의 봉화는 연변지방에 있는 연대의 비교가 아니니, 전에 있던 배설한 곳에 연대를 쌓지 말고, 산봉우리 위에 땅을 끌고 연기 부역을 쌓아 올려 위는 뾰족하게 하고 밑은 크게 하며, 혹은 모나게 하고 혹은 둥글기도 하며, 높이는 10척에 지나지 않게 하고, 또 원장(垣牆)을 둘러쌓아 흉악한 짐승을 피하게 하다.
- 봉화는 사변이 있으면 감고가 즉시 그 고을 관원에게 알리고, 사변이 없으면 매 10일마다 한 번씩 알려서 감사에게 전해 보고하고, 매 사계월마다 병조에 통첩을 보내어 후일의 참고에 증거로 삼게 하고, 감고와 간수인(看守人)의 근실하고 태만한 것은 감사와 수령이 일정한 시기가 없이 고찰하게 하고, 군기를 점고하는 경차관도 또한 아울러 사실을 검사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據兵曹呈啓: “沿邊(炯)〔烟〕臺造築之式, 腹(衷)〔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勸勵完護之條, 參酌(廢)〔磨〕鍊後錄 ○ 沿邊各處烟臺造築, 高二十五尺, 圍七十尺 臺下四面三十尺外掘塹, 深廣各十尺, 皆用營造尺 又於坑塹外面設木柵, 長三尺, 削皮銳上植地, 廣十尺 臺上造假屋, 藏兵器及朝夕供用水火器皿等物 看望人, 十日相遞守之, 新舊間絕糧時, 所在官及監司節制使隨宜補乏 ○ 監考及烽火海望人戶, 貢賦外雜役, 一皆蠲免 ○ 監考勤謹者, 每六年一次, 散官職除授; 烽火海望人能告事變捕賊者, 依《續兵典》敍用行賞; 其餘各人, 依船軍例, 計其到宿, 差海領職 ○ 腹裏烽火, 非沿邊烟臺之比, 勿築臺於在前排設峯頭, 除地築烟臺, 上尖下大, 或方或圓, 高不過十尺 且濬以垣牆, 以避惡獸, ○ 烽火, 有事則監考即告于其官, 無事則每十日一告, 傳報監司, 每四季月, 移牒本曹, 以憑後考 監考及看守人勤慢, 監司守令無時考察; 軍器點考敬差官, 亦竝檢察啓聞” 從之)

⑤ 성종 6년 5월 27일

- 병조에 전교하기를, “태평한 세월이 오래되면 봉수가 해이해지기는 하지만, 근년에 여러 번 변방의 변고가 있었는데도 모두 변고를 알리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거듭 밝혀서 거행하되, 일체 사목에 따라 시행하라.
- 이 뒤로는 변진으로부터 서울에 이르는 사이에 있는 봉수 가운데 후망을 삼가지 않아서 중간에 끊어져 통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철저하게 국문하여 중죄로 논하라.
- 본조는 구례에 따라 사람을 배정하여 후망하게 하되, 변고가 있으면 밤에라도 곧 승정원에 고하고, 일이 없으면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고하여 아뢰라.
- 봉수군은 신역이 험하다 하여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들어가므로 혹 먼 곳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충정하여,

황혼을 이용하여 후망할 뿐이고 낮과 밤으로는 다시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적당하지 못하다. 이 뒤로는 모두 부근에 사는 사람으로서 차정하여 늘 떠나지 말고서 후망하고, 그곳 수령이 엄하게 살피게 하되, 여기는 자가 있거든 수령도 아울러 논하라.

- 낮에 알리는 것은 반드시 연기로 하는데, 바람이 불면 연기가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후망하기 어려우니, 이제 봉수가 있는 곳에는 모두 연통(煙筒)을 만들어 두게 하라.
- 바람이 어지러워 연기가 흩어져서 후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곳의 봉수군이 달려와서 고하여 전보하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兵曹曰: “昇平日久, 烽燧陵夷, 近年屢有邊警, 竝不報變, 何也 宜申明舉行, 一依事目施行 ○ 今後自邊鎮至京師所在烽燧, 不謹候望, 如有中絕不通者, 窮鞫重論 ○ 本曹依舊例, 定人候望, 有變則雖夜即告承政院, 無事則翌日早晨, 告承政院以啓 ○ 以烽燧軍爲役歇, 人爭投屬, 故或以遠地居人充定, 但乘昏候望而已, 晝夜無復有人, 實爲未便 今後竝以附近居人差定, 常時不離候望, 所在守令嚴加考察, 違者竝論守令 ○ 晝報必以烟, 有風則烟不直上, 候望爲難, 今烽燧處, 烟筒悉令造設 ○ 風亂烟散, 不得候望之時, 則所在烽燧軍馳告轉報”)

이상의 기록에서 살펴보면, 연대, 연조, 연통, 호, 가옥 등의 내용이 있다. 이들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자료를 통하여 중심시설물과 보조시설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가. 중심시설

봉수대의 주기능은 신호의 전달과 후망이다. 따라서 이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을 중심시설로 연조, 연대, 망대, 방호벽과 호, 보관시설 등이 있다.

1) 연조

조선시대 봉수는 신호전달에 있어 5거화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화를 위한 시설로 연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봉수대의 거화시설로는 봉돈과 연조가 있다. 연조는 현재 연굴·아궁이·봉조 등으로 통용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봉돈과 연조를 같은 구조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봉돈과 연조는 다른 구조의 거화시설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봉돈은 수원화성의 봉돈을 표지로 하며, 벽돌이나 석재를 이용하여 웅장한 크기로 구축한 구조물을 지칭한다. 화성봉돈은 전부 벽돌만 사용하여 평면 원형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3.1m이고 중간지점에는 장방형의 화구를 두었다.

이에 반하여 연조는 봉돈과 달리 하부시설만 잔존하는데, 이는 상부시설을 흙으로 만들고 하부시설은 석재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조의 기능은 거화를 통한 신호전달이다. 조선시대의 거화법은 5거화제로, 봉수대마다 5개소의 연조가 설치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된 봉수대에서 발견된 연조는 1개~5개로 다양하지만, 남해 대방산봉수대·고성 곡산봉수대·창녕 여통산봉수대·거제 강망산봉수대 등에서는 5개소의 연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기본적으로 5개소의 연조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조의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연조의 평면은 원형·방형·내원의방형·부정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한 봉수대 내에서 다양하게 확인되기도 하고 한 가지 형태만 나타나기도 한다. 조사된 연조는 거의 최하단석만 존재할 뿐 상부구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천왕점봉수대 및 곡산봉수대의 연조 내부에서 작은 할석 및 소결점토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상부구조는 점토를 발라 벽체를 만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상부는 점토를 발라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시에는 상부의 점토가 삭평 및 결실되어 그 구조가 남아있지 않고 하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잡하게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통은 웅기둥이와 수키와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성종 6년(1475) 이후 모든 봉수에는 연대나 연조 위에 반드시 연통을 만들어 風亂으로 晝烟이 흐려짐을 방지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연조는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크게 네모 또는 둥근모양으로 만들되 그 높이는 10尺을 넘지 않게 하였고, 악수가 침범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둘레에 담장을 쌓았다. 내지봉수에는 위험도가 적음으로 연대를 쌓지 않고, 연조만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주 위험한 곳에는 연대를 쌓았다.

2) 연대

연대라는 용어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 4년 8월에 경상도수군도안무처치사 계하기를 “봉화를 올리는 장소에는 보루와 장벽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로 인하여 흔히 적의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법령이 비록 엄하나,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고 두렵게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찰하지 아니하니, 청컨대 높게 연대를 쌓고 그 위에 궁가와 화포 그리고 병기를 비치하여, 밤낮으로 그 위에서 적의 변동하는 것을 관망하게 하소서.”이었다. 이를 통해 세종 4년 이전에는 연변봉수대에 연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세종 4년 이후에야 연대를 쌓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연대란 그 위에 궁가 및 화포를 설치하였던 시설물이었다. 그리고 이 문헌사료로 보아, 거화시설과 연대는 다른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거화를 위한 연대의 설치가 아니고 방어 및 후망을 위해

연대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연대설치 이전에도 따로 거화시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연대와 거화시설이 분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후대에는 연변봉수대를 연대로 부르게 되어, 곧 연대가 연변봉수대로 통하게 되었다.

즉, 연변봉수에는 연대를 쌓되 높이 25尺, 둘레 70尺에 臺下 4面の 넓이 각 30尺으로 하고 그 바깥에 깊이, 넓이 각 10尺의 참호를 돌려 파며, 다시 그 외주에 위를 뾰족하게 다듬은 길이 3尺의 木柱地帶를 설정했는데 넓이는 10尺이고 營造尺이 기준이었다.

한편 연대 위에는 假家を 지어 화기 등 각종 병기와 일상생활품을 간수케 하였다.

3) 망대

봉수대에서 망대라 함은 석축·토축·석+토 혼축으로 쌓아 올린 높은 대를 말한다. 신호전달을 위한 연조는 망대 주위에 설치되어 있다. 연대란 망대 위에 연조 5개소가 설치된 경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후망과 거화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 높은 대를 연대라 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망대는 후망을 통한 적군의 동태파악이나 신호를 하는 봉수대에서 연기·불빛을 받는 것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기능이다. 따라서 해안지역에 설치된 봉수대에는 대부분 석축망대가 존재한다. 이처럼 망대는 봉수대 내 거화시설과 더불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고 망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호벽, 자연석 등을 망대로 이용하였다.

4) 방호벽과 호

방호벽은 봉수군이 침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향시 불을 다루므로 거화 시 실수로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호벽의 평면형태 차이는 입지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지일 경우는 원형 및 방형으로 축조하였고 구릉의 능선부에서는 능선을 따라 장방형 및 세장방형으로 축조하였다. 즉 방호벽의 형태의 차이는 방호벽이 축조된 지형여건과 관련이 있다.

봉수대에서 주로 확인되는 평면형태는 원형이 많으며, 단면은 'U'자 형태를 띤다. 호의 가장자리는 호를 파낸 흙으로 자연스럽게 독을 만들었다. 호와 연대를 지나 연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출입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5) 보관시설

봉수단의 임무 중 ① 위급한 적침이 있을 때에는 포성(신포·화포)과 각성(뿔피리), 기(깃발) 등으로 주위 진보와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케 하는 것 ② 봉수대의 화거시설 및 방비시설을 관리·보수하거나 거화재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봉수대 내에는 다양한 물품과 거화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보관시설은 위급 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연대·망대·연조 주변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보관시설은 일상 생활용품을 보관하는 창고와 구분하여 부르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보관시설은 거화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거화재 및 위급 시 사용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물이고 창고는 생활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봉수단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물로 정의내릴 수 있다. 특히, 보관시설은 적침의 우려가 많은 연변봉수대에 주로 설치되었다.

나. 보조시설

보조시설이란 봉수대 군영을 위해 축조된 시설로 주거지, 창고, 우물, 경작지 등이 있다.

1) 주거지

경남지역의 사천 각산봉수대, 양산 원적산봉수대, 진주 광제산봉수대, 부산 아이봉수대, 밀양 추화산봉수대, 의령 미타산봉수대, 함안 파산봉수대 등에서 주거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각산봉수대·원적산봉수대·추화산봉수대의 경우는 중심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반면, 광제산봉수대·아이봉수대·미타산봉수대·파산봉수대는 중심시설 내에 위치하지만, 모두 은폐가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고 있다.

주거지의 구조는 돌을 쌓아 벽을 세우고 여기에 진흙을 두껍게 바른 토석담의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봉수관련 자료에서 와가, 가가 등의 이름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2) 창고

『경국대전』에 의하면, 연변봉수대에는 5개소로 나누어 매 소마다 봉수단 10명, 오장 2명씩 총 60명을 배치하였으며, 내지봉수대에는 5개소로 나누어 매 소마다 봉수단 6명, 오장 2명씩 총 40명을 배치하였으며, 10일마다 상하 양변으로 교체하였다. 이처럼 봉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으며, 그에 따른 생활필수품이 구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창고에는 이러한 주거용품을 보관하였으며, 생활용품으로는 도끼·낫·땃줄·사다리·표주박·수저·큰항아리·작은항아리 등이 있었음을 관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우물

봉수대의 군영에 있어 식수의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정에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샘을 찾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봉수대에서는 중심시설과 다소 떨어진 8부 능선상에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당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의 입지를 택함에 있어 식수확보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경작지

봉수대 주변에 고지를 삭평하여 나온 흙으로 아래부분을 매운 평면 세장방형 형태의 단시설이 종종 확인되는 곳이 있다. 이 단시설의 상면에서는 아무런 구조물도 확인되지 않는 점과 평면형태 및 토층단면으로 볼 때, 봉수군의 식생활자료 확보를 위한 경작지(남새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문헌자료와 지도

1. 경남의 봉수자료와 지도
2. 부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3. 울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4. 봉수관련 각종 문헌자료
5. 봉수 비치물목

1. 경남의 봉수자료와 지도

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 昆南郡 南海縣

錦山烟臺烽火(在島東 西望島中所屹山烟臺烽火相去陸路30里)

自所屹山烽火(西望望雲山烽火相去30里)

自望雲山烽火(北望晉州任內金陽部曲地陽莚山烽火相去26里)

2. 晉州牧官

望津山烽火(在州南7里許 南望泗川縣地城隍堂烽火相距18里59步 北望光濟山烽火相去25里280步)

自光濟山烽火(北望珍城兼丹溪縣地笠~~山~~烽火相去25里)

角山鄉主山烟臺烽火(在州南45里許 東望固城縣西佐骨山烽火相去53里122步 北望泗川縣地針枝烽火相去26里111步 南望金良部曲地陽莚山烽火相去水路60里)

自陽莚山烟臺烽火(南望南海島望雲山烽火相去35里 西望州地桂花山烽火 相去27里343步)

自桂花山烟臺烽火(西望全羅道件代山烽火相去水路15里)

3. 泗川縣

針枝烽火(在縣南17里許 南望晉州任內角山鄉主山烽火相去26里111步 北望縣城隍堂烽火相去13里350步)

自城隍堂烽火(北望晉州地望津山烽火相去18里59步)

4. 陝川郡

所峴烽火(在郡西北隅38里許 南望三嘉縣地金城烽火相距41里320步 北望居昌縣地金貴山烽火相距30里)

5. 冶廬縣

美崇山烽火(在縣東8里許 南望草溪郡地彌陀山烽火相距70里196步 東望高靈縣地望山烽火相距27里160步)

6. 草溪郡

彌陀山烽火(在郡南15里許 南望宜寧縣率正骨部曲可莫山烽火相距41里90步 北望陝川任內治廬縣地美崇山烽火相距70里196步)

7. 居昌縣

金貴山城烽火(在縣東12里許 南望陝川郡地所伊峴烽火相去17里 北望縣地巨乙末烽火相去34里15步 北望知禮縣地山城烽火相去35里125步)

8. 密陽都隲府

南山烽火(在府南10里許 南望金海府地子巖烽火相去60里 北望府地推火山城烽火相去15里)

自推火山城烽火(北望盆項烽火相去12里)

自盆項烽火(北望清道郡地南山烽火相去20里)

9. 昌寧縣

烽山烽火(在縣北7里許 南望靈山兼桂城縣地餘通烽火相去17里182步 北望玄風地所伊山烽火相去30里)

10. 靈山縣

所山烽火(在縣南3里許 南望柒原地安谷烽火相去30里90步 北望兼桂城縣地餘通山烽火相去11里60步)

11. 兼桂城縣

餘通烽火(在縣西3里許 南望靈山地所山烽火相去11里6步 北望昌寧縣地烽山烽火相去17里80步)

12. 金海都隲府

加德島鷹巖煙臺烽火(北望府地省火也烽火相去30里)

自省火也煙臺烽火(東望梁山任內東平縣地石城烽火相去水路30里 北望府地山城打鼓巖烽火相去51里)

自鼓巖烽火(北望府地子巖烽火相去41里)

自子巖山烽火(北望密陽府地南山烽火相去60里)

自加德島鷹巖烽火(西望任內熊神縣地沙火郎山烽火相去37里)

13. 熊神縣

沙火郎山烽火(在縣西5里許 東望府地加德島鷹巖烽火相去37里 北望昌原府地長卜山烽火相去30里 西望莞浦縣地高山烽火相去40里)

14. 莞浦縣

高山烽火(東望熊神地沙火郎山烽火相去40里 南望昌原府地餘浦烽火相去水路30里)

15. 昌原都會府

長卜山烽火(在府南27里許 東望金海任內熊神縣沙火郎烽火相去水路30里 西望右會原地餘浦烽火相去水路30里)

自餘浦烽火(北望金海任內莞浦縣高山烽火相去水路30里)

16. 右會原

城隍堂烽火(在縣北5里許 東望金海任內莞浦縣地高山烽火相去水路60里 北望柒原縣地安谷山烽火相去30里)

17. 咸安郡

所山烽火(在郡南13里許 南望鎮海縣地加乙浦烽火相去21里 北望宜寧縣地可莫山烽火相去39里87步)

18. 固城縣

彌勒山烽火(在縣南49里90步許 東望巨濟縣地加羅山烽火相去水路30里 北望縣地牛山烽火相去陸路50里90步)

自牛山烽火(西望佐耳山烽火相去陸路60里60步 北望天王岾烽火相去40里380步)

自天王岾烽火(東望曲山烽火相去30里307步)

自曲山烽火(東望鎮海縣地加乙浦烽火相去50里)

自佐耳山烽火(西望晉州任內角山鄉主山烟臺烽火53里22步)

19. 巨濟縣

加羅山煙臺烽火(在縣南35里許 西望固城地彌勒山烽火水路相去30里)

20. 梁山郡 東平縣

石城煙臺烽火(在縣南15里許 東望東萊地黃嶺山烽火相去30里 西望金海地省火也烽火相去110里)

나. 『世宗實錄地理誌』(慶尚道)(1454년)

1. 火王郡(봉화1처)

峯山(在縣北 南淮桂城余通 北淮玄風所伊山)

2. 靈山縣(봉화2처)

所山(在縣南 南淮柒原安谷山 北淮桂城餘通山)

餘通山(在桂城南 北淮昌寧峯山)

3. 陝川郡(봉화2처)

所峴(在郡西北隅 南淮三嘉金城 北淮居昌金貴山)

美崇山(在冶爐縣東 南淮草溪彌地山 東淮高靈望山)

4. 草溪郡(봉화1처)

彌陀山(在郡南 南淮宜寧可莫山 北淮冶爐美崇山)

5. 晉州牧(봉화5처)

望津山(在州南 南淮泗川城隍堂 北淮廣濟山)

光濟山(北淮丹溪笠岩)

角山鄉主山(在州南 東淮固城佐耳山 北淮泗川針枝 南淮金陽部曲陽菴山)

陽菴山(南淮南海島望雲山 北淮本州桂花山)

桂花山(西淮全羅道件代山)

6. 金海都護府(봉화6처)

加德島鷹岩(在府南 南准省火也山 西准熊神沙火郎山)

省火也(東准東平石城 北准本府山城打鼓岩)

打鼓岩(北准子岩山)

子岩山(北准密陽南山)

沙火郎山(北准昌原長卜山 西准莞浦高山)

高山(東准熊神沙火郎山 南准昌原餘通)

7. 昌原都護府(봉화3처)

長卜山(在府南 東准熊神沙火郎 西准會原餘浦)

餘浦(北准金海莞浦縣高山)

城隍堂(在右會原縣北 東准莞浦 北准柒原在安谷)

8. 咸安郡(봉화1처)

所山(在郡南 南准鎮海加乙浦 北准宜寧可莫山)

9. 昆南郡(봉화3처)

錦山(在南海島東 西准本島所屹山)

所屹山(西准望雲山)

望雲山(在南海島南 北准晉州金陽部曲陽菴)

10. 固城縣(봉화5처)

彌勒山(在縣南 東准巨濟加羅山 北准牛山)

牛山(西准佐耳山 北准天王帖)

天王帖(東准曲山)

曲山(東准鎮海加乙浦)

佐耳山(西准晉州角山鄉主山)

11. 巨濟縣(봉화1처)

加羅山(在縣南海邊 西准固城彌勒山)

12. 泗川縣(봉화2처)

針枝(在縣南 南准晉州角山鄉主山 北准縣城隍堂)

城隍堂(北准晉州望津山)

13. 居昌縣(봉화1처)

金貴山(南准陝川所伊縣 北准本縣巨乙末 又准知禮山城)

14. 珍城縣(봉화1처)

笠~~岩~~(在丹溪縣東 南准晉州廣濟山 北准三嘉金城)

15. 柒原縣(봉화1처)

安谷山(在縣西 南准昌原城隍堂 北准靈山所山)

16. 三嘉縣(봉화1처)

金城(在三岐縣 南准丹溪笠岩 北准陝川所乙峴)

17. 宜寧縣(봉화1처)

可莫山(在本縣東 南准咸安所山 北准草溪~~彌~~地山)

18. 鎭海縣(봉화1처)

加乙浦(在縣東 東准昌原餘浦 西准固城曲山 北准咸安所山)

다. 『慶尙道續讚地理誌』(1469년)

1. 梁山郡

군북

山烽火(南與東萊鷄鳴山烽火相准 北與彦陽南山烽火相准)

2. 昌寧縣

현북

合山烽火(南與靈山任內兼桂城縣余通烽火相准 北與玄風所許山烽火相准)

3. 靈山縣

현서

烽山烽火(南與漆原安谷山烽火相准 北與兼桂城縣余通烽火相准)

余通烽火(北與昌寧合山烽火相准)

4. 陝川郡

군북

所峴烽火(南與三嘉金城烽火相准 北與居昌金貴山烽火相准)

임내

冶爐縣 美崇山烽火(東與草溪彌山烽火相准 北與高靈望山烽火相准)

5. 草溪

군남

弥拖山烽火(南與宜寧可莫山烽火相准 北與陝川任內冶爐縣美崇山烽火相准)

6. 晉州牧

주남

興善島 臺方山烟臺烽火(北與角山烟臺烽火相准)

角山烟臺烽火(東與固城縣佐耳山烟臺烽火相准 北與泗川縣鞍站烟臺烽火相准)

望津山烟臺烽火(南與泗川縣鞍山烟臺烽火相准)

주북

廣濟山烟臺烽火(南與望津山烟臺烽火相准)

7. 金海

부남

省火也烽火(南與熊川縣加德島鷹巖烽火相准 東與東萊任內東平縣石城烽火相准)

부

山城烽火(南與東平石城烽火相准 北與子庵烽火相准)

子庵烽火(北與密陽南山烽火相准)

8. 昌原

부서

余浦烽火(東與熊川高山烽火相准 西與鎮海加乙浦烽火相准)

城隍堂烟臺烽火(南與餘浦烟臺相准 北與七原安曲山烽火相准)

9. 咸安

군남

巴山烽火(南與鎮海加乙浦烽火相准 北與宜寧可莫山烽火相准)

10. 昆陽

군남

牛山烽火(初起 東與晉州角山烽火相准)

11. 宜寧

현동 正骨里

可莫山烽火(南與咸安巴山烽火相准 北與草溪彌陀山烽火相准)

12. 三嘉

임내

三岐縣東 金城烽火(南與丹城笠巖烽火相准 北與陝川所峴烽火相准)

13. 南海

현동

錦山烽火(北與晉州興善島臺方山烽火相准 西與縣南所屹山烽火相准又與縣南猿山烽火相准)

所屹山烽火(西越大海全羅道順天東突山烽火相准)

14. 泗川

현남

鞍帖烽火(南與晉州角山烽火相准 北與望津山烽火相准)

15. 居昌

현

金貴山烽火(南與陝川管所乙峴烽火相准 北與縣巨末訖烽火相准)

渠末訖烽火(北與知禮山城烽火相准)

16. 丹城

현북

笠巖

17. 固城縣

현동

彌勒山烽火(南與巨濟加羅山烽火相准 西與縣東牛山烽火相准)

牛山烽火(西與佐耳山烽火相准)

佐耳山烽火(西與晉州角山烽火相准 北與天王帖烽火相准 東與曲山烽火相准 又與鎭海加乙浦烽火相准)

18. 巨濟

현남

加羅山烟臺烽火(初起 西與固城彌勒山烽火相准)

19. 鎭海

현동

加乙浦烟臺烽火(西與固城曲山烟臺烽火相准)

20. 密陽都隲府

南山烽火(南與金海子岩山烽火相准 北與推火山山城烽火相准)

山城烽火(北與盆項烽火相准)

盆項烽火(北與清道南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梁山郡

圓寂山烽燧(南應東萊縣鷄鳴山 北應彦陽縣夫老山)

2. 密陽都隲府

南山烽燧(在府南15里 南應金海府子巖山 北應推火山)

推火山烽燧(南應南山 北應盆項)

盆項烽燧(在府北20里 南應推火山 北應清道郡南山)

3. 靈山縣

餘通山烽燧(在桂城縣距縣西14里 南應烽山 北應昌寧縣合山)

烽山烽燧(在縣西5里 南應漆原縣安谷山 北應餘通山)

4. 昌寧縣

合山烽燧(南應靈山縣餘通山 北應玄風縣所山)

5. 晉州牧

臺方山烽燧(在州南114里 南應南海縣錦山 北應角山)

望晉山烽燧(南應泗川鞍站 北應廣濟山)

角山烽燧(在州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北應泗川鞍站)

廣濟山烽燧(在州北31里 南應望晉山 北應丹城笠巖山)

6. 陝川郡

美崇山烽燧(南應草溪郡彌陀山 東應高靈縣望山)

所峴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縣金城山 北應居昌郡金貴山)

7. 草溪郡

彌陀山烽燧(南應宜寧縣可莫山 北應陝川郡美崇山)

8. 陝川郡(없음), 河東縣(없음), 山陰縣(없음), 安陰縣(없음)

9. 昆陽郡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10. 南海縣

錦山烽燧(北應晉州臺方山 西應所訖山及猿山)

所訖山烽燧(東應錦山 北應猿山)

猿山烽燧(東應錦山 南應所訖山)

11. 居昌郡

金貴山烽燧(南應陝川所峴 北應巨末訖山)

巨末訖山(即牛馬峴西峰 南應金貴山 北應知禮縣龜山)

12. 泗川縣

鞍帖烽燧(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 北應同州望晉山)

13. 三嘉縣

金城山烽燧(南應丹城縣笠巖山 北應陝川郡所峴)

14. 宜寧縣

可莫山烽燧(南應咸安郡巴山 北應草溪郡彌陀山)

15. 丹城縣

笠岩山烽燧(在縣北27里 南應晉州廣濟山 北應三嘉縣金城山)

16. 金海都監府

盆山烽燧(南應省火禮山 北應子巖山)

省火禮山烽燧(在府南51里 南應熊川縣加德島 北應盆山)

子巖山烽燧(南應盆山 北應密陽府南山)

17. 昌原都監府

城隍山烽燧(在府西15里 東應熊川縣高山 北應漆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東應熊川縣沙火郎山 北應同縣高山)

18. 咸安郡

巴山烽燧(南應鎭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

19. 巨濟縣

鷄龍山烽燧(南應加羅山 西應固城縣彌勒山)

加羅山烽燧(北應鷄龍山)

20. 固城縣

彌勒山烽燧(東應巨濟縣鷄龍山 北應牛山)

天王帖烽燧(東應曲山 南應牛山)

牛山烽燧(東應彌勒山 西應佐耳山 北應天王帖)

曲山烽燧(東應鎭海縣加乙浦 西應天王帖)

佐耳山烽燧(東應牛山)

21. 漆原縣

安谷山烽燧(在縣西10里 南應昌原府城隍山 北應靈山縣烽山)

22. 鎭海縣

加乙浦烽燧(在縣東4里 西應固城縣曲山 北應咸安郡巴山)

23. 熊川縣

加德島烽燧(東應金海府省火禮山 西應沙火郎山)

沙火郎山烽燧(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應昌原府餘音浦及縣長福山)

長福山烽燧(東應沙火郎山 西應高山)

高山烽燧(東應長福山 南應昌原府餘音浦 西應同府城隍山)

(신증) 城山烽燧(正德丙寅移加德島烽燧于此)

마. 『東國輿地志』(1656년경)

1. 晉州

臺方山烽燧 在州南140里 南應南海縣錦山 北應角山

望晉山烽燧 南應泗川鞍帖 北應廣濟山

角山烽燧 在州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中山 北應泗川鞍帖

廣濟山烽燧 在州北31里 南應望晉山 北應丹城笠岩山

2. 陝川

美崇山烽燧 南應草溪郡彌陀山 東應高靈郡望山

所峴烽燧 在郡西49里 南應三嘉縣金城山 北應居昌郡金貴山

3. 昆陽

牛山烽燧 東應晉州角山

4. 居昌

金貴山烽燧 南應陝川所峴 北應巨末訖山

巨末訖山烽燧 卽牛馬峴西峯 南應金貴山 北應知禮縣龜山

5. 泗川

鞍帖烽燧 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 北應同州望晉山

6. 三嘉

金城山烽燧 南應丹城縣笠岩山 北應陝川郡所峴

7. 宜寧

可莫山烽燧 南應咸安郡巴山 北應草溪郡彌陀山

8. 丹城

笠岩山烽燧 在縣北27里 南應晉州廣濟山 北應三嘉縣金城山

9. 金海

盆山烽燧 南應省火禮山 北應子岩山

省火禮山烽燧 在府南51里 南應熊川縣加德島 北應盆山

子岩山烽燧 南應盆山 北應密陽府南山

10. 昌原

城隍山烽燧 在府西15里 東應熊川縣高山 北應柒原縣安谷山

餘音浦烽燧 東應熊川縣沙火郎山 北應同縣高山

11. 咸安

巴山烽燧 南應鎭海縣加乙浦 北應宜寧縣可莫山

12. 巨濟

鷄龍山烽燧 南應加羅山 西應固城縣彌勒山

加羅山烽燧 北應鷄龍山

13. 固城

彌勒山烽燧 東應巨濟縣鷄龍山 北應牛山

牛山烽燧 南應彌勒山 西應佐耳山 北應天王站

天王站烽燧 東應曲山 南應牛山

曲山烽燧 東應鎭海縣加乙浦 西應天王站

佐耳山烽燧 東應牛山

14. 漆原

安谷山烽燧 在縣西10里 南應昌原府城隍山 北應靈山縣峯山

15. 鎭海

加乙浦烽燧 在縣東4里 西應固城縣曲山

16. 熊川

加德島烽燧 東應金海府省火禮山 西應沙火郎山

沙火郎山烽燧 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應昌原府余音浦及長福山

長福山烽燧 東應沙火郎山 西應高山

高山烽燧 東應長福山 南應昌原府余音浦 西應同府城隍山

(신증)城山烽燧 燕山12年移加德島烽燧于此

바. 『輿地圖書』(1760년)

1. 晉州

臺方山烽燧(在州南110里 南應南海錦山 北報州角山相距40里)

角山烽燧(在州南80里 南應臺方山 北報泗川鞍峴相距30里)

望陣山烽燧(在州南10里 南應泗川鞍峴 北報州廣濟相距40里)

廣濟烽燧(在州北30里 南應州望陣 北報丹城笠巖相距40里)

2. 陝川

美崇山烽燧(在郡北50里 南應草溪彌陀山 東報高靈望山相距30里)

所峴山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金城山 北報居昌金貴山相距30里)

3. 密陽

栢山烽燧(在府南40里 南應金海子巖山 北報終南山相距15里)

終南山烽燧(在府南15里 南應栢山 北報推火山相距20里)

推火山烽燧(在府東5里 南應終南山 北報盆項山相距15里)

盆項山烽燧(在府北20里 南應推火山 北報清道南山相距30里)

4. 金海

盆山烽燧(在府北5里 南應省下禮山 北報子巖山相距30里)

省下禮山烽燧(在府南51里 南應熊川加德煙臺烽 北報盆山相距50里)

子巖山烽燧(在府北30里 南應盆山 北報密陽府南山相距30里)

5. 昌原

城隍堂烽燧(在府西15里 東應熊川高山 北報漆原安谷山 相距25里)

餘音浦烽燧(在府西60里 東應熊川沙火郎 西報鎮海加羅浦相距30里)

6. 咸安

指高烽燧(在郡南15里 南應鎮海加乙浦 北報宜寧可莫山相距60里)

7. 巨濟

鷄龍山烽燧(南應加羅山 西報固城彌勒山 今廢)

加羅山烽燧(在府南40里 西報閑背串相距水路40里)

閑背串烽燧(在府西40里 東應加羅山 西報固城彌勒山相距水路40里)

8. 固城

彌勒山烽燧(在縣南67里 東應巨濟鷄龍山 北報牛山相距水路25里)

牛山烽燧(在縣南25里 南應彌勒山 西報佐耳山相距水路30里 北報天王帖相距陸路30里)

天王帖烽燧(在縣北15里 南應牛山 東報曲山相距陸路30里)

曲山烽燧(在縣東20里 西應天王帖 東報鎮海加乙浦烽相距水路30里)

佐耳山烽燧(在縣西30里 東應牛山 南應蛇梁鎮主峰別望 北報晉州角山相距陸路30里)

9. 漆原

安谷山烽燧(在縣西10里 南應昌原城隍山 北報靈山所山相距30里)

10. 鎭海

加乙浦烽燧(在縣東4里 西應固城曲山 東應昌原餘音浦 北報咸安巴山相距18里)

11. 熊川

加德島烽燧(在縣南水路30里 南望對馬島 東報金海省下禮山相距水路30里 西報縣沙火郎山 相距水路35里)

沙火郎烽燧(在縣南6里 東應加德島 西報昌原餘浦及縣高山烽燧相距陸路35里)

長福山烽燧(東應沙火郎山 西報高山 今廢)

高山烽燧(在縣西35里 東應沙火郎山 北報昌原城隍堂山相距陸路35里)

(구릉)城山烽燧(正德丙寅移加德島烽燧于此 今廢)

12. 靈山

餘通山烽燧(在縣西14里 南應所山 北報昌寧合山相距40里)

所山烽燧(在縣西14里 南應漆原安谷山 北報餘通山相距10里)

13. 昌寧

合山烽燧(在縣北20里 南應靈山餘通 北應玄風縣所山相距30里)

14. 草溪

彌陀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宜寧可莫山 北報陝川美崇山相距60里)

15. 昆陽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今廢)

16. 南海

錦山烽燧(在縣東30里 北報晉州臺方山烽相距45里 西報所屹山烽相距35里 北報猿山烽相距20里)

所屹山烽燧(在縣南30里 東應錦山烽 西報全羅道順天古突山烽相距60里)

猿山烽燧(在縣東20里 東應錦山烽 西報本縣而止)

17. 居昌

金貴山烽燧(在府東15里 南應陝川所屹 北報渠末屹山相距40里)

巨末屹山烽燧(在府北48里 南應金貴山 北報知禮龜城山相距50里)

18. 梁山

渭川烽臺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20里 卯坐西向 南自東萊鷄鳴山烽燧40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40里距
應 別將1人 監考1人 軍100名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1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1部 弓子1張 桶兒
1環刀2柄 槍1柄 鳥銃2柄 藥升1 大白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柄 防牌6 鉛丸30箇 火礮2箇
火石2箇 火桶5 鎌子5柄 條所3件里 稜杖20箇 古月羅15箇 法首木5箇 前梯1 食鼎1坐 待邊糧1石 草席5立 柳
器2部 瓢子5 水瓮5 坐盤5立 匙5指 接匙1 竹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同花注乙5件里 種火盆5坐 滅火器5
水槽6 炬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積柴5訥 土木5訥 煙草5訥 橋注乙1件里 炭5石 灰5石 細沙5石 糟糠5石
草炬50柄 槽桶5 叉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2間 庫舍2間 空石10立 斧子1柄 懸瓢5 釜子1坐 抹木無定數 三
穴銃1柄 校子弓1張 掩心1坐 掩頭1坐紙甲靑1箇 鐵甲靑1 五色表旗5面 鎗鈴1 小鼓1 拍子1坐

19. 三嘉

金城烽(在縣北40里 前望丹城笠巖烽30里 後望陝川所峙烽50里)

烟臺5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1柄 勝子銃1柄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5部 桶兒5箇 片箭5部 環刀5柄 弓子5 長槍5柄 大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箇 鐵斧子1柄 防牌6 鉛丸30箇 火銃2箇 火桶5 鎌子3柄 條所3巨里 稜杖20箇 古月羅10箇 法首木5 箭梯1 無陵石5訥 同火注乙3 種火盆1坐 排帶木6 滅火器5 水槽6 抹木無數 完植懸瓢子5 斧子1坐 空石5立 草席2立 柳器1部 蘆子5 水瓮5 匙子5指 沙鉢5立 爐口1坐 食鼎1坐 待邊糧米 加入糧米10石 草家2間 假家2間 馬糞5石 牛糞5石 叉5同 草50訥 槽桶5 槽糠5石 細沙5石 灰5石 炭5石 轆注乙1沙里 煙草5訥 吐木5訥 積柴5訥 同烟3柄 柵炬50訥 松炬50訥

20. 宜寧

烽燧(在縣東30里 可幕山 南應咸安巴山 北報草溪彌陀山 壬辰改建)

21. 丹城

笠巖山烽燧(在縣北27里 南應晉州廣濟山烽 北報三嘉金城山烽相距30里)

22. 泗川

鞍帖山烽燧(甲坐庚向 在縣南15里 南應晉州角山烽陸路30里1息 北報同州望陣烽陸路40里1息 別將1人 伍長1名 軍人3名)

사. 『大東地志』(1864년)

1. 梁山

渭川山(北21里)

2. 密陽

盆城(北20里), 城隍(即推火山), 南山(南5里), 栢山(南40里)

3. 靈山

所山(西5里), 餘通(西14里)

4. 昌寧

太白山(西北30里)

5. 晉州

臺方山(在興善島中 本州114里), 角山(南76里), 望晉山(南6里)
廣濟山(北30里)

6. 居昌

金貴山(古城內), 巨末訖山(卽牛馬峴之南, 北50里知禮界)

7. 草溪

彌陀山(南60里, 宜寧界)

8. 陝川

所峴山(西北49里), 美崇山(東北60里)

9. 南海

錦山(東南25里, 初起), 所屹山(南30里), 猿山(南16里),
嶺上別望(在彌助項)

10. 泗川

鞍站(南15里)

11. 三嘉

金城山(古城內)

12. 宜寧

可莫山(東36里)

13. 丹城

笠岩山(北40里)

14. 金海

省火也(南50里), 山城(卽盆山城), 子岩山(北35里)

15. 昌原

城隍山(西15里), 餘音浦(會原古縣西南15里漆原龜山面界)

16. 巨濟

加羅山(初起, 南30里)

權設 登山 南望(俱加背梁), 玉林山(玉浦), 訥逸串(知世浦), 柯乙串(栗浦)

17. 咸安

巴山(東南15里, 西連餘航山)

18. 固城

彌勒山(南67里), 牛山(南30里), 天峙(東北20里), 曲山(北10里)

佐耳山(西南30里), 供需山(卽蛇梁鎮主峰右6處間峰)

權設 閑背串(唐浦鎮), 閑山島(三千浦堡)

19. 熊川

高山(西北45里), 沙火郎(南6里), 天城鎮煙臺(初起)

20. 漆原

安谷山(西10里, 咸安界)

21. 鎭海

加乙浦(東4里)

▣ 慶尚道 烽燧路線(大東地志 권10)

竹嶺(順興, 北準丹陽所伊山)

望前山(靈基)

城內山(榮川)

沙郎堂(順興)

堂北山(安東)

龍岾山(奉化)

昌八來山(榮川)

祿轉山(禮安)

開目山 峯枝山 甘谷山(安東)

馬山 鷄卵峴 城山 大也谷 蠅院(義城)

繩木山 甫只峴 吐乙山(義興)

餘音洞(新寧)

仇吐峴 城山 城隍堂 永溪方山(永川)

朱砂峯 蝶布峴 高位山 蘇山(慶州)

夫老山(彦陽)

渭川山(梁山)

鷄鳴山 荒嶺山(東萊, 東南合于干飛鳥見下)

龜峯 鷹峯(多大鎭, 初起右陸路)

(間烽)

新石山(西合于峯枝山見上)

藥山(安東)

神法山(眞寶)

廣山 大所山(寧海)

別畔山(盈德)

桃李山(清河)

知乙山 烏山(興海)

大冬背(迎日)

鉢山 磊城山 福吉(長_강)

禿山 下西知(慶州)

南木川 川內 加里山(蔚山)

下山 爾吉(西生鎭)

阿爾 南山(機張)

干飛鳥(東萊, 初起, 西合于荒嶺山見上)

○右沿海

○以上五十七處左兵營所管

(間烽)

炭項(西準延_연之鷄立嶺)

禪巖山(聞慶)

南山(咸昌)

所山 西山 回龍山(尙州)

所山(金山)

城隍山(開寧)

籃山 石峴(善山)

件臺山 朴執山(仁同)

角山 星山 伊夫老山(星州)

望山(高靈)

美崇山(陝川)

彌_미拉山(草溪)

可莫山(宜寧)

巴山(咸安)

加乙浦(鎭海)

曲山 天峙 牛山 彌_미勒山(固城)

加羅山(巨濟, 初起)

○以上二十六處右兵營所管

(間烽)

高城山(金山, 西準黃澗之訥伊項)

龜山(知禮)

巨未訖山 金貴山(居昌)

所峴山(陝川)

金城山(三嘉)

笠巖山(丹城)

廣濟山 望晉山(晉州)

鞍帖山(泗川)

角山 臺防山(晉州)錦山(南海, 初起, 西準本縣所乙山西合于全羅道順天突山島)

(間烽)

馬川山(大邱, 西合于星州角上見上)

城山(大邱)

末應德山(星州)

所伊山(玄風)

太白山(昌寧)

餘通 所山(靈山)

安谷山(漆原)

城隍山(昌原)

高山 沙火郎 天城鎮(熊川, 初起)

(間烽)

匙山(河陽, 北合于永川城隍堂見上)

城山(慶山)

法伊山(大邱)

北山 南山(清道)

盆項 城隍 南山 柏山(密陽)

子庵山 山城 省火也(金海, 南準熊川天城鎮見上)

○以上三十七處右兵營所管

(間烽)

佐耳山(固城, 西合于晉州角山見上)

蛇梁鎮主峯(固城, 東準本縣牛山見上)

餘音浦(昌原, 西準熊川沙火郎見上, 西準鎮海加乙浦見上)

所屹山(南海, 東準本縣錦山, 西準順天突山島見上)

(權設)

閑背串(固城唐浦鎮)
 柯乙串(助羅浦鎮)
 訥逸串(知世浦鎮)
 玉林山(玉浦鎮)
 登山(栗浦堡, 右四處巨濟)
 猿山(南海, 合于錦山)
 舊~~望~~非浦別望(固城)
 加背梁別望(巨濟)
 彌助項別望(南海, 合于錦山)
 三千堡別望(固城, 以上十處只報本邑本鎮)
 (元烽三十四 間烽九十 權設十)
 共一百三十四處

아. 『海東地圖』(18세기 중엽)

- 慶尙道 烽臺 207處
- 烽燧軍 3,225名, 保 6,256名

1. 密陽府

盆項烽燧(北距清道南山烽30里去應 南距城隍烽15里來應)
 城隍烽燧(北距盆項烽15里去應 南距南山烽20里來應)
 南山烽燧(北距城隍烽20里去應 南距栢山20里來應)
 栢山烽燧(北距南山烽20里去應 南距金海子菴烽30里來應)

2. 梁山郡

渭川烽臺(20里 南來應東萊鷄鳴烽 北去應彦陽夫老山烽陸路)

3. 靈山縣

餘通山烽燧(在桂城縣 南來應所山 北去應昌寧合山陸路)

所山烽燧(在縣西 南來應漆原安山谷 北去應餘通山)

4. 昌寧縣

合山烽燧(南來應靈山餘通山 北去應玄風所山陸路)

5. 陝川郡

美崇山烽燧(南來應草溪彌陀山 北去應高靈望山陸路)

所峴烽燧(在郡西 南來應三嘉金城山 北去應居昌金貴山陸路)

6. 草溪郡

彌陀山烽燧(南來應宜寧可莫山 北去應陝川美崇山陸路)

7. 居昌

金貴山烽燧(南來應陝川所訖山 北去應巨末訖山陸路)

巨末訖山(卽牛馬峴西峯 南來應金貴山 北去應知禮龜城陸路)

8. 三嘉縣

金城山烽燧(南來應丹城笠岩山 北去應陝川所峴陸路)

9. 晉州牧

臺方山烽燧(在州南 南來應南海錦山 北去應角山陸路)

望晉山烽燧(南來應泗川鞍站 北去應廣濟山陸路)

角山烽燧(在州南 南來應臺方山 西去應昆陽牛山 北去應泗川鞍站陸路)

廣濟山烽燧(在州北 南來應望晉山 北去應丹城笠岩山陸路)

10. 昆陽郡

牛山烽燧(東應晉州角山)

11. 南海縣

錦山烽燧(北去應晉州臺方山 西去應所訖山及猿山 南去應彌助項嶺上別望陸路)

所訖山烽燧(東來應錦山 南去應全羅道順天돌산도)

猿山烽燧(東來應錦山 南去應所訖山陸路)

12. 泗川縣

鞍帖烽燧(在縣南 南來應晉州角山 北去應同州望晉山陸路)

13. 咸安縣

巴山烽燧(南來應鎮海加乙浦 北去應宜寧可莫山陸路)

14. 巨濟府

鷄龍山烽燧(南來應加羅山 西來應固城彌勒山陸路)

加羅山烽燧(南來應閑背串)

閑背串烽燧(東來應加羅山 西去應彌勒山)

15. 漆原縣

安谷烽燧(在縣西 南來應昌原城隍山 北去應靈山金山陸路)

16. 鎭海縣

加乙浦烽燧(在縣東 西來應固城曲山 北去應咸安巴山陸路)

17. 熊川縣

烽臺3處 望1處

18. 金海府

省火也烽燧(南來應熊川天城煙臺 東北去應山城烽陸路)

山城烽燧(西南來應省火也烽 西北去應子菴烽陸路)

子菴烽燧(東南來應山城烽 北去應密陽栢山烽陸路)

19. 昌原府

城隍山烽燧(在府西 南來應熊川高山 北去應漆原安谷山)

餘音浦烽燧(南來應熊川沙火郎山 北去應鎮海加羅浦陸路)

20. 宜寧縣

可莫山烽燧(南來應咸安巴山 北去應草溪彌陀山陸路)

21. 丹城縣

笠岩山烽燧(在縣北 南來應晉州廣濟山 北去應三嘉金城山陸路)

자. 『嶠南誌』(1939년)

1. 南海

錦山烽燧(北應晉州臺方山 西應所屹山 北報猿山)

所屹山烽燧(東應錦山 北報猿山 西報全羅道順天古突山)

猿山烽燧(東應錦山 南報所屹山)

2. 昆陽

牛山烽燧(東應角山)

3. 晉州

臺方山烽燧(在郡南114里 南應南海錦山 北報角山)

望晉山烽燧(南應泗川鞍帖山 北報廣濟山)

角山烽燧(在郡南76里 南應臺方山 西應昆陽牛山 北報泗川鞍帖山)

廣濟山烽燧(在郡北31里 南應望晉山 北報丹城笠巖山)

4. 泗川

鞍帖烽燧(在郡南15里 南應晉州角山相距30里 北報同州望津山相距40里)

5. 丹城

笠巖山烽燧(在郡北27里 南應晉州廣濟山 北報三嘉金城山相距30里)

6. 三嘉

金城山烽燧(在郡北40里 南應丹城笠巖山 北報陝川所峴相距50里)

7. 草溪

彌陀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宜寧可莫山 北報陝川美崇山)

8. 宜寧

加莫山烽燧(南應咸安巴山 北報草溪彌陀山)

9. 陝川

美崇山烽燧(南應草溪彌陀山 東報高靈望山)

所峴烽燧(在郡西49里 南應三嘉金城山 北報居昌金貴山)

10. 居昌

金貴山烽燧(南應陝川所峴 北報渠末屹山相距40里)

渠末屹山烽燧(即牛馬峴西峰 南應金貴山 北報知禮龜城山相距50里)

11. 金海

盆山烽燧(在郡北5里 南應省火禮山 北報子岩山)

省火禮山烽燧(在郡南51里 南應熊川加德島 北報盆山)

子岩山烽燧(在郡北30里 南應盆山 北報密陽南山)

12. 密陽

南山烽燧(在郡南15里 南應金海紫岩山 北應推火山)

推火山烽燧(南應南山 北報盆項)

盆項烽燧(在郡北20里 南應推火山 北報清道南山)

13. 咸安

巴山烽燧(在郡南竝谷 南應鎮海加乙浦 北報宜寧可莫山)

14. 漆原

安谷山烽燧(在郡北30里 南應昌原城隍山 北報靈山所山)

15. 固城

彌勒山烽燧(南應巨濟加羅山 北報牛山相距水路25里)

牛山烽燧(南應彌勒山 北報天王山相距陸路30里)

天王帖烽燧(南應牛山 東報曲山相距陸路30里)

曲山烽燧(西應天王帖 東報鎮海加乙浦相距30里)

佐耳山烽燧(南應蛇梁鎮 北報晉州角山)

16. 統營

蛇梁鎮烽燧

17. 巨濟

鷄龍山烽燧(南應加羅山 西應固城彌勒山)

加羅山烽燧(在郡東南30里 西報水路40里閑背串)

閑背串烽燧(在閑山島 東應加羅山 西報水路20里固城彌勒山)

18. 昌原

城隍山烽燧(在郡西15里 東應熊川高山 北報 漆原安谷山烽燧相距25里)

餘音浦烽燧(在郡西60里 東應熊川沙火郎山 西報鎮海加乙浦相距30里 北報高山)

19. 鎭海

加乙浦烽燧(在郡東4里 西應固城曲江 東應昌原餘浦 北報咸安巴山)

20. 昌寧

合山烽燧(在郡北20里 南應靈山餘通山 北報玄風所禮山相距30里)

21. 靈山

餘通山烽燧(在郡東14里 南應所山 北報昌寧合山)

22. 梁山

渭川烽燧(南應東萊鷄鳴山相距40里 北報彥陽夫老山相距40里)

【표 3】경상도지역 봉수 일람표

시·군	봉수명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동국 여지지	여지 도서	대동 지지	해동 지도	교남지
거제시	가라산	×	○	×	○	○	○	○	○	○
	가라산 연대	○	×	○	×	×	×	×	×	×
	계룡산	×	×	×	○	○	○	×	○	○
	등산남망(가배랑)	×	×	×	×	×	×	○	×	×
	옥림산(옥포)	×	×	×	×	×	×	○	×	×
	눌일꽃(지세포)	×	×	×	×	×	×	○	×	×
	가을꽃(울포)	×	×	×	×	×	×	○	×	×
거창군	금귀산	×	○	○	○	○	○	○	○	○
	금귀산성	○	×	×	×	×	×	×	×	×
	거말흘산	×	×	×	○	○	○	○	○	○
	거말흘	×	×	○	×	×	×	×	×	×
고성군	미륵산	○	○	○	○	○	○	○	×	○
	우산	○	○	○	○	○	○	○	×	○
	천왕점	○	○	×	○	○	○	×	×	○
	천치	×	×	×	×	×	×	○	×	×
	곡산	○	○	×	○	○	○	○	×	○
	좌이산	○	○	○	○	○	○	○	×	○
김해시	고암	○	×	×	×	×	×	×	×	×
	타고암	×	○	×	×	×	×	×	×	×
	자암산	○	○	○	○	○	○	○	×	○
	자암	×	×	×	×	×	×	×	○	×
	산성	×	×	○	×	×	×	○	○	×
	분산	×	×	×	○	○	○	×	×	○
남해군	금산	×	○	○	○	×	○	○	○	○
	금산 연대	○	×	×	×	×	×	×	×	×
	소흘산	○	○	○	○	×	○	○	○	○
	망운산	○	○	×	×	×	×	×	×	×
	대방산	×	×	×	○	○	○	○	○	○
	대방산 연대	×	×	○	×	×	×	×	×	×
	원산	×	×	×	○	×	○	○	○	○
	영상별망(미조항)	×	×	×	×	×	×	○	×	×
밀양시	남산	○	×	○	○	×	×	○	○	○
	종남산	×	×	×	×	×	○	×	×	×
	추화산	×	×	×	○	×	○	×	×	○
	추화산성	○	×	×	×	×	×	×	×	×

시·군	봉수명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동국 여지지	여지 도서	대동 지지	해동 지도	교남지
밀양시	산성	×	×	○	×	×	×	×	×	×
	성황	×	×	×	×	×	×	○	○	×
	분항	○	×	○	○	×	×	×	○	○
	분항산	×	×	×	×	×	○	×	×	×
	분성	×	×	×	×	×	×	○	×	×
사천시	백산	×	×	×	×	×	○	○	○	×
	침지	○	○	×	×	×	×	×	×	×
	성황당	○	○	×	×	×	×	×	×	×
	우산	×	×	○	○	○	○	×	○	○
	각산	×	×	×	○	○	○	○	○	○
	각산 연대	×	×	○	×	×	×	×	×	×
	각산향주산 연대	○	×	×	×	×	×	×	×	×
	각산향주산	×	○	×	×	×	×	×	×	×
	안점	×	×	○	○	○	×	○	○	○
	안점산	×	×	×	×	×	○	×	×	×
양산시	원적산	×	×	○	○	×	×	×	×	×
	위천	×	×	×	×	×	○	×	○	○
	위천산	×	×	×	×	×	×	○	×	×
의령군	가막산	×	○	○	○	○	○	○	○	○
진주시	망진산	○	○	×	○	○	○	○	○	○
	망진산 연대	×	×	○	×	×	×	×	×	×
	광제산	○	○	×	○	○	○	○	○	○
	광제산 연대	×	×	○	×	×	×	×	×	×
	광제	×	×	×	×	×	○	×	×	×
	입암산	×	×	×	○	○	○	○	○	○
	입암	×	○	○	×	×	×	×	×	×
창녕군	봉산	○	○	○	○	×	×	×	×	×
	소산	○	○	×	×	×	○	○	○	×
	여통	○	×	○	×	×	×	○	×	×
	여통산	×	○	×	○	×	○	×	○	○
	합산	×	×	○	○	×	○	×	○	○
	태자산	×	×	×	×	×	×	○	×	×
창원시	사화랑산	○	○	×	○	○	×	×	×	×
	사화랑	×	×	×	×	×	○	○	×	×
	고산	○	○	×	○	○	○	○	×	×
	장복산	○	○	×	○	○	○	×	×	×
	여포	○	○	○	×	×	×	×	×	×

시·군	봉수명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동국 여지지	여지 도서	대동 지지	해동 지도	교남지
창원시	여음포	×	×	×	○	○	○	○	○	○
	성황당	○	○	×	×	×	○	×	×	×
	성황당 연대	×	×	○	×	×	×	×	×	×
	성황산	×	×	×	○	○	×	○	○	○
	가을포	×	○	×	○	○	○	○	○	○
	가을포 연대	×	×	○	×	×	×	×	×	×
	성황산	×	×	×	○	○	×	○	○	○
통영시	한배곶	×	×	×	×	×	○	○	×	×
	한산도(삼천포 별)	×	×	×	×	×	×	○	×	×
	공수산	×	×	×	×	×	×	○	×	×
	사랑진	×	×	×	×	×	×	×	×	○
하동군	양둔산 연대	○	○	×	×	×	×	×	×	×
	계화산 연대	○	○	×	×	×	×	×	×	×
함안군	지고	×	×	×	×	×	○	×	×	×
	소산	○	○	×	×	×	×	×	×	×
	파산	×	×	○	○	○	×	○	○	○
	안곡산	×	○	×	○	○	○	○	×	○
	안곡	×	×	×	×	×	×	×	○	×
합천군	소현	○	○	○	○	○	×	×	○	○
	소현산	×	×	×	×	×	○	○	×	×
	미송산	○	○	○	○	○	○	○	○	○
	미타산	○	○	○	○	×	○	○	○	×
	금성	×	○	○	×	×	○	×	×	×
	금성산	×	×	×	○	○	×	○	○	○

경상도 각 지역 봉수

▣ 창원(그림 1)



창원 성황당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창원부 성황봉수대(해동지도)

▣ 진주목(그림 2)



진주목(영남지도)



진주목 광제봉수대(해동지도)



진주목 망진봉수대(해동지도)



적량진 진주 각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진주 각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김해(그림 3)



김해부(영남지도)



김해부 자암봉수대(해동지도)



김해부 성화야봉수대(해동지도)



김해부 산성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김해부 자암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거제(그림 4)



거제부(영남지도)



거제부 가라산봉수대(해동지도)



가배랑진 남망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거제부 가라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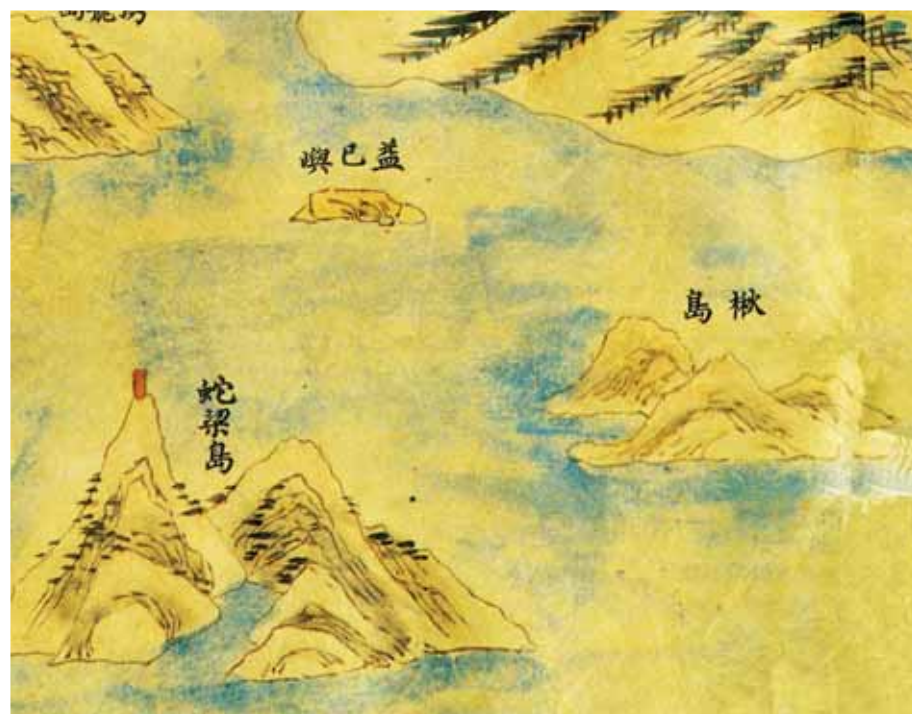


가라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통영(그림 5)



통영 사랑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당포진 사랑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칠원(그림 6)



칠원 안곡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칠원현 안곡봉수대(해동지도)

▣ 응천(그림 7)



웅천현(영남지도)



웅천현 천성보 연대봉수대(해동지도)



웅천현 고산봉수대(해동지도)



웅천현 고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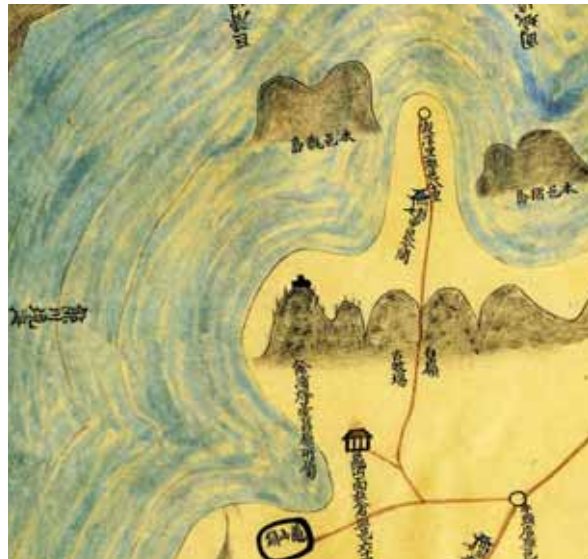


웅천현 천성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진해(그림 8)



진해현 여음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창원부 여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창원 여포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진해현 여포봉수대(해동지도)

▣ 사천(그림 9)



사천현 안점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삼가(그림 10)



단성현 삼가 금성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삼가현 금성산봉수대(해동지도)

▣ 남해(그림 11)



미조향진 금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적량진 대방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남해 금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남해 원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남해현 소흘산봉수대(해동지도)



남해현 원산봉수대(해동지도)

▣ 고성(그림 12)



고성현(영남지도)



고성현 좌이산봉수대(해동지도)



고성현 천왕점봉수대(해동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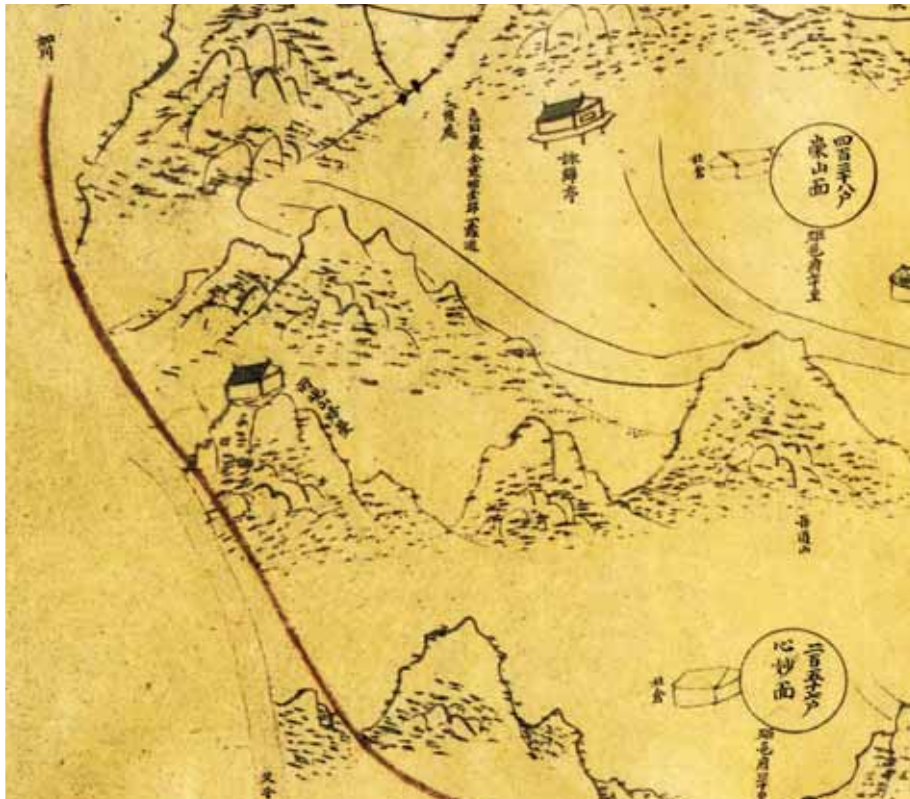


통영 미륵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구소비진 좌이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합천(그림 13)



합천 소현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합천현 소현산봉수대(해동지도)

▣ 밀양(그림 14)



밀양부 백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추화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남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분향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밀양부 남산봉수대(해동지도)



밀양부 백산봉수대(해동지도)

2. 부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 東萊縣

荒嶺山烽火(在縣南10里許 西望東萊縣地石城烽火相去30里 東望縣地干非烏烽火相去15里)
自干非烏烽火(東望機張縣地南山烽火相去19里245步)

2. 機張縣

南山煙臺烽火(在縣東5里許 西望東萊縣地干非烏烽火相去23里 北望蔚山郡地林乙郎浦烽火相去25里)

나. 『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1454년)

1. 東萊縣(봉화3처)

東平石城(在縣南 西准金海省火也 東准本縣黃嶺山)

黃嶺山(東准縣干飛烏)

干飛烏(東准機張南山)

다. 『慶尙道續讚地理誌』(1469년)

1. 機張縣

현동

南山烟臺烽火(南與東萊干非烏烽火相准 北與蔚山林乙郎浦烽火相准)

2. 東萊縣

임내 東平縣南

石城烟臺烽火(西與海邊金海省火也烟臺烽火相准 北與荒嶺山烟臺烽火相准)

荒嶺山烽火(西與梁山鷄鳴山烽火相准 又與干非烏烟臺烽火相准)

干非烏烽火(北與機張南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東萊縣

黃嶺山烽燧(西應吾海也項 北應鷄鳴山 東應干飛烏山)

鷄鳴山烽燧(南應黃嶺山 北應梁山郡圓寂山)

干飛烏山烽燧(北應機張縣南山 西應黃嶺山)

吾海也項烽燧(東應黃嶺山 西應金海府省火禮山)

(신증)鷹峯烽燧(東應吾海也項 西應金海省火禮山)

2. 機張縣

南山烽燧(南應東萊縣干飛烏山 北應蔚山郡林郎浦)

마. 『輿地圖書』(1760년)

1. 東萊

荒嶺山烽燧(在府南10里 西應龜峯 北報鷄鳴山相距30里)

鷄鳴山烽燧(在府北20里 南應荒嶺山 北報梁山渭川相距40里)

吾海也項烽燧(東應荒嶺山 西報金海府省下禮山 今廢)

(구증)鷹峯烽燧(在府南50里 東報龜峯相距25里)

(신증)龜峯烽燧(在府西25里 吾海也項廢設移于此西應鷹峯 東報荒嶺山相距20里)

干飛鳥烽燧(在府東20里 北報機張南山相距15里)

2. 機張

南山烽燧(在縣南3里 南應東萊干飛鳥山 北報阿訖浦相距15里)

阿訖浦烽燧(在縣北30里 南應南山 北報蔚山訖吉相距15里)

바. 『海東地圖』(18세기 중엽)

1. 機張縣

南山烽燧(3里 南來應東萊干飛鳥烽 北去應阿訖烽陸路)

阿訖烽燧(30里 南來應南山烽燧 北去應蔚山訖吉烽陸路)

사. 『大東地志』(1864년)

1. 機張

阿爾(北20里), 南山(南5里)

2. 東萊

鷄鳴山(北25里 金井山北峯), 荒嶺山(東5里), 龜峯(西南25里)

鷹峯(西南50里, 初起), 干飛鳥(東15里上山南峯, 初起)

아. 『嶠南誌』(1939년)

1. 東萊

黃嶺山烽燧(西應龜峰 北報鷄鳴山 東應干飛鳥山相距40里)

鷄鳴山烽燧(南應黃嶺山 北報渭川相距40里)

吾海也項烽燧(東應黃嶺山 西報金海省火禮山)

鷹峰烽燧(在郡南50里 左道初起點 東應龜峰相距25里)

龜峰烽燧(在郡西25里 吾海也項廢後移設於此 西應鷹峰 東報黃嶺山相距20里)

干飛鳥山烽燧(在郡東20里 左道左邊初起點 報機張南山相距10里)

2. 機張

南山烽燧(在郡南5里 南應東萊干飛鳥山 北報阿訖浦相距30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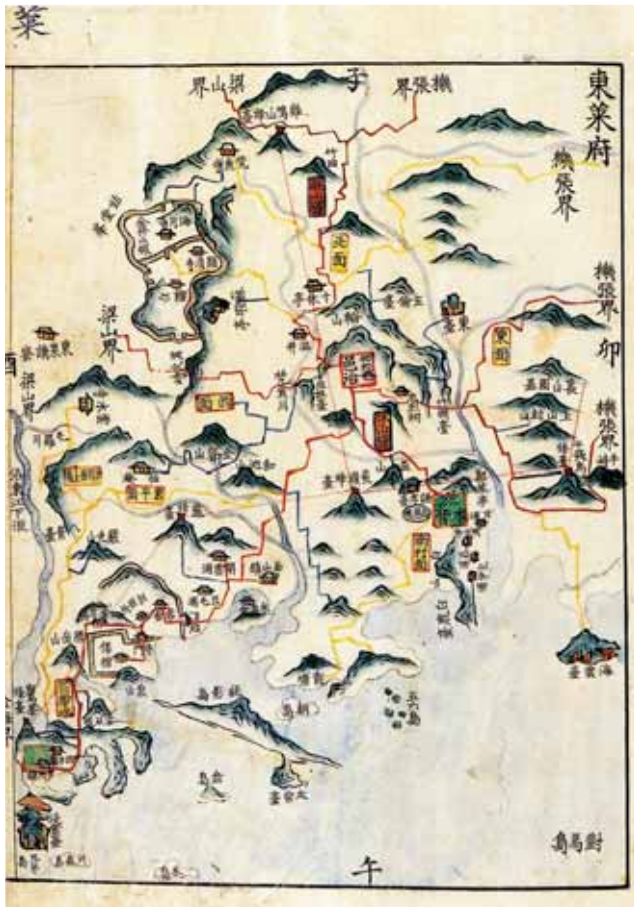
阿訖浦烽燧(在郡北30里 南應南山 北報蔚山訖吉相距15里)

【표 4】 부산지역 봉수 일람표

지역	봉수명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 도서	해동 지도	대동 지지	교남지
부산	황령산	○	○	○	○	○	×	○	○
	간비오	○	○	○	×	○	×	○	×
	간비오산	×	×	×	○	×	×	×	○
	석성	×	○	×	×	×	×	×	×
	석성 연대	×	×	○	×	×	×	×	×
	계명산	×	×	×	○	○	×	○	○
	오해야항	×	×	×	○	○	×	×	○
	응봉	×	×	×	○	○	×	○	○
	구봉	×	×	×	×	○	×	○	○
기장	남산 연대	○	○	○	×	×	×	×	×
	남산	×	×	×	○	○	○	○	○
	아이포	○	○	×	×	○	○	×	○
	아시포	×	×	×	○	×	×	×	○
	아이	×	×	×	×	×	○	○	×

부산 각 지역 봉수

▣ 동래(그림 15)



동래부(영남지도)



동래부 계명산봉수대(해동지도)



동래부 간비오봉수대(해동지도)



동래부 계명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부산진 구봉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기장(그림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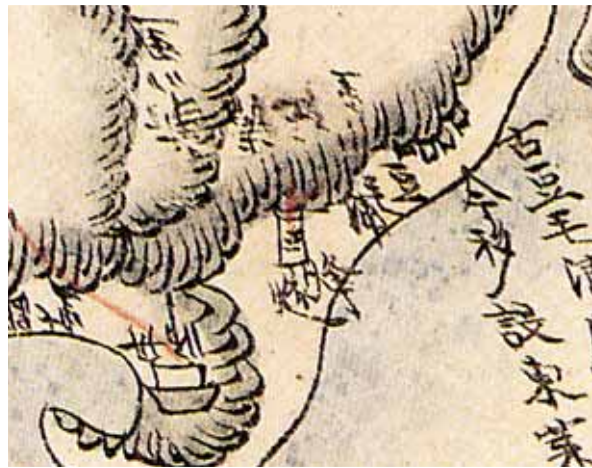
기장 남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기장현 아이봉수대(해동지도)



기장 아이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기장현 남산봉수대(해동지도)

3. 울산의 봉수자료와 지도

가. 『慶尙道地理志』(1425년)

1.蔚山郡

林乙郎浦烽火(在郡南61里74步許 南望機張縣地南山烽火相去25里 北望郡地阿爾浦烽火相去53里107步)

自阿爾浦烽火(北望爾吉烽火相去25里180步)

自爾吉烽火(北望下山烽火相去39里340步)

自下山烽火(北望加里烽火相去23里17步)

自加里烽火(北望川內烽火相去21里)

自川內烽火(北望南木烽火相去21里305步)

自南木烽火(北望柳等浦烽火相去28里15步)

自柳等浦烽火(北望慶州地顏山烽火相去30里)

나. 『世宗實錄地理誌』(慶尙道)(1454년)

1.蔚山郡(봉화8처)

林乙郎浦(在郡南 南准機張縣南山 北准阿爾浦)

阿爾浦(北准爾吉)

爾吉(北准下山)

下山(北准加里)

加里(北准川內)

川內(北淮南木)

南木(北淮柳等浦)

柳等浦(北淮慶州顔山)

다. 『慶尙道續贊地理誌』(1469년)

1. 蔚山郡

군남

林乙郎浦烽火(南與機張南山烽火相准 東與阿示烽火 及示吉烽火相准)

示吉烽火(東與下山烽火相准 北與加里山烽火相准)

加里山烽火(東與川內烽火相准)

川內烽火(東與南木烽火相准)

南木烽火(東與柳等浦烽火相准)

柳等浦烽火(北與慶州下西知烽火相准)

2. 彦陽縣

夫老伊山烽火(南與梁山圓寂山烽火相准 北與慶州仍邑甫所山烽火相准)

라. 『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1. 蔚山郡

林郎浦烽燧(在郡南87里 南應機長縣南山 東應阿示浦)

阿示浦烽燧(在郡南75里 西應林郎浦 東應示吉串)

示吉串烽燧(在郡南67里 西應阿示浦 東應下山)

下山烽燧(在郡南50里 西應示吉串 東應加里山)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應下山 東應川內 北應慶州府大帖)

川內烽燧(在方魚津西 西應加里山 東應南木川)

南木川烽燧(西應川內 北應柳浦)

柳浦烽燧(南應南木川 北應慶州府下西知)

2. 彦陽縣

夫老山烽燧(南應梁山郡圓寂山 北應慶州所山)

마. 『輿地圖書』(1760년)

1. 彦陽

夫老山烽燧(在縣南5里 南應梁山渭川烽 北報慶州蘇山烽相距25里)

2. 蔚山

示吉(在府南60里 西自機張阿示來準 東距下山10里相應)

下山(在府南50里 西準示吉 東應加里)

加里(在府南30里 西準下山 東應川內)

川內(在府東20里 西準加里 東應南玉)

南玉(在府東30里 西準川內 東應慶州下西知烽)

바. 『海東地圖』(18세기 중엽)

1. 蔚山府

林郎浦烽燧(在郡南 南應機張南山 東應阿示浦)

阿示浦烽燧(在郡南 西來應林郎浦 東去應示吉串陸路)

示吉串烽燧(在郡南 西來應阿示浦 東去應下山陸路)

下山烽燧(在郡西 西來應示吉串 東去應加里陸路)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來應下山 東去應川內 北應慶州大帖陸路)

川內烽燧(在站魚津西 西來應加里山 東去應南木川陸路)

南木川烽燧(西來應川內 北去應柳浦陸路)

柳浦烽燧(南來應南木川 北去應慶州下西知陸路)

2. 彦陽縣

夫老山烽燧(5里 南來應梁山渭川 北去應慶州蘇山陸路)

사. 『大東地志』(1864년)

1. 蔚山

南木川(東30里), 川內(淸魚津西), 加里山(開雲浦)

下山(南50里), 爾吉(南67里)

2. 彦陽

夫老山(南5里)

아. 『嶠南誌』(1939년)

1. 彦陽

夫老山烽燧(在郡南5里 南應梁山渭川相距40里 北報慶州所山相距25里)

2. 蔚山

林郎浦烽燧(在郡南87里 南報機張南山 東應阿示浦)

阿示浦烽燧(在郡南75里 西應林郎浦 東報示吉串)

示吉串烽燧(在郡南67里 西應阿示浦 東報下山)

下山烽燧(在郡南50里 西應示吉串 東報加里山)

加里山烽燧(在開雲浦 西應下山 東報川內 北報慶州大站)

川內烽燧(在方魚津 西應加里山 東報南木川)

南木川烽燧(西應川內 北報柳浦)

柳浦烽燧(南應南木川 北報慶州下西知)

【표 5】 울산지역 봉수 일람표

지역	봉수명	경상도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속찬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여지 도서	해동 지도	대동 지지	교남지
울산	임을랑포	○	○	○	×	×	×	×	×
	임랑포	×	×	×	○	×	○	×	○
	이길	○	○	○	×	○	×	○	×
	시길곶	×	×	×	○	×	×	×	○
	이길곶	×	×	×	×	×	○	×	×
	하산	○	○	×	○	○	○	○	○
	가리	○	○	×	×	○	×	×	×
	가리산	×	×	○	○	×	○	○	○
	천내	○	○	○	○	○	○	○	○
	남목	○	○	○	×	×	×	×	×
	남목천	×	×	×	○	×	○	○	○
	남옥	×	×	×	×	○	×	×	×
	유등포	○	○	○	×	×	×	×	×
	유포	×	×	×	○	×	○	×	○
언양	부로이산	×	×	○	×	×	×	×	×
	부로산	×	×	×	○	○	○	○	○

울산지역 봉수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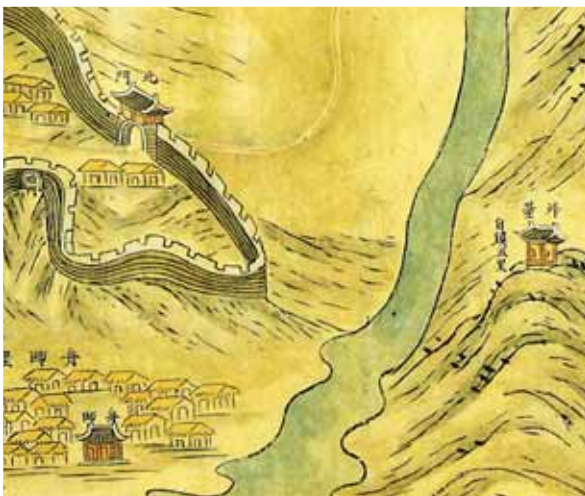
울산부(영남지도)



울산부 이길봉수대(해동지도)



울산부 하산봉수대(해동지도)



울산 서생진 하산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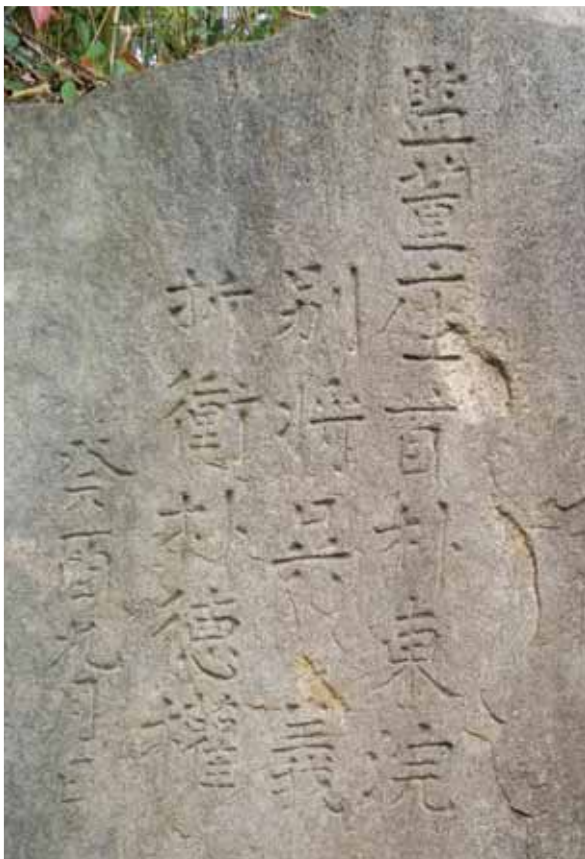
울산 남목봉수대(조선 후기 지방지도)

□ 김해 분산성 관련 명문

監董 座首 朴東浣 別將吳 義 折衝朴德權 癸酉九月 日」

- 현재 복원된 봉수대 우측 아래 길 옆 바위면에 새겨진 각자이다. 바위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너비 105cm 정도이며, 바위면은 비교적 수직으로 편편한 느낌을 갖는다. 글자는 비교적 상단부분에 새겨져 있고, 글자면의 전체 규모는 63×34cm 정도이고 단위글자는 8×8cm 정도가 대부분이다. 계유는 고종 10년(1873)으로 확인된다. 이는 분산성 내에 있는 충의각에 있는 ‘부사통정대부정현석영세불망비(府使通政大夫鄭顯奭永世不忘碑)’ 비는 고종 8년(1871)에 분산성을 개축한 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고종 11년(1874)에 세운 것으로, 뒷면에 ‘갑술칠월 일별장오 의립(甲戌七月 日別將吳 義立)’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고종 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는 별장 오의가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어 각자명문에서도 역시 별장 오의로 나타나고 있어 봉수대와 관련되기 보다는 분산성 개축과 관련 있는 명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정현석(鄭顯奭, 1817~1899년)은 조선 말기 고종 조의 문신으로 1867년부터 1870년까지 3년간 진주 목사를 역임하였다.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보여(保汝), 호는 박원(璞園)이다. 1817년 순조 18년 정기화(鄭琦和)의 아들로 태어났다. 1844년 헌종 10년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관직이 통훈대부(通訓大夫)에 이르렀다. 1867년 고종 4년 진주목사(晉州牧使)로 부임하여 1870년까지 활동한 후 1870년에 김해 부사로 전임되었다.



▣ 합천 금성산봉수 관련 명문

起撫 沈成化 都監 全(立)鶴 別將陳聖大成造有功 碑 乾隆43年戊戌八月日 洪奉才 公李完才 李命大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소재 금성산(해발 608m)에 위치하는 금성산봉수대(경상남도 기념물 제219호) 관련 명문이 독립된 바위면에 음각되어 있다. 금성산 정상부는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남쪽 아랫부분에 봉수관련 가옥이 있었던 자리와 석축 등이 일부 확인된다. 현재는 민묘가 1기 자리하고 있으나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고, 민묘의 뒷부분 산죽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에서 기와, 자기편, 도기편 등이 많이 채집된다. 바위의 크기는 높이 126cm, 너비 120cm 정도이나, 오른쪽 상부가 경사 처리되어 있어 전체 모습은 오각형을 가진다. 글씨는 좌측으로 치우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서 오른쪽으로는 후대에 덧새긴 느낌의 이름이 일부 확인된다. 起撫이란 단어는 旗撫의 오기로 느껴지며, 起撫 沈成化, 都監 全(立)鶴, 別將陳聖大 등 3인의 공적이 있음을 새긴 명문이다. 이 공은 바로 봉수대 건립으로 추정된다. 건륭 43년은 조선 정조 2년(1778)이며, 8월에 준공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오른쪽에 새겨진 洪奉才, 公李完才, 李命大 등 3인은 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급이 없는 상태로 이름만 새겨져 있어 봉수와 관련된 자들인지 의심스럽다.



4. 봉수관련 각종 문헌자료

가. 경국대전(經國大典) > 병전(兵典) > 토관직(土官職)

【봉수(烽燧)】

봉화는 평상시에는 하나, 적이 나타나면 둘, 가까이 접근하면 셋, 지경을 침범하면 넷, 접전하면 다섯을 올리는데, 수도에서는 오원(五員)이 본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영장수에게 보고한다.

목멱산봉화대는 동쪽으로 제1대가 영안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양주 아차산의 봉화를 받고 제2대가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 천천령의 봉화를 받으며 제3대가 평안도의 육로로부터 오는 모악산 동쪽 봉우리의 봉화를 받고 제4대가 평안도, 황해도의 해로로부터 오는 모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화를 받으며 제5대가 충청도, 전라도에서 오는 양천 개화산의 봉화를 받는다. 본조에서는 사람을 고정시켜 놓고 망을 보게 하다가 이튿날 새벽에 승정원에 통지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게 한다. 만약 번고가 있으면 밤중이라도 즉시 보고한다.

목멱산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4명, 오장 2명을, 연변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10명, 오장 2명을, 내륙 지방에는 각 봉화소마다 군사 6명, 오장 2명을 둔다. 군사와 오장은 모두 봉화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구름이 끼어 캄캄하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길로 신호가 통하지 않을 때에는 봉화군이 차례로 달려와서 보고한다.

【烽燧】

烽燧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五員告本曹 外則伍長告鎮將

木覓山烽燧東 第一准永安道江原道來楊州~~峽~~差山烽燧 第二准慶尙道來廣州穿川嶺烽燧 第三准平安道陸路來母嶽東峯烽燧 第四准平安道黃海道海路來母嶽西峯烽燧 第五准忠清道全羅來陽川開花山烽燧 本曹定人~~候~~望翌日早晨告承政院以啓 著有變則雖夜則告 木覓山每所軍四人五員二人沿邊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 內地則每所軍六人伍長二人 軍及伍長并以烽燧近處居人差定, 或雲暗或風亂煙火不通之時 烽燧軍次次馳報

나. 『조선왕조실록』의 봉수 기록

○ 태종 11권, 6년(1406) 3월 5일(을미)

-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가 그 도(道)의 사의(事宜)를 올렸다. 아뢰기를, “경원(慶源) 지경에 흠어져 사는 군민이 아울러 성 가까이 모여 살면서 농사를 지으니, 초적이 나오는 요로 가운데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봉에 봉수를 설치하고 척후를 부지런하게 하여, 만약 침입하는 적이 있으면 병마사가 정장을 거느리고 가서 변(變)에 대응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東北面都巡問使上其道事宜 啓曰: “慶源境散接軍民, 竝於近城, 聚居業農 其草賊出來要路, 通望高峯, 置烽燧 謹斥候, 遇有寇敵, 兵馬使率領丁壯應變” 從之)

○ 태종 28권, 14년(1414) 윤9월 21일(신유)

- 호조참의 황자후(黃子厚)가 복명하였다. 임금의 황자후가 살펴본 바 대로 배가 정박하는 곳을 개착할 만하다고 하니, 김승주(金承柱)가 왜구가 때없이 침입하니, 마땅히 봉수를 삼가고 척후를 엄격히 해야 합니다. 배를 정박하는 해문(海門)은 완급에 대응하므로 포(浦) 안에 깊이 들어와서 관망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戶曹參議黃子厚復命 上以子厚所視泊船處爲可鑿, 金承柱以爲: “倭寇無時, 宜謹烽燧, 嚴斥候, 泊船海門, 以應緩急, 不可深入浦內, 以妨觀望”)

○ 세종 60권, 15년(1433) 6월 23일(갑진)

-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봉수의 법은 옛날부터 있는 것으로서 변경의 경보를 알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봉수는 실효가 없는 것 같다. 근자에 여연에서 적의 침입이 있었는데 봉수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이 전하였으니, 대개 봉수를 맡은 자가 서로 대하는 봉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부로 봉화를 들기 때문이다. 가령 적의 번고를 잘 살피고 봉화를 두 번 들어서 서울에 전달될지라도, 서울에서 설비하는 일이 없으므로 윤덕도 봉수가 쓸 데 없다고 말하였으니,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허조가 아뢰기를, “봉수를 세운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갑자기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혹 맡은 자가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각도 감사가 고찰하여 죄를 주면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겼다.

(上謂諸臣曰: “烽燧之法, 自古所有, 欲知邊警而預爲之備也, 我國烽燧之設, 似無實驗 近者閭延有賊變, 而烽燧之傳, 與平日無異, 蓋以掌烽燧者, 或不候望而妄舉也 縱令審變再舉, 以達于京都, 在京都, 固無設備之事 閔德亦言: “烽燧無益” 廢之何如?” 許稠啓曰: “立之已久, 不可遽革. 設有掌者不察妄舉, 則各道監司考察論罪可也” 上然之)

○ 세종 114권, 28년(1446) 10월 6일(경자)

-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봉수의 법은 변경에 관계되므로 이해가 작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역대의 제도가 거의 모두 봉화로서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역대의 법을 참작하여 영갑(令甲)에 기재하고, 《속전》에 기재한 것이 그 법이 지극히 상세하고 주밀하였는데, 다만 변방의 관리들이 검거함이 엄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점차로 쇠퇴하게 되어, 마침내 긴요한 변보로 하여금 중도에서 폐하여 이르지 않게 되니 진실로 부당한 일입니다. 근일에 야인이 무창(茂昌)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 실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폐단을 구제하는 계책은 주밀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도 연변의 연대 1소에 봉화군 10명과 감고 2명을 정하여, 나누어 상변과 하변으로 삼게 하고, 중복의 여러 봉후에도 봉화군을 매 1소에 6명과 감고 2명을 정하고, 또한 2번으로 나누어 밤낮으로 항시 있으면서 망보게 하고, 이미 만들어진 법에 의거하여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서울에 전달하게 하고, 각도의 수로와 육지의 봉화를 서로 온 길에 준하게 하고, 병조로 하여금 아무 곳의 봉화는 아무 곳의 봉화에 준하게 하여 산명과 식수(息數)를 수로와 육지로 나누어 장부에 등록하게 하고, 병조·승정원·의정부와 봉화가 있는 곳의 각 고을의 관찰사·절제사·처치사의 영(營)에 각기 1건씩을 간수하여 후일의 참고에 빙거로 삼게 하고, 관찰사와 절제사의 관할하는 각 처에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여, 만약 혹시 점고에 빠지면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장형 80대를 집행하고, 삼범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하고, 능히 고찰하지 못한 관리는 초범은 태형 50대를 집행하고, 재범은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 1백 대에 이르게 하고 관직을 파면시키며, 만약 노약과 잔질로써 그 임무를 감내하지 못하여 사적으로 스스로 대체시킨 사람은 《대명률》의 ‘수어군인이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을 속여 대체시킨 자는 각기 2등을 감형한다.’는 조목에 의거하여, 대체한 자는 장형 60대를 집행하고 명적을 회수하여 충군하고, 정신은 장형을 80대를 집행하고 그전대로 충군하며, 그 자손·제질과 동거하는 친속의 봉족인 내에서 능히 그 임무를 감내할 만한 사람이 대체하기를 지원한다면 허가해 주고, 상시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써 하게 하여, 만약 앞의 봉화가 준하지 않으면 《당률》에 의거하여 즉시 다음 봉화에 가서 알리고, 있는 소재관에서는 사연을 추고하여 병조에 공문을 보내게 하며, 그 연기를 내고 불을 켜는 일을 준행하지 않는 군사는, 변고가 있는 시기에는 율문의 ‘군사의 정보를 빨리 보고하는 일에 있어 숨기고 속히 주문하지 않는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한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결하게 하고, 사변이 없을 시기에는 명령을 어긴 것으로써 논죄하게 하며, 만약 봉수를 조심하지 아니하여 군사를 미처 정돈하지 못해서 호구와 군인의 성 지키는 것을 함패시킨 자는, 당해 봉화군은 율문의 ‘높은 곳에서 망보고 순찰하는 사람이 빨리 보고하는 일에 실수하여, 성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손실시킨 사람은 참형에 처하고, 만약 적병이 경내에 침입하여 인민을 침략하게 한 사람은 장형 1백 대를 집행하고 변방의 먼 곳으로 보내어 충군시킨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논죄 처치하고, 서울과 지방의 죄인이 도형을 범한 사람은 즉시 봉화군의 원액을 구애하지 말고 봉화군으로 정해 보내어 공역하게 하고, 역이 만기가 되면 놓아 보내게 하며, 서울의 남산봉화 5소의 간망군은 전에는 15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을 더하고 상변과 하변으로 나누어, 매 1소마다 2명은 입직하고, 5명은 경수상직하는 예에 의거하여 봉화가 있는 곳에 서로 번갈아 밤낮으로 입직하게 하고, 군인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과 망보는 것의 근만을 고찰해서, 《육전》에 의거하여 날마다 사변이 있고 없는 것을 열기해 써서 병조에 바치게 하고,

병조에서는 또 전일의 것에 의거하여 검거 고찰할 것이며, 또 연변 연대의 축조하는 법식과 중부 봉화의 배설하는 제도 및 군인의 출근을 감고하여 관직을 상주어 권려하고 완호하는 조목은 주관한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이 앞서 봉수의 법이 한결같이 쇠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오로지 법령을 등한히 한 때문인데, 지금 비록 이와 같이 법을 제정하더라도 불행하는 관리가 이것을 높은 다락 위에 얹어 두고 즉시 효유(曉諭)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매한 백성으로 하여금 법률을 알지 못하여 갑자기 죄고에 빠지게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항의 각 조목을 군인을 감고하는 곳에 상세히 개유(開諭)하여 법률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극진하게 포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議政府啓: “烽燧之法, 關係邊警, 利害不小, 故歷代之制, 率以謹烽火爲重 國家參酌歷代之法, 載在令甲, 《續典》所載, 其法至爲詳密, 第因邊方官吏檢舉不嚴, 馴致陵夷, 遂使緊關邊報中廢不至, 誠爲不當 近日野人寇茂昌之時, 可知其失也, 救弊之策, 不可不周. 各道沿邊烟臺一所, 定烽火軍十名, 監考二名, 分爲上下番; 腹裏諸烽堡, 定烽火軍每一所六名, 監考二名, 亦分二番, 晝夜恒在相望, 依已成之法, 晝烟夜火, 以達于京 而各道水陸烽火, 相準來路, 令兵曹某處烽火準某處烽火, 并山名息數水陸分揀, 置簿兵曹承政院議政府, 烽火所在各官觀察使節制使處置使營, 各藏一件, 以憑後考 觀察使節制使所管各處, 差人擲簡, 如或闕點, 初犯答五十, 再犯杖八十, 三犯杖一百; 不能考察官吏, 初犯答五十, 再犯加一等罪, 至杖一百罷職 若以老弱殘疾不堪其任者, 私自代替人, 依《大明律》守禦軍人雇人冒名代替者各減二等條, 替身杖六十, 收籍充軍; 正身杖八十, 依舊充軍 其子孫弟姪同居親屬奉足人內, 能堪其任者, 自願代替, 則聽許 常時晝烟夜火, 若前烽不準, 則依唐律, 即時往告于次烽火所在官, 辭緣推考, 移文兵曹 其烟火不準之軍, 有變時則依律文凡飛報軍情隱匿不速奏聞者杖一百條決罪, 無事時則以違令論罪 若烽燧不謹, 未及整兵, 以致陷敗戶口軍人城守者, 當該烽火軍, 依律文望高巡哨之人失於飛報以致陷城損軍者斬 若被賊侵入境內, 侵掠人民者, 杖一百, 發邊遠充軍條論置 京外罪人犯徒者, 隨即不拘烽火元額, 定送供役, 役滿放遣 京城南山烽火五所看望軍, 在前十五名, 今加五名, 分爲上下番, 每一所定二名入直; 五員依警守上直例, 烽火在處, 輪次晝夜入直 軍人到未到及看望勤慢考察, 依《六典》, 每日事變有無, 開寫呈兵曹, 兵曹又依前檢舉考察 且沿邊烟臺造築之式, 與腹裏烽火排設之制及監考軍人給到賞職勸勵完護之條, 令主將兵曹磨鍊施行 前此烽燧之法, 一至陵夷, 專是慢令所致 今雖如此立法, 奉行官吏, 束之高閣, 不卽曉諭, 遂使愚民不知法律, 遽陷罪辜, 不可不慮 上項各條, 於監考軍人處, 備細開諭, 使不犯律, 曲盡布置” 從之)

○ 단종 12권, 2년(1454) 11월 8일(을묘)

- 병조에서 경상도우도수군처치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도통부에 알려서 아뢰기를, “매 한 개의 봉화마다 다섯 대의 봉수대를 벌려 설치한 것은 적변에 따라 2~3개의 횃불이나 혹은 4~5개의 횃불을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고자 함인데, 지금 봉줄들이 무지하여 다만 한 대의 봉수대에서 그 횃불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에 의하여 그 수를 준하오니, 만약 먼 곳의 봉줄이 그 처음의 횃불을 보지 못하고 나중의 것만을 보았다면 반드시 착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봉화를 적변에 따라 일시에 아울러 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慶尙道右道水軍處置使啓本報都統府以啓曰: “每一烽火, 列置五臺者, 欲令隨其賊變, 或二三炬, 或四五炬, 一時竝舉也 今烽卒無知, 只於一臺, 隱見其炬, 以準其數, 若遠處烽卒不見其始, 但見其終, 則必致錯誤, 請自今烽火, 隨賊變, 一時列舉” 從之)

○ 세조 16권, 5년(1459) 4월 29일(경진)

- 병조에서 함길도도체찰사 신숙주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봉수를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적변을 후망하여 위급한 정세를 빨리 알리기 위한 것인데도, 봉수대의 군졸은 대개 고단하고 빈한하여 말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하므로 이로 인하여 화포를 쏘고 후망하여 적을 방어하는 등의 일이 늦어지고 해이해짐이 많게 되니, 청컨대 봉수대의 군졸 5인 내에서 1인을 덜고 본읍의 갑사충보 중의 1인을 보충하여 임명해서 1개월마다 서로 교체하게 하여 별도를 갑절로 주고, 본래 정한 4인을 거느리고서 화포 쏘는 등의 일을 상시로 가르치게 하고, 구덩이와 목책과 군기도 또한 수보하도록 하되, 그중에 후망에 부지런하여 사변을 잘 보고한 사람이나 수치에 부지런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은 그 도의 도절제사로 하여금 그 공로의 등급을 정하여 계문하게 하여 논공행상하여 서용하도록 하고, 그 봉행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삼가하지 않는 자는 논죄하여 도(到)를 삭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咸吉道都體察使申叔舟啓本啓: “烽燧之設, 專爲候望賊變, 飛報緩急, 而燧卒率以單寒無馬者差之, 因此放也, 候望, 禦敵等事, 多致緩弛 請燧卒五人內除一人, 以本邑甲士, 充補中一人充差, 一月相遞, 倍給別到, 率元定四人, 常教放也等事, 坑坎, 柵木, 軍器亦令修補, 其中勤於候望能報事變者, 勤於修治功績現著者, 令其道都節制使第其功勞啓聞, 論賞敘用, 其不勤謹奉行者, 論罪削到” 從之)

○ 세조 32권, 10년(1464) 2월 15일(무술)

- 병조에서 경상도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도내의 창원부 봉산과 양산군 계명산의 봉수는 모두 다 낮고 작아서 먼 곳과는 서로 통하여 바라볼 수 없으니, 청컨대 봉산의 봉화는 함산으로 옮기고, 계명산의 봉화는 위천역 북산으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兵曹據慶尙道觀察使關啓: “道內昌原府 峯山, 梁山郡 雞鳴山烽燧之處, 皆卑微遼遠, 不相通望, 請峯山烽火移合山, 雞鳴山烽火移渭川驛北山” 從之)

○ 성종 89권, 9년(1478) 2월 16일(기유)

- 경기·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관찰사에게 하서하기를, “《대전》 봉수조에, ‘평시에는 횃불 1, 적이 형상을 나타내면 횃불 2, 국경에 가까이 오면 횃불 3, 국경을 범하면 횃불 4, 접전하면 횃불 5’ 라고 하였는데, 지난 정월 28일 전라도 순천부 돌산포와 이번 2월 2일 경상도 남해현 적량에 사변이 있었는데도 평시의 예에 의하여 횃불 하나로 서로 맞추었으니, 사변을 알리는 뜻이 아주 없었다. 각각 그 다른 경계에서 서로 맞추는 곳을 차례차례로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下書京畿, 忠淸, 全羅, 慶尙道觀察使曰: 《大典》烽燧條: ‘平時一炬, 賊現(刑)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去正月二十八日全羅道 順天府 突山浦, 今二月初二日慶尙道 南海縣 赤梁有事變, 依平時例一炬相準, 殊無報變之意 各其他境相準處, 次次推鞫以啓”)

○ 중종 79권, 30년(1535) 2월 14일(을사)

- 조강에 나아갔다. 영사 김근사가 아뢰기를,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조운손(曹閏孫)이 지난번 그곳에 내려갈 적에 가서 살펴보고 조치하도록 하였다가 대간이 안 된다고 하여 중지하였습니다. 가덕도는 신이 가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람에게 들으니, 바다 가운데 있긴 하나 육지와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 하였습니다. 경오왜란 이후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직접 가서 보고 살피게 하였으나 우물쭈물하고 지금껏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손이 입시하였으니, 상께서 그곳의 형세를 하문하시고 조치하심이 타당합니다.” 하고, 특진관 조운손은 아뢰기를, “가덕도는 험하고도 가파른 매우 높은 산으로 암석이 깎아 세운 듯 우뚝 솟았으므로 배를 댈 수 없어 왜인들도 양장곶(羊場串)에 정박한 다음 들어와 웅거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곳에 진을 설치하면 왜인이 다니는 길목의 요충을 점거하는 것이니,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은 물론이고, 제포 등에는 진을 설치하여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남방은 인물이 많으니, 진을 설치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가리포 사랑은 바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진을 설치하여 지키는데 하물며 가덕이겠습니까. 병력에 대해서는 신이 모르겠습니다만, 진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신이 좌도 병사로 있을 적에 진을 설치한 것을 보니 금방(禁防)이 엄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덕도는 어염(魚鹽)의 이점이 있어서 왜인이 항상 이곳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장사치들은 캄캄한 밤중이라도 몰래 왕래하고 있으니, 수진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그간에 피해자가 있어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진을 설치하여 수군을 많이 주둔시키고 또 봉수를 설치하면, 적변이 생기더라도 다대포와 안골포에서는 변보를 즉시 알 수 있어 하루저녁에 서울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인은 양장곶에 배를 정박하므로 가고 싶은 대로 몰래 갈 수 있습니다만, 이곳에 진을 설치하면 와서 정박할 수 없고 또 급수로를 끊게 되니 어떻게 침범해 오겠습니까.” 하고, 특진관 최세절(崔世節)은 아뢰기를, “다대포와 부산포 등처는 신이 김공석(金公奭)·원팽조(元彭祖)와 함께 가서 보았습니다. 물운도(沒雲島)는 곧 왜선의 후망처이니, 이곳에 봉수를 설치하면 왜인들이 부산포와 제포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인은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항상 몰래 제포로 가던 자가 우리에게 발견되면 부산포에 가다가 잘못하여 이곳에 도착했다고 칭탁하고, 몰래 부산포로 가는 자들도 그러하니, 이는 반드시 속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은 육지 사람들이 바닷가 고을에 와서 밤을 틈타 개인적으로 매매하리라 생각하고 고장도(高壯島)를 수색하였던 바 1명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조그만 섬인데도 몰래 들어가 매매를 하는데 더구나 가덕도처럼 크고도 가까우며 어염의 이점이 있는 곳이겠습니까. 만약 물운도에 후망대를 설치하면 몰래 드나들며 매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가덕도에 진을 설치하는 것과 무신을 뽑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일이다. 후일 정부가 함석할 때 병조와 지변사 당상 등이 회의하여 아뢰라.”

(御朝講 領事金謹思曰: “加德島設鎮事, (曹閏孫)〔曹潤孫〕頃者下(土)〔去〕時, 令往看, 而措置, 臺諫以爲不可, 故止之 加德島, 臣雖不得目覩, 然聞之於人, 雖在海中, 距陸不遠 庚午年倭賊叛亂之後, 令觀察使, 節度使, 親往看審, 而因循姑息, 至今不爲耳 今潤孫入侍, 其形勢, 自上下問而處置爲當” 特進官曹潤孫曰: “加德島, 險阻至高之山也 巖石矗立, 船不得泊 倭人自羊場串, 來泊入據矣, 我國設鎮於此, 則已據倭路之要衝, 兵力雖或不足, 倭人無如之何矣 薺浦等處, 雖無鎮守可也 南方人物聚盛, 其於設鎮, 有何難焉? 且加里浦, 蛇梁, 乃海中絕遠處, 而設鎮守護 況加德乎? 兵力, 則臣未之知也, 設鎮則當矣 且臣爲左道兵使, 見其設鎮, 禁防雖密, 然加德島, 則有魚鹽之利, 而倭人恒留於此, 興販之徒, 雖昏夜潛相往來, 守鎮之將, 何得而知之? 其間雖有被害者, 亦何能知之? 設鎮於此, 而多定水軍, 又設烽燧, 則雖有賊變, 多大浦, 安骨浦, 則邊報即相知之, 而一夕可以達于京城矣 且倭人依泊於羊場串, 故任其所之, 而竊發矣, 若設鎮於此, 則不得來泊, 而絕其汲水之路, 何能來犯乎?” 特進官崔世節曰: “多大浦, 釜山浦等處, 臣與金公奭, 元彭祖往見之 沒雲島, 乃倭船候望處, 設烽燧於此, 則倭人之往來於釜山浦, 薺浦之間, 可知矣 倭奴, 狡詐莫測, 常時潛往薺浦者, 若爲我所見, 則托言往釜山浦, 而誤到于此, 其潛往釜山浦者, 亦然 其間, 必有所私而然也 臣以爲: 陸郡之人, 來于沿海官, 昏夜之間, 私自買賣, 搜討于高壯島, 捕一人以來 此乃小島也, 而亦有潛入買賣 況如加德島大且近, 而有魚鹽之利乎? 若設候望於沒雲島, 則不得潛相往來, 以爲買賣也” 傳曰: “設鎮加德, 抄選武臣事, 皆爲重大, 後日政府合坐時, 兵曹知邊事堂上等, 會議以啓”)

○ 선조 122권, 33년(1600) 2월 14일(무자)

-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경을 알리는 데는 봉화보다 더 빠른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전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폐지되고 거행하지 않아 헛되이 설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이 우리의 변경에 주둔하면 매양 하나의 횃불로 서로 기준을 세워 알리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여 폐지한다면 그만이지만 폐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이해진 대로 정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날씨가 이미 화창해져서 남쪽 변방의 일이 아침 저녁으로 우려스러운 때이니, 방어에 관한 모든 조치를 더욱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양남(兩南)에서 봉수가 올라오는 길이 셋인데 경내를 통과할 적에는 각 고을의 토주가 있으니 검직할 책임은 실로 수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각도의 감사는 도내의 찰방 가운데 성실하고 치밀한 사람을 가려서 따로 차사원으로 정하여 약간의 고을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이 일의 검찰을 전적으로 위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수군(水軍)의 존몰과 거화의 허실을 자주 적간(摘奸)하게 할 것은 물론, 수령이 소홀히 하였을 경우 가벼운 죄에 해당하면 감사로 하여금 잡아다가 결장(決杖)하게 하고 중한 죄의 경우에는 계문하여 군율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저절로 전과 같이 해이해지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사(舟師)를 나누어 세 곳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은 적로가 여러 갈래여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거리가 멀고 산천이 가로막혀 있으므로 한 곳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가 있어도 다른 두 곳에서는 필시 제때에 알 수가 없어서 서로 구원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 제때에 알 수 없다면 당초 적변에 대비하여 설치했던 본의가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해중의 적로인 경우에는 도서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는 무인지경이어서 새로 조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세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해 일대인 부산에서 강진·해남에 이르기까지는

군읍이 서로 바라보이니 이곳에 따로 봉화를 설치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주사가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러한 내용으로 도원수와 순찰사에게 하서하여 상의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해의 각역은 모양을 이루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시급한 전보는 단지 각 고을의 잘 달리는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니, 혹 변에 대비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서 각 고을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따로 입마(立馬)하게 하여 변방의 경보에 대비하게 하는 일도 아울러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備邊司啓曰: “邊警之報, 莫急於烽火, 故法典所載, 非不詳盡, 而近年廢墮不舉, 歸於虛設, 賊屯我境, 而每以一炬相準 若₁以不關而廢之則已, 不可廢, 則豈可任其解弛, 而不爲之整(開)(飭)乎? 況今風日已和, 南邊之事, 朝夕可虞, 凡百備禦之方, 尤不可少緩 兩南烽燧上來之路有三, 而過境之時, 自有各邑土主, 檢飭之責, 固在於守令, 而各道監司, 於道內察訪中, 擇其誠愼縝密者, 別定差使員, 分守若干邑, 專委檢察此事 燧軍存歿, 舉火虛實, 頻數摘奸, 守令之慢忽者, 輕則令監司₂致決杖, 重則 啓聞, 按以軍律, 則自無如前解弛之弊矣 依此施行何如? 且舟師之分守三處者, 以其賊路多岐, 有難預料 其間道里遙遠, 山川相隔, 一處雖或受兵, 而兩處必有未及知之, 不能相救之患 若未及知, 則當初設備待變之意, 歸於虛地 如海中賊路, 島嶼雖連, 而此則無人之境, 新設瞭望, 勢所不能, 而沿海一帶, 自釜山至康津, 海南, 則郡邑相望之地, 別設烽火, 亦不甚難, 舟師自中相應之策, 不可不講 請以此意, 下書于都元帥, 巡察使, 商確施行何如? 沿海各驛, 無形已久, 時急傳報, 只憑各邑能走人 或待變馬中, 令各邑隨便別立, 以待警報事, 竝爲行移何如?)

○ 선조 165권, 36년(1603) 8월 30일(계축)

- 병조가 아뢰기를, “남산의 제일봉은 북방에서 오는 봉수인데, 전일에는 번번이 구름이 어둡다고 핑계하여 봉화를 올리지 않았으나 북도(北道)에 변란이 일어난 뒤로는 25일부터 27일까지 으레 봉화를 올려 서로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부터 이들을 잇따라 서로 맞추지 않았으므로 남산의 오원(伍員)을 추문하였더니, 북쪽의 아차산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봉수의 일도 허위로 하곤 합니다. 북변이 있는 이때 심상하게 여기고 추치하지 않으면 안 되니, 북로의 각 고을을 차례로 살펴서 추고하여 엄중히 다스리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兵曹啓曰: “南山第一峯, 北來烽燧, 前日每托於雲暗, 不爲舉火, 而北道生變後, 自二十五日, 至二十七日, 例火相準矣 又自昨日, 連二日不爲相準, 南山伍員推問, 則₁北峨嵋山不舉云 近來國綱解弛, 烽燧一事, 亦歸虛僞, 而當此北變之日, 不可置之尋常, 而不爲推治 請北路各官, 次次查₂推考重治” 傳曰: “允”)

○ 현종 5권, 3년(1662) 6월 23일(갑자)

- 이완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가 단절되는 것이 늘 걱정인데, 이는 대체로 마천령 등 네 곳의 큰 영(嶺)이 높아서 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에 의하면 회양(淮陽)과 금성(金城) 양 고을 사이에 하늘을 찌르는 산봉우리가 첩첩이 들어서 있어 운무가 늘 개이지

않고 있다 하는데, 봉화가 끊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봉수가 이런 상태라면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자세히 살펴 변통하라고 양도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李浣曰: “北路烽燧, 每患斷絕, 蓋有磨天等四大嶺, 山高雲暗而然也” 金佐明曰: “以臣所聞, 淮陽, 金城兩邑間, 有疊巖撐天, 雲霧恒不開, 烽火之絕, 實由於此也” 上曰: “烽燧如此, 非細慮也 詳察變通事, 分付兩道監司”)

○ 속종 19권, 14년(1688) 6월 10일(신해)

- 정언 박태순(朴泰淳)이 상소하기를, 봉수를 설치한 것은 변방의 수비를 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기성에 있을 때 하리가 매양 아차산의 봉수가 후망할 수 없다고 고하므로, 신이 그 이유를 힐문한즉, 북로의 봉수는 으레 구름이 어둡게 가려 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돈대를 설치하고 군사를 두어 저처럼 쓸데없는 비용을 쓰는 것입니까? 폐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아려 생각하고 변통하여 혹은 옮겨 설치하든지 혹은 더 설치하든지 해서 반드시 전통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본병을 둔 것은 다른 관사에 비하여 중대한데, 참관 이하는 한 용관이 되어 무릇 크고 작은 관직의 제배(除拜) 의망(擬望)에 있어서 이관은 팔짱만 끼고 옆에서 보기만 하고 불만족스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판서는 일찍이 문의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지도 못하니, 관사를 설치하여 직장을 나누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나마 주의(注擬)하는 즈음에 반드시 좌이와 더불어 가부를 서로 의논하는 것을 한결같이 동전(東銓)과 같이 하면, 아마도 관을 위하여 사람을 뽑는 방법에 합할 듯합니다. 또 본조에 바치는 군포는 수입을 헤아리고 지출을 계산한다면 한해에 남아도는 것이 수백여 동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해마다 증가하여 그 수량이 수천여 동에 이르니, 해마다 썩어서 대부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개 면포는 부드럽고 약해서 금전에 비할 수 없으니, 아무리 햇볕에 쬐인다 하더라도 오래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백성의 고혈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공연히 창고 속에 두어서 마침내 쓸모없는 물건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혹은 1년 것을 견감하든지 혹은 옮겨서 경비에 쓰도록 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하였다. 소가 들어오자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아뢰기를, “주의(注擬)는 무번을 쓰고 안 쓰는 것이 문사와는 다름이 있으니, 자주 체직되는 관원은 두루 알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마땅히 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시켜야 할 것이며, 군포는 비록 남아 쌓인 것이 있다하더라도 마땅히 불시의 수용으로 삼아야 하므로 다 쓸 수 없으며, 봉수는 장마가 개이기를 기다려서 마땅히 적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의논을 옳게 여겼다.

(正言朴泰淳上疏曰: 烽燧之設, 所以謹邊備也 臣在騎省, 下吏每以崑崙烽燧不得候望爲告, 臣詰其由, 則北路烽燧, 例以雲暗不通云, 誠如是也 何爲設墩置卒, 爲彼無用之費耶? 罷之爲宜 不然則商量變通, 或移設或添設, 以爲必可傳通之地, 國家之置本兵, 比他司爲重, 而參判以下, 作一冗官, 凡大小除擬, 貳官拱手傍觀, 而不以爲決, 判書未嘗問議, 而不以爲專決, 非設官分職之意, 今於注擬之際, 必與佐貳, 可否相議, 一如東銓, 則恐合於爲官擇人之道, 且軍布之納本曹者, 量入計出, 則一歲剩餘, 不下累百餘同, 歲歲增加, 其數至數千餘同, 逐年腐朽, 多不可用 蓋綿布脆弱, 不比金錢, 雖復曝曬, 不能支久故也 此赤子膏血之所出, 而奈何空置庫中, 終作無用之物乎?

宜令廟堂商議, 或~~以~~減一年, 或移作經用, 以~~省~~民力 疏入, 令備局議之, 以爲注擬則用舍武弁, 與文士有異, 數遞之官, 有難周知, 宜專委長官, 軍布則雖有餘儲, 宜作不時之需, 不可傾用, 烽燧則待~~待~~霽, 宜令摘奸 上可其議)

○ 영조 38권, 10년(1734) 6월 3일(정미)

- 임금이 주장에 나아갔다. 강을 끝마치자, 지경연 조상경(趙尙綱)이 북로의 강변봉대의 일을 진달하기를, “처음에 후주진(厚州鎭)으로써 화저(火底)로 삼았던 것은 대개 그곳이 청나라와 지역이 서로 연결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을축년에 있어서 그 진을 개혁하여 그 지역을 비워둔 채 드디어 장진의 강가에 어면진(魚面鎭)을 설치하여 후주의 백성과 군졸들은 모두 어면에 소속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화저도 또한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장진은 후주와의 거리가 2백여 리나 됩니다. 변강의 사변이 있고 사변이 없는 것은 막연히 서로 관섭하지 않고서 단지 봉수만 든다는 것은 일이 몹시 허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호기(胡騎)가 장진에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 후주에 길을 찾아 장진의 빙판길을 경유하여 온다면 3~4일도 걸리지 않고 함흥에 당도할 수가 있을 것이니, 이 점을 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함흥의 감영에서 대죄할 때에 수신과 서로 의논하여 어면의 봉대를 옛 갈파지진에 이설할 것을 장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고, 참찬관 이종성(李宗城)도 또한 잇달아 그 형편을 진달하기를 조상경의 말과 같이 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도신과 수신에게 문의하여 품지해서 처리하게 하였다.

(上御書講 講訖, 知經筵趙尙綱陳北路江邊烽臺事曰: “初以厚州鎭爲火底者, 蓋爲其與清國壤相接也 歲在乙丑, 革其鎭空其地, 遂設置魚面鎭於長津江濱, 將厚州民卒竝屬魚面, 故火底亦隨而移之 長津距厚州爲二百餘里, 邊~~邊~~之有事無事, 漠然不相涉, 而只舉烽燧, 事極~~極~~虞 且萬一胡騎俟長津氷合, 取路厚州, 由長津水路而來, 不費三四日, 可薄咸興, 是又不可不慮 臣待罪咸營時, 與帥臣相議, 狀請移設魚面烽臺於舊芑坡知鎭矣” 參贊官李宗城亦繼陳形便如尙綱言, 上令廟堂問于道帥臣, 稟旨以處)

○ 영조 114권, 46년(1770) 윤5월 26일(신미)

- 병조참의 신일청(申一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우리의 변란에 대비하는 계책은 마땅히 서북 두 변방에 있으니, 분발하고 격려하는 방법을 미리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화의 신호가 통하느냐 막히느냐는 전적으로 돈대의 원근에 매여 있습니다. 돈대가 가깝고 조밀하면 후망하기에 편리하고 탐지하기가 쉬우며, 돈대가 멀고 드물면 아득해서 후망하기가 어렵고 구름에 가리기 쉽습니다. 신이 삼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상고해 보건대, 중국의 경우 대략 10리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북도봉대의 직로 거리는 경흥 서수라보(西水羅堡)의 우암(牛巖)에 새로 세운 봉대로부터 성진진의 기리동(岐里洞)봉대에 이르기까지 가까운 것이 7~8리 또는 10여 리요, 먼 것은 20리 혹은 30리입니다. 단천에서 안변의 철령에 이르기까지는 가까운 것이 2, 30리요, 먼 것은 4, 50리이니 성진 이북에 비교한다면 봉대의 설치가 드물고 봉화 길이 아득히 먼 것이 실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쪽의 봉화 길을 익히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단천의 오라퇴(吾羅退)·마홀(馬訖乃), 이성의 성문(城門)·진조(眞鳥), 북청의 육도(六島), 홍원의 남산(南山), 함흥의 성곶

(城串), 정평의 비백산(鼻白山), 문천의 천불산(天佛山), 안변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은 봉화 길이 멀고 봉대도 드물어 후망하기가 쉽지 않으니, 만약 그 사이에 추가로 <봉대>를 설치한다면 반드시 후망하지 못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병조의 봉수안에 기재되어 있는 거리를 상고하건대, 단천의 오라퇴에서 마흘내까지의 거리는 30리요, 이성의 성문에서 진조까지는 거리가 58리요, 북청의 육도에서 홍원의 남산까지는 거리가 50리요, 함흥의 성곶에서 정평의 비백산까지는 거리가 50리요, 문천의 천불산에서 고원의 웅망산까지는 거리가 30리요, 안변의 사고개에서 철령까지는 거리가 50리이니, 봉대가 멀어 후망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천에서 안변에 이르기까지 중간이 끊긴 경우는 5~6곳에 불과하니, 그 지형을 살펴서 편의에 따라 추가로 봉대를 설치하면 중간에 후망이 단절될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변경의 정보가 통하느냐 막히느냐에 관계되는 일이니, 머뭇거리 그대로 시일만 천연(遷延)할 수는 없습니다. 구름이 침침하여 달려가 알려야 할 때에는 각 봉대의 봉군에게 부신(符信)으로 달려와 알린 바가 적실함을 살피지 않을 수 없으니, 또한 뜻밖의 격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패를 만들되 전면 가운데에 ‘운암(雲暗)’이란 글자를 새기고, 후면 가운데에 ‘신’자를 새기며, 전·후면 양 곁에 각각 서로 응하는 봉호를 새기고 【우암과 남산 두 봉대가 서로 응하는 경우 한편에는 우암을 새기고 한편에는 남산을 새긴다.】 가운데를 쪼개어 두 쪽으로 만들어 그 새긴바 봉호를 해당 봉대에 나누어 지급하고, 역시 해당 고을의 화인(火印)을 찍습니다. 【경흥부의 두리산(豆里山)과 구신포(仇信浦) 두 봉대가 서로 응하는 경우 모두 경흥부 경계 안에 있으니, 양 곁에 모두 경흥부의 화인을 찍는다.】 만약 서로 응하는 두 봉대가 각각 두 경계에 있고,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아 포와 뿔피리가 서로 들리는 곳의 경우 구름이 침침한 날에 천아성(天鵝聲)을 이용하거나 혹은 포를 쏘아 서로 응하면 사람이 달려가는 것보다 빠를 것입니다. 북쪽 봉대의 수효는 봉화가 시작되는 우암에서부터 아차산까지 1백 20대입니다. 만약 가설한다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다른 도에 비하여 가장 많을 것이니, 아침 일찍이 봉화를 들어야만 어둡기 전에 아차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암에서 처음 봉화 드는 것을 평조를 기준으로 삼아 삼남 양서의 봉보보다 뒤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전과 같이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는 소홀히 하여 거행하지 않은 결과이니, 본조에서 봉장(烽狀)을 자세히 살펴서 공문을 보내어 사핵하게 하고, 해당 봉수가 단절된 곳의 지방관 및 수신을 초기하여 논단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그 소장을 비국에 내려 소상히 품처하도록 하였다.

(兵曹參議申一淸上疏, 略曰: “… 惟我陰雨之計, 當在西北兩邊, 而振刷奮勵之方, 不可不豫矣 烽信之通隔, 全係墩臺之近遠 臺近而密則便於候望, 而易於瞭, 臺遠而闊則莽蒼難瞭, 而雲物易遮 臣謹按《紀效新書》, 中國則大約以十里爲率 我北道烽臺直路遠近, 自慶興西水羅堡牛巖新起烽臺, 至于城津鎮岐里洞烽臺, 近者爲七八里十餘里, 遠者爲二十里或三十里 自端川至安邊·鐵嶺, 近者爲二三十里, 遠者爲四五十里, 較諸城津以北設臺之稀闊, 烽路之阻遠, 實有懸殊者 北人之慣踏烽路者爲言, 端川之吾羅退¹訖乃, 利城之城門眞鳥, 北青之六島, 洪原之南山, 咸興之城串, 定平之鼻白山, 文川之天佛山, 安邊之沙古介鐵嶺, 烽路既遠, 烽臺亦稀, 未易候瞭, 若加設於其間, 則必無失瞭之弊云矣 臣今考兵曹烽燧案所載程途, 則端川吾羅退之於²訖乃, 相距三十里, 利城之城門與眞鳥, 相距五十八里, 北青之六島與洪原之南山, 相距五十里, 咸興之城串, 定平之鼻白山, 相距五十里, 文川天佛

山之距高原熊望山三十里, 安邊沙古介之距鐵嶺五十里, 臺遠失瞭之說, 不爲無據矣 自端川至安邊間斷者, 不過五六處, 相其地形, 隨便加設, 則無中間斷瞭之理 實關邊警之通隔, 不可因循, 玩愒度日 雲暗馳報之際, 各臺烽軍, 不可無符信以審? 來報的實, 亦防意外之虞 以堅木作牌, 前面中刻雲暗字, 後面中刻信字, 前後面兩傍, 各刻相應烽號, 【如牛巖南山兩烽相應, 則一邊刻牛巖, 一邊刻南山】中剖爲兩片, 以其所刻烽號, 分給該烽, 亦烙該邑火印 【如慶興府豆里山, 仇信浦兩烽相應, 而俱在慶興府界內, 則兩邊俱烙慶興府火印】若相應兩烽, 各在兩境, 相距不甚遠, 砲角相聞之處, 則雲暗日, 用天鵝聲, 或放砲相應, 速於馳人 北烽臺數, 自火底牛巖, 至~~安~~嵯山爲一百二十臺 若加設, 則其數益添, 較他道最多, 早舉然後可~~未~~昏至~~安~~嵯 牛巖初舉以平朝爲信, ~~仲~~無後於三南兩西烽報 如此而或有如前不準, 則是慢不舉行之致, 自本曹詳考烽狀, 發關查~~察~~, 該烽斷絕處, 地方官及帥臣, 草記論斷上優批, 下其章備局, 令消詳稟處)

○ 영조 115권, 46년(1770) 7월 9일(계축)

임금이 주장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무신 장지항(張志恒)에게 명하여 북도에 가서 남병사·북병사와 함께 봉수를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는데, 이때 북병사 이방수(李邦綏)와 남병사 이한창(李漢昌)이 봉수를 살펴보고 나서, 급히 계문하기를, “북관에는 삼삼파보(森森坡堡)의 동봉(東峰)·모덕(牟德) 두 간봉을 혁파하고 송봉(松峰)에다 하나의 새 봉수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목표에 전달하는 데 편리하겠습니다. 남관에는 안변의 사고개(沙古介)·철령(鐵嶺) 두 봉수의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므로, 노구봉(老居峰)에다 하나의 봉수를 따로 설치하여야 되겠고, 철령과 회양의 마주 있는 봉수 사이에도 하나의 봉수를 더 설치하여야 되겠으며, 이성의 성문봉(城門峰)은 지형으로 보아 단천으로 이속하고 무사와 무기는 입응치(立應峙)의 새 봉수로 옮겨 설치하고, 단천의 사기일언(沙器日彦) 봉화대를 혁파하고 역시 무사와 무기는 성문봉으로 옮겨서 두 고을의 증설에 따른 폐단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흥의 성황봉화대는 터전이 폭 빠져있으니 또한 혁파하고 덕치(德峙)로 하여금 바로 웅망산(熊望山)봉화에다 목표를 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또 봉화를 올리는 시한이 매번 저물녘이 되어서 천리길의 거리에 계속 전달을 하다 보면 형편상 시한 안에 서울의 봉화대에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맨 처음에 봉화를 올리는 시각을 조금 앞당겨서 연기를 올려 목표에 전달을 하되, 날이 저문 뒤에는 불을 올려서 서로 전달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아뢰기를, “청컨대 무신 장지항(張志恒)을 보내어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연기를 올리도록 하는 것과 무신을 보내어 형편을 살펴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리한지의 여부를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다. 의논이 모두 일치하지 않자, 임금이 말하기를, “연기는 사변이 발생할 때에 쓰는 것인데, 평상시에 연기로써 한다면 사변이 발생할 때는 또 무엇으로 서로 응하겠는가? 이 일은 논할 필요도 없다.” 하였는데, 김치인의 소청을 따라서 마침내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다.

(上御畫講, 引見大臣備堂, 命武臣張志恒, 往北道, 與南北兵使, 看審烽燧以來, 時北兵使李邦綏, 南兵使李漢昌, 摘奸烽燧後馳啓: “北關則請罷森森坡堡東峰牟德兩間峰, 而移設一新烽於松峰, ~~仲~~便傳準 南關則以安邊沙古介鐵嶺兩烽之間, 相距遼遠, 宜別設一烽於老~~居~~峰, 鐵嶺之於準陽對烽之間, 亦宜加設一烽, 利城之城門峰, 因地形

屬之〈端川〉, 移設其武士器械於立應峙新烽, 罷端川沙器日彥烽臺, 而亦移其武士器械於城門烽, 并除兩邑加設之弊 永興城望烽臺, 其址凹陷, 亦爲革罷, 而使德峙烽, 直準於熊望山烽火” 又以舉火時限, 每值日暮, 千餘里轉應之際, 勢未及於京烽時限, 自火底差早, 舉烟傳準, 而日暮後舉火相應爲請 領議政金致仁奏之: “請遣武臣張志恒, 審視形便” 上問舉烟與遣武臣便否於諸臣 議皆不一, 上曰: “烟氣有事時所用, 而平時以烟, 則有事時又將以何相應乎? 此則不必論也” 後致仁所請, 遂有是命)

○ 영조 115권, 46년(1770) 10월 29일(신축)

- 무신 장지항(張志恒)이 북도의 봉수를 살펴보러 갔었는데, 이때에 돌아와서 그 편의를 아뢰기를, “이성의 진조봉(眞鳥峰)과 성문(城門)봉수의 두 사이는 봉화길이 단절되어 있어서 양쪽에서 바라보이는 고을의 주산과 두을(豆乙)·응치(應峙)의 세 곳에 〈간봉〉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성 삼삼과(森森坡)의 간로봉(間路烽)은 종전에 직로봉(直路烽)으로 변통한 뒤 모덕(牟德)에서 영강(永康)으로 반응하도록 하였는데, 영강에서 모덕을 바라보는 데는 사이에 여러 산봉우리들이 벌여 있어서 바라보기가 어려우므로, 동봉(東峰)봉화를 만약 송봉으로 옮겨서 모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촌(朱村)에서 받도록 한다면 봉화의 길이 매우 편리하고 옮겨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모덕의 것이 험과 중에 있어서 삼수의 어면도(漁面島)는 여러 봉화길의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곳일 뿐더러, 또 국경의 경비에도 긴요하므로 간로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흥의 성곶(城串)은 들판은 낮고 산은 높아서 바라보기가 불편하므로, 역시 간봉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철령의 연화를 남북으로만 한정하는 일도 법으로 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으며, 이 밖의 일은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또 봉화대의 무사에게 호역을 면제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이는 임금이 봉수군의 겸역이 다른 사람보다 고되다는 문제를 들어 도신에게 명하여 소상히 장문하도록 한데다 장지항이 또 도사 여선덕(呂善德)이 무신을 멸시하여 전혀 고생을 돌아보고 꺼려함이 없이, 취소(吹簫)·마포(馬砲)를 마음대로 다룬다고 상주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해부로 하여금 중감하도록 한 것이다.

(武臣張志恒, 往審北道烽燧, 至是歸奏便宜, 曰: “利城眞鳥峰, 城門峰兩間, 烽路間斷, 兩望邑主山豆乙, 應峙三處, 謂宜加設 鏡城森森坡間路烽, 曾前直路烽變通後, 牟德反應永康, 而自永康望牟德, 重峰森列, 難於瞭望, 若移東峰烽於松峰, 不由牟德, 直準朱村, 則火路甚便, 移設不難 牟德自在革罷中, 三水魚面島, 爲諸路樞要, 且緊於關防, 間路之烽, 不可不設 咸興城串, 野低山高, 瞭望不便, 亦不可不間設” 又以鐵嶺烟火, 限南北定式, 并從之, 餘皆勿論 又請烽臺武士給復, 從之 烽軍兼役偏苦事, 命道臣, 消詳狀聞, 志恒又以都事呂善德, 蔑視武臣, 全不顧憚, 吹簫馬砲, 恣意爲之仰奏, 上令該府重勘)

○ 정조 22권, 10년(1786) 8월 30일(경오)

- 헌납 김광악(金光岳)이 상소하여 이르기를, “봉수의 법은 매우 중합니다. 호남과 영남 사이에 봉화를 올린 일은 그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인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영남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신은 영남의

감영에 지시하여 엄중히 조사해서 해당 병사와 봉대가 있는 연로(沿路)의 고을 중 신중히 하지 않은 수령을 적발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충청수사 이연필(李延弼)은 글자 한 자도 모른데다가 오로지 자신만 살찌우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청컨대 그에 해당하는 법을 시행하소서.” 하니, 이연필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獻納金光岳上疏言：烽燧法意至重 而湖，嶺間舉烽一事，事未前聞，而究其本，則事在嶺南 臣謂分付嶺營，嚴加查實，當該兵使及烽臺沿路邑中不謹守，令摘發定罪 忠清水使李延弼，目不識丁，志專肥己 請施當律 命罷延弼職)

○ 순조 19권, 16년(1816) 11월 20일(을축)

- 차대하였다. 좌의정 한용귀가 아뢰기를, “방금 전에 함경감사 이희갑(李義甲), 남병사 서춘보(徐春輔)의 장계를 보니, 장진부(長津府)의 노탄봉수를 파하고 읍참발소(邑站撥所)를 설치한 다음, 봉장에게 주던 급료를 발장(撥將)에게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노탄의 봉수는 헛되이 설치한 것이나 같고, 장진읍의 발소(撥所)는 긴요한 일에 속하니, 장계의 요청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호조판서 박종경이 아뢰기를, “이번에 돈을 주조한 것은 쌀을 사서 줄어든 것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돈의 수요에 있어서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에 향군이 번을 서는 대신, 모두 자보(資保)를 구하여 쓰게 한 일은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짧게는 6~7개월이나 길게는 1년에 불과하므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며, 또 훈국의 군사는 사실상 오래 번을 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계축년의 사례에 따라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의 상변군에서 각 초(哨)마다 각각 27명을 떼어내 모두 자보로 하여 15년을 기한으로 포를 거두어 취해 쓸 경우, 거동할 때에 호위 및 순라 등의 일은 두 영이 다름이 없습니다. 금위영에 있어서는 내입직군(內入直軍)이 1백 명인데, 상변하는 4초 가운데 번을 정지하면 입직군의 배정에 실로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없는 대년군(待年軍) 가운데 5, 60명을 한정하여 수문군(守門軍)의 사례에 따라 별도로 급료와 옷감을 주고 외영의 번차에 가져다 쓰기로 그 영의 대장과 상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모두 대신과 두 영의 대장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였는데, 대신과 장신(將臣)이 이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次對 左議政韓用龜啓言：“卽見咸鏡監司李義甲，南兵使徐春輔狀啓，則請罷長津府之蘆灘烽燧，設置邑站撥所，而以烽將料米，移給撥將爲辭 蘆灘烽燧，便同虛設，長津邑撥，事屬繁務，依狀請許施” 從之 戶曹判書朴宗慶啓言：“今番鑄錢爲其買米補縮之地，而至於錢邊所需，亦多不足 禁御兩營鄉軍停番，并資保需用，在前多有行之之時 然此不過近而六七朔，遠而一周年，有名無實，而且訓局軍許久助番，其勢未由 今若依癸丑例，禁御兩營上番軍，每哨各除二十七名，竝資保限十五年收布取用，而動駕時陪衛及巡邏等節，兩營無異 至於禁營，則有內入直軍爲一百名 而上番四哨中停番則入直排比，誠有不足之慮 無料待年軍中，限五六十名，依守門軍例，別給料米衣資，使之推移於外營番次，而與該營將臣有所商議 竝下詢大臣及兩營將臣處之” 大臣將臣，無異議 從之)

○ 고종 33권, 32년(1895) 윤5월 9일(기유)

– 각 처의 봉수대와 봉수군을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군부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命各處烽臺烽燧軍廢止 軍部奏請也)

다. 대전회통(大典會通) 권4 > 병전(兵典) > 봉수(烽燧)

봉수(烽燧)는 평상시에는 1거(炬)[擧],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 경계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침범하면 4거, 접전하면 5거를 올리는데, 서울에서는 5원(員)[司直 司果 司正 司猛 司勇]이 지금은 수직금군이 병조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

목멱산(남산)봉수대는 동쪽으로 제1대(所)가 영안도와 강원도에서 오는 양주(楊州) 아차산의 봉수를 받고, 제2대가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의 천천령의 봉수를 받으며, 제3대가 평안도의 육로에서 오는 무악산 동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고, 제4대가 평안도와 황해도의 해로에서 오는 무악산 서쪽 봉우리의 봉수를 받으며, 제5대가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의 봉수를 받는다.

병조에서는 사람을 정(定)하여 망(望)을 보게 해서 이튿날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고하여 임금에게 아뢰도록 한다. 만약 변고가 있으면 비록 밤일지라도 즉시 고하도록 한다.

○ 목멱산봉수대의 매소(每所)에는 군사 4인과 오장 2인을 두고 해변(海邊)과 변경(邊境)지방에는 매소에 군사 10인과 오장 2인을 두며, 내륙지방에는 매소에 군사 6인과 오장 2인을 둔다. 군사 및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을 채용(差定)한다.

○ 혹시 구름이 끼어 어둡거나 바람이 마구 불어 연기나 불로써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대로 달려가서 보고하도록 한다.

봉수연대에 소재하는 봉군 등은 다른 신역에 충정될 수가 없으며 오로지 망을 보게 한다. 부지런하고 재간 있는 품관 각 4인으로 특별히 감고(監考)를 정하여 2번으로 나누어 서로 교대하여 밤낮으로 봉수를 올리는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다. 혹시 연화가 끊어진 곳이 있으면 수령은 장(杖) 80에 처하고, 감고는 장 100에 처하며 색리(色吏)와 봉군(烽軍)은 장 100에다 극변(極邊)으로 충군(充軍)하되 모두 수속(收贖)하는 것(속죄금 받는 것)을 배제하고 장형(杖刑)을 집행한다. 적이 이른 곳임에도 연화로 알리지 아니한 봉졸은 법에 의거 참형(斬刑)[사형]에 처한 후 임금에게 보고한다.

○ 거짓으로 봉화를 든(올린) 자는 연대와 다른 곳임을 막론하고 모두 극형에 처한다.

무사할 때에 점호에 빠진 자는 군관·감고·봉군임을 막론하고 각각 별도로 엄중하게 곤장을 친다. 거짓으로 봉화를 올린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형하며 봉수대 근처에서 방화한 자는 때를 기다려 참형한다. 목멱산의 봉수장은 충순위(忠順衛)가 혁파된 후 그 대신 금군(禁軍) 중 녹봉이 후한 자로 하여금 윤번으로 수직하게 한다.

○ 목멱과 무악 두 산의 봉군과 봉족(保人)은 모두 봉군인 호(戶)는 30호이며 매호당 각각 보인을 3명씩 준다. 각각 120명이며 24번으로 나눈다. 매번에 5명씩 입번하며 6일만에 교대한다.

○ 봉수대는 표(標)를 설치하여 경계를 정하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거나 방화한 것 등임을 막론하고 100보 이내에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병조에서 맡아서 다스리고 100보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군영에서 담당하여 다스린다.

○ 봉수대 근처에서의 음란한 제사나 기도는 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이 제서유위를(制書有違律)로 벌을 준다.

라. 만기요람(萬機要覽) > 군정편 1 > 봉수(烽燧)

평시에는 햇불이 하나요, 적이 나타나면 햇불이 둘이요, 국경에 가까이 오면 햇불이 셋이요, 국경을 침범하면 햇불이 넷이요, 교전상태에 들어가면 햇불이 다섯이다. 서울에서는 번을 지키는 금군이 병조에 보고하며,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진장(鎭將)에게 보고한다. 목멱산(木覓山)의 봉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햇불이 5개인데, 동쪽으로 첫째 것은 함경·강원 양도에서 양주(楊洲)의 아차산(峨嵋山)봉수로 온 것을 받는 것이요, 둘째 것은 경상도에서 광주(廣州) 천림산(天臨山)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셋째는 평안도에서 육로로 모악(母岳)의 동쪽 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넷째는 평안·황해 양도에서 뱃길로 모악의 서쪽 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요, 다섯째는 공충(公忠)·전라 양도에서 양천(陽川)의 개화산(開花山)봉수로 오는 것을 받는 것이다. 병조에서 사람을 선정하여 망을 보고 있다가 이튿날 이른 새벽에 승정원에 보고하여 국왕에게 알린다. 사변이 있으면 밤중이라도 곧 보고해야 한다. 목멱산에는 봉수소마다 군졸이 4명·오장이 2명씩이며, 연변에는 소마다 군졸이 10명·오장이 2명씩이며, 내지에는 소마다 군졸이 6명·오장이 2명씩이다. 군졸과 오장은 모두 봉수가 있는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혹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요란하여 햇불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봉수군이 차례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한다.

○ 목멱산과 모악 두 산의 봉군호(烽軍戶)는 각 30이다. 매호에 보(保) 3명을 급여한다.

第一炬：경흥(慶興) 서수라보(西水羅堡)의 우암(牛巖)¹⁾에서 시작하여 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鍾城)·회령(會寧)·부령(富寧)·경성(鏡城)·명천(明川)·길주(吉州)·단천(端川)·이원(利原)·북청(北靑)·홍원(洪原)·함흥(咸興)·정평(定平)·영흥(永興)·고원(高原)·문천(文川)·덕원(德源)·안변(安邊)·회양(淮陽)·평강(平康)·철원(鐵原)·영평(永平)·포천(抱川)·양주(楊州)를 거쳐 아차산의 봉수로 통한다.

간봉：무산(茂山)의 남령(南嶺)²⁾에서 시작한 것은 회령으로 통한다. 간봉으로써 영·음·진에만 연락되고 마는 것은 다 적지 않는다.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1) '우암(牛巖)'의 '牛'가 어느 본에는 '宧'로 되어 있음.

2) '남령(南嶺)'의 '嶺'이 어느 본에는 '峰'으로 되어 있음.

- 어유간(魚游澗)³⁾ 차산(遮山)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오촌보(吾村堡) 하봉(下峯)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주온보(朱溫堡) 불암(佛巖)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남로지보(南老知堡) 하전파(下田坡)에서 시작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보화보(寶化堡) 송봉(松峰)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삼삼파진(森森坡鎭) 동봉(東峰)에서 시작한 것은 경성으로 통한다.
 - 서북진(西北鎭) 서산(西山)에서 시작한 것은 길주로 통한다.
 - 오을족포(吾乙足浦) 은룡덕(隱龍~~덕~~)에서 시작한 것은 북청으로 통한다.
 - 어면보(魚面堡) 용봉(龍峯)에서 시작한 것은 단천으로 통한다.
- 이상 직봉 120개소, 간봉 60개소.

第二炬：동래(東萊) 다대포(多大浦) 응봉(鷹峰)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산(梁山)·언양(彦陽)·경주(慶州)·영천(永川)·신녕(新寧)·의흥(義興)·의성(義城)·안동(安東)·예안(禮安)·영주(榮州)·봉화(奉化)·순흥(順興)·풍기(豊基)·단양(丹陽)·청풍(淸風)·충주(忠州)·음성(陰城)·죽산(竹山)·용인(龍仁)·광주(廣州)를 거쳐 천림산(天臨山) 봉수로 통한다.

- 간봉：동래의 우비오(于飛鳥)⁴⁾에서 시작한 것은 안동으로 통한다.
- 거제(巨濟) 가라산(加羅山)에서 시작한 것은 충주로 통한다.
 - 웅천(熊川) 천성보(天城堡)에서 시작한 것은 영천으로 통한다.
 - 남해(南海) 금산(錦山)에서 시작한 것은 충주로 통한다.
- 이상 직봉 40개소, 간봉 123개소.

第三炬：강계(江界)·만포진(滿浦鎭)의 여둔대(餘屯臺)로부터 시작하여 위원(渭原)·초산(楚山)·벽동(碧潼)·창성(昌城)·삭주(朔州)·의주(義州)·용천(龍川)·철산(鐵山)·선천(宣川)·곽산(郭山)·정주(定州)·가산(嘉山)·박천(博川)·안주(安州)·숙천(肅川)·영유(永柔)·순안(順安)·평양(平壤)·중화(中和)·황주(黃州)·봉산(鳳山)·서흥(瑞興)·평산(平山)·김천(金川)·개성부(開城府)·장단(長湍)·파주(坡州)·고양(高陽)을 거쳐 모악의 동쪽 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 78개소, 간봉 22개소.

第四炬：의주의 고정주(古靜州)로부터 시작하여, 용천·철산·선천·곽산·정주·안주·숙천·영유·순안·평양·증산(甞山)·함종(咸從)·용강(龍岡)⁵⁾·삼화(三和)·장련(長連)·안악(安岳)·은률(殷栗)·풍천

3) '어유간(魚游澗)'의 '游'가 어느 본에는 '遊'로, '澗'이 어느 본에는 '澗'으로 되어 있음.

4) '우비오(于飛鳥)'의 '鳥'가 어느 본에는 '鳥'로 되어 있음.

5) '용강(龍岡)'의 '岡'이 어느 본에는 '岡'으로 되어 있음.

(靈川) · 장연(長淵) · 웅진(瓮津) · 강령(康翎) · 해주(海州) · 평산(平山) · 연안(延安) · 배천(白川) · 개성부 · 교하(交河) · 고양(高陽)을 거쳐 모악의 서쪽 봉수로 통한다.

이상 직봉 71개소, 간봉 35개소.

第五炬：순천(順天)의 방답진(防踏鎭)으로부터 시작하여, 흥양(興陽) · 장흥(長興) · 강진(康津) · 영암(靈巖) · 해남(海南) · 진도(珍島) · 무안(務安) · 나주(羅州) · 함평(咸平) · 영광(靈光) · 무장(茂長) · 부안(扶安) · 옥구(沃溝) · 임피(臨陂) · 함열(咸悅) · 용안(龍安) · 은진(恩津) · 노성(魯城) · 공주(公州) · 천안(天安) · 아산(牙山) · 직산(稷山) · 양성(陽城) · 수원(水原) · 남양(南陽) · 안산(安山) · 인천(仁川) · 부평(富平) · 김포(金浦) · 통진(通津) · 강화(江華) · 양천(陽川)을 거쳐 개화산(開花山)의 봉수로 통한다.

간봉：교동(喬桐) 장봉도(長峯島)⁶⁾에서 시작하여 강화로 통한다.

이상 직봉 60개소, 간봉 34⁷⁾개소.

만기요람(萬機要覽) > 군정편 1 > 봉수(烽燧)

平時一炬 賊現形則二炬 近境則三炬 犯境則四炬 接戰則五炬 京則守直禁軍告兵曹 外則伍長告鎭將 木覓山烽燧 自東至西五炬 東第一準咸鏡, 江原兩道來楊州峨嵯山烽 第二準慶尙道來廣州天臨山烽 第三準平安道陸路來母岳東烽 第四準平安, 黃海兩道海路來母岳西烽 第五準公忠, 全羅兩道來陽川開花山烽 兵曹定人候望 翌日早晨告承政院以啓 有變則雖夜即告 木覓山 每所軍四人, 伍長二人 沿邊則每所軍十人, 伍長二人 內地則每所軍六人, 伍長二人 軍及伍長⁵⁾以烽燧近處居人差定 或雲暗風亂 烟火不通之時 烽燧軍次次馳報 ○ 木覓, 母岳兩山烽軍戶各三十 每戶各給保三名

第一炬：初起慶興西水羅堡牛巖自慶源, 穩城, 鍾城, 會寧, 富寧, 鏡城, 明川, 吉州, 端川, 利原, 北青, 洪原, 咸興, 定平, 永興, 高原, 文川, 德源, 安邊, 淮陽, 平康, 鐵原, 永平, 抱川, 楊州通于⁶⁾峨嵯山烽

間烽 初起茂山南嶺通于會寧 間烽之只準營邑鎭而止者 不盡錄 下同 ○ 初起魚游礪遮山通于鏡城 ○ 初起吾村堡下峯通于鏡城 ○ 初起朱溫堡佛巖通于鏡城 ○ 初起南老知堡下田坡通于鏡城 ○ 初起寶化堡松峯通于鏡城 初起森森坡鎭東峯通于鏡城 ○ 初起西北鎭西山通于吉州 ○ 初起吾乙足浦隱龍⁷⁾通于北青 ○ 初起魚面堡龍峯通于端川

已上 直烽一百二十處 間烽六十處

6) '장봉도(長峯島)'의 '峯'이 어느 본에는 '烽'으로 되어 있음.

7) '34'가 어느 본에는 '64'로 되어 있음.

第二炬：初起東萊多大浦鷹峯自梁山，彥陽，慶州，永川，新寧，義興，義城，安東，禮安，榮川，奉化，順興，基，丹陽，淸風，忠州，陰城，竹山，龍仁，廣州通于天臨山烽

間烽 初起東萊于飛鳥通于安東 ○ 初起巨濟加羅山通于忠州 ○ 初起熊川天城堡通于永川 ○ 初起南海錦山通于忠州

已上 直烽四十處 間烽一百二十三處

第三炬：初起江界滿浦鎮餘屯臺自渭原，楚山，碧潼，昌城，朔州，義州，龍川，鐵山，宣川，郭山，定州，嘉山，博川，安州，肅川，永柔，順安，平壤，中和，黃州，鳳山，瑞興，平山，金川，開城府，長湍，坡州，高陽通于母岳東烽

已上 直烽七十八處 間烽二十二處

第四炬：初起義州古靜州自龍川，鐵山，宣川，郭山，定州，安州，肅川，永柔，順安，平壤，甑山，咸從，龍岡，三和，長連，安岳，殷栗，川，長淵，瓮津，康翎，海州，平山，延安，白川，開城府，交河，高陽通于母岳西烽

已上 直烽七十一處 間烽三十五處

第五炬：初起順天防踏鎮自興陽，長興，康津，靈岩，海南，珍島，務安，羅州，咸平，靈光，茂長，扶安，沃溝，臨陂，咸悅，龍安，恩津，魯城，公州，天安，牙山，稷山，陽城，水原，南陽，安山，仁川，富平，金浦，通津，江華，陽川通于開花山烽

間烽 初起喬桐長峯島通于江華

已上 直烽六十處 間烽三十四處

마.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陲典故), 봉수(烽燧)

목멩산(木覓山)봉수 제1은 영안도(永安道)·강원도(江原道)에서 오는 양주(楊州) 아차산(阿嵯山)봉수로 준(准)하고, 제2는 경상도에서 오는 광주(廣州) 천천령(穿川嶺)봉수로 준하며, 제3은 평안도 육로에서 오는 모악(母岳) 동봉(東峯)봉수로 준하고, 제4는 평안도·황해도 해로(海路)에서 오는 모악 서봉(西峯)봉수로 준하고, 제5는 충청도·전라도에서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開花山) 봉수로 준한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햇불이 하나이나, 적의 형적이 나타나면 햇불이 둘이며, 적이 지경 가까이 오면 햇불이 셋이고, 적이 지경을 침범하면 햇불이 넷이며, 접전(接戰)이 붙으면 햇불이 다섯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 경도(京都) 오봉(五烽)의 제일로(第一路)는 매양 이르지 않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며, 각읍에 이르러서도 봉수의 보고는 원래 자세히 살피지 않고, 매일 말에 공문 안에 날짜만 나열해 쓰고 흐리고 개인 것을 기입하지 않으며, 당해 아전으로 하여금 감영이나 병영에 가져다 올리게 해서 한결같이 영록(營錄)에 의해 써 넣을

따름이라. 어떤 도로의 봉수가 모처에서 끊어진 지를 전혀 살펴볼 수 없다. 봉군(烽軍)이 살아갈 수가 없어 도망치는 자가 잇따르는데, 지금 세상에 산에서 잘 사는 자로는 중보다 나은 사람이 없으니, 만약 각읍의 봉산(烽山)에 조그마한 절 하나를 지어 그에게 사역(寺役)을 면제시켜주고 전적으로 봉수만 관리하게 하며 승장(僧將) 한 사람을 두고 양료(糧料)를 주어 떠돌아 다니지 못하게 하며, 또 본관의 향소(鄉所)나 혹은 군관(軍官)으로 별장(別將)을 삼아 맡아 관리하게 하면, 봉군의 고역이 거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고도 위급을 알리는 방도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현석(李玄錫)의 《유재집(遊齋集)》

○ 주(周)나라 때 왕이 계집을 웃기기 위해 거짓으로 봉화를 올렸던 사실이 있으며, 한(漢)나라 때는 흉노(匈奴)가 쳐들어 와서 봉화가 감천궁(甘泉宮)에 통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니, 대개 한나라 이전에는 적이 이르러야 봉화를 들었던 것이다. 《당서(唐書)》에 “진수(鎭戍)의 봉후(烽候)를 서로 30리 거리에 두고 1거(炬), 2거, 3거, 4거가 있어서 밤마다 1거를 들면 평안한 표시이고, 나머지는 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고 들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봉수법은 대개 당나라 제도를 쓴 것이다.

○ 강계(江界)는 산 밖에 끼어 있어서 대적(大敵)이 돌입하면 성을 에워싸 구원이 끊어지니 심히 염려스럽다. 부(府)의 남쪽의 적유령(狄踰嶺)은 실은 남쪽을 가리키는 첩경인데도 봉수를 두지 않았으며, 다만 강변에서부터 의주(義州)에 이르렀으니 주밀하지 못한 것 같다. 마땅히 연대(煙臺)를 증설(增設)하여 적유령에서 희천(熙川)을 지나 영변(寧邊) 봉화와 서로 준하여야 할 것이다. 《양눌재집(梁訥齋集)》

○ 중원지방(中原地方)은 요동(遼東)에서 서쪽 방면으로 연대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서 5리, 10리 간에 서로 바라보아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랑캐 기병이 북경에 가까이 오면 먼저 알지 못하는 법이 없어서 맞이하여 공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대, 돈보(墩堡), 변방 성지(城池)의 제도가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전에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김응서(金應西)가 벽돌을 구워 연대를 두 군데에 높이 설치하였는데 지금까지 견고하여 강변 사람들이 믿고서 의지하고 있다. 지금 마땅히 형세가 중요한 곳을 보아 혹은 개축하고 혹은 신설하여 형세로 하여금 연락되게 하여 의주까지 이르게 되면 변새(邊塞)의 형세가 이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될 것이다. 《서애집》

○ 숙종(肅宗) 임오년(1702)에 하교하기를, “봉수는 나라의 중요한 것인데, 감히 원통한 일이 있다 하여 이를 거짓으로 올리는 일이 있으니 정상이 몹시 분통스럽다. 만약 별도로 처단하지 않으면 뒷날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효수(梟首)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다만 어리석은 향병(鄉兵)이 죽을 죄인줄 알지 못하고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 갑자기 군율(軍律)을 시행한다면 삼령오신(군대에서 세 번 호령하고 다섯 번 경계하는 일)의 도에 어긋나는지라, 특별히 너그럽게 다스려 사형을 감하고 섬에 유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법을 정하여 못된 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핑계로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서 인심을 경동(驚動)시키면 연대든 다른 곳이든 막론하고 한결같이 효수하여 군율을 엄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바. 增補文獻備考 卷123, 兵考 15, 烽隧 1

◇ 고려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曹晉若)이 아뢰어 봉수식(烽隧式)을 정하였다. 평시면 밤에는 불을 낮에는 연기를 각각 한 번 피우고, 이급(二急)이면 두 번, 삼급(三急)이면 세 번, 사급(四急)이면 네 번 피우며, 봉수소(烽隧所)마다 방정(防丁) 2인과 백정(白丁) 20인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을 예에 따라 주었다.〔조선의 봉수도 이를 본떴다.〕 충정왕 3년(1351)에 송악 봉획소(松嶽烽獲所)를 두었다.

◇ 조선

국전[경국대전]에, “봉수는, 평시에는 횃불[炬] 한 번, 적이 나타나면 횃불 두 번, 지경(地境)에 가까이 오면 횃불 세 번, 지경을 침범하면 횃불 네 번, 접전하면 횃불 다섯 번, 날마다 잇달아서 접전하면 쇠를 쌓고 낭분(狼糞)을 쓰되, 밤에는 불을 올리고 낮에는 쇠를 불사르며, 경중에서는 남소(南所)의 부장(部將)이 병조에 고하여 입계(入啓)하고, 외방에서는 봉장(烽將)이 주진에 고한다.” 하였다.

이수광이 이르기를, “주(周)⁸⁾나라 때에는 거짓 봉화를 올린 일이 있고, 한(漢)나라 때에는 봉화가 감천궁(甘泉宮)까지 통달하였다 하였으니, 대개 한나라 이전에는 구적(寇賊)이 오면 봉화를 올렸던 것이다. 《당서》에, ‘진수(鎭戍)의 봉후(烽候)는 거의 다 서로 30리 떨어져 있고, 일거(一炬) · 이거(二炬) · 삼거(三炬) · 사거(四炬)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밤마다 드는 일거는 평안(平安)을 뜻하고, 나머지는 구적(寇賊)의 다소에 따라 차이를 둔다.’ 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봉수법은 대개 당나라의 제도를 쓴 것이다.” 하였다.

이현석이 이르기를, “경도에 이르는 다섯 봉수 중에서 제1로는 번번이 이르지 않으므로 워낙 한심스럽고, 각 고을에서 알리는 봉수로 말하면 본디 잘 살피지 않아서 매월 말에 문장(文狀)에 날짜만을 벌여 적고 마는데 지나지 않을 뿐이므로, 어느 노(路)의 봉수가 어느 곳에서 끊어졌는지가 산만하여 상고할 수 없으며, 봉군은 편히 살 수 없어서 도망하는 자가 잇달았다. 내 생각으로는 산에서 잘 살기로는 세상에서 중(僧)만 한 자가 없고, 절은 온 나라 안에 두루 퍼져 있으며, 백성이 부세를 도피하여 달아나는 것은 나라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없으므로, 만약 각 고을의 봉산에 작은 절 하나를 세우는 것을 허가하고, 그 절의 부역을 면제하여 오로지 봉수를 맡게 하여 승장(僧將) 한 사람을 두고 몇 말의 봉료를 주어 운유(雲游)하지 못하게 하며, 또 그 고을의 향소(鄉所)나 군관을 별장으로 삼아서 구관(句管)시킨다면, 봉군의 괴로운 신역이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경급을 알리는 방도는 저절로 전일(專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㉔ 선조 33년(1600)에 체찰사 이항복이 아뢰기를, 장연(長淵)의 오차포(吾叉浦)와 웅진(鎡津)의 소강(所江) 같은 곳은 본도(本島)에서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이 한 곳에 봉수를 설치하여 서로 의지하여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8) 주(周)나라 유왕(幽王)이 총희(寵姬)인 포시(褒姒)를 웃기기 위하여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 제후들을 부른 일을 말함.

㉔ 숙종 3년(1677)에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외안(外安)·어청(於靑) 두 섬은 외양(外洋)에 있어서 망보기에 편리하므로, 전일에 충청감사(忠淸監司) 조위명(趙威明)이 아뢰어 진을 설치할 것을 청하였으나, 진보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 형세가 쉽지 않고 어려운 형편도 있습니다. 열읍(列邑)의 봉군은 잇달아 도망하고 시름과 원망이 하늘에 사무치니, 봉대를 새로 설치하면 망보기에는 유익하나, 잔폐(殘弊)한 봉군을 또한 억지로 입번(立番)시켜서 보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 외안은 멀리 떨어진 섬이므로, 갑자기 오는 적선(賊船)이 있으면 도리어 잡혀가서 길잡이가 될 염려는 있으나, 제때에 봉화를 올려서 통보할 형세는 조금도 없으며, 바다 가운데의 봉수는 번번이 구름이 끼어 어둡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 없으니, 그 이익은 없고 폐단만 있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외안·어청·녹도(鹿島) 등 세 섬에서 봉화를 올리고 망보는 일들은 곧 폐지하고, 원산(元山)의 봉수를 전례대로 거행하며, 다른 곳의 봉군을 털어내어 입번시키는 일도 마찬가지로 폐지하고, 수영에서 요리하여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니, 이렇게 감사·수사에게 아울러 분부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㉕ 강화유수 허질(許秩)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의 봉수는 고을 뒤에 있는데 앞뒤로 서로 막혀서 망볼 수 없으므로 봉군에만 의지하니, 일이 지극히 허술합니다. 앞산의 한 봉우리는 그 형세가 가장 높고 사면에 막힌 곳이 없으며, 그 위에는 우물도 있으므로, 뒷산의 봉수를 이 봉우리로 옮기면 온당할 듯하나, 일이 변통하는 데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㉖ 숙종 11년(1685)에 좌의정 남구만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대개 봉수 한 곳에는 반드시 5번(番)을 갖추어야 하고, 1번에 입번(立番)하는 자가 7인이며, 5보(保)까지 갖추자면 그 수가 매우 많은데, 한 고을에 혹 봉수가 8~9 곳도 있으니, 그 형세가 참으로 모두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변보(邊堡)의 사졸로 말하면 잔폐(殘弊)하고 곤궁하여 더욱 수를 채울 방도가 없으니, 모든 이러한 곳은 그 도로 하여금 각각 그 힘이 미치는 대로 1번에 혹 2~3인을 갖추기도 하고, 봉수 한 곳에 3~4번을 갖추기도 하게 하고, 혹 봉수의 수는 적으나 백성의 수가 많은 고을이면 또한 법에 따라 수를 채우게 하여, 많건 적건 간에 사람이 없어서 봉화가 끊어지는 폐단이 있게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 병조로 보내게 하여 뒷날에 그 책에 따라 적간(摘奸 부정을 적발함)하는 바탕으로 삼으며, 기계에 있어서도 긴요하지 않고 번잡한 것이 있으니, 병조에서 스스로 그 장만해야 할 수를 작성하여 각 봉수에 분부하여 죄다 장만하여 올려간 뒤에 병조에 신보하게 하여 적간 할 때에 참고하는 바탕으로 삼으면, 조금 착실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봉수에 관한 일은 매우 허술하므로 전에 신칙하였었는데, 이제 그대로 버려두면 참으로 착실하지 못하여질 것이니, 병조에 말하여 이에 따라 더욱 밝혀서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㉗ 숙종 12년(1686)에 무신 민섭(閔澮)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일찌기 임진년(1652년 효종 3년)에 신의 숙부 민진익(閔震益)이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을 때에 신도 따라 갔습니다. 그때 객산 능한산(凌漢山)의 연대 근처의 절에 불이 난 것을 봉줄이 번고를 알리는 불로 잘못 알고 곧 봉화를 올려서 응하였으므로, 그 밖의 봉수도 차례로 서로 응하였는데, 이튿날 병영에서 군뢰를 급히 보내어 영유연대(永柔煙臺)에 이르러 그치게 하였다 합니다. 봉화가 한 번 오른 뒤에는 곧 경성까지 이르러야 할 것인데, 하루 낮과 밤을 지낸 뒤에 비로소 2백 리밖에 안되는 영유에 이른 까닭은 대개 봉줄이 봉화를 잘못 올린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어 탐문한 뒤에야 비로소 봉화를 올리므로, 이렇게 늦추는 폐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만약 변보가 있을 때 이렇게 늦춘다면 어찌 크게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봉화를 잘못 올린 죄를 조금 감하지 않으면 이 폐단은 변통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봉화를 잘못 올린 죄는 변고가 있어도 봉화를 올리지 않은 것에 비하면 진실로 경하고 중한 구별이 있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하여 법을 정하게 하고, 뒤로는 봉줄이 탐문한 뒤에야 서로 응하는 일을 일체 금단하되, 해조를 시켜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병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평시에 봉화를 올리지 않은 데에 대한 율(律)은 장(杖) 1백에 이르고, 난(亂)에 임하여 착오하면 군법에 따르는 것은 이미 정식(定式)이 있으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법례에 따르도록 더욱 경계하되, 혹 봉화를 잘못 올렸으나, 정상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는 자라면 그 죄의 경중을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㉔ 숙종 16년(1690)에 어영대장 이의징(李義徵)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봉수에 관한 1건은 허술함을 면하지 못합니다. 양성(陽城)의 괴태곶이봉수(槐台串烽燧)는 수원의 천주산봉수(天柱山烽燧)와 서로 응하고, 천주산 봉수는 남양의 염불산봉수(念佛山烽燧)와 서로 응하는데, 천주산은 수원에서 거의 50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봉우리가 겹쳐져 있어서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으므로, 봉화를 올려 경급을 알리는 일이 있더라도 곧 알 길이 없고, 봉군이 와서 알리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경급이 있는 것을 아니, 본부(本府)의 방어사가 이미 중병을 거느리고 경성의 지척에 있으나 변방에서 경급을 알리는 것을 곧 알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 남으로 5리 안에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있고 그 봉우리가 가장 높은데, 이곳에 연대를 둔다면 남쪽으로 괴태곶이에 응하고, 서쪽으로 천주산에 비쳐서 삼남(충청도·경상도·전라도)에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일각에 곧 도달할 것이니, 천주산의 봉군이 50리를 와서 알리는 것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아는 것과는 그 빠르기가 매우 현격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원은 기보(서울에 가까운 곳)의 중요한 곳인데, 봉수로 경급을 알리는 일이 이렇게 허술하니, 독성산성에 연대를 더 설치하라.” 하였다.

㉕ 숙종 27년(1701)에 전교하기를, “봉수는 경급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북로(北路)의 봉수가 끊어진 지 이미 수십 년이 되었으니, 이것이 염려스럽다.” 하니, 우의정 신완(申琬)은 아뢰기를, “북로에서는 봉대가 바닷가에 많이 있어서 겹쳐진 봉우리와 운무에 가리워지므로, 봉화가 서로 맞출 수 없는 것은 본디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하고, 이조참판 이인엽(李寅燁)은 아뢰기를, “이번 우후 전백록(全百祿)은 북방 사람이라 지형을 익히 알 것이니, 편부(便否)를 헤아려서 아뢰도록 명하시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㉖ 북병사 이홍술(李弘述)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로(北路)의 봉화가 경성에 도달하는 것이 한 달 안에 7~8순(巡)에 지나지 않는 것은, 대개 육진부터 경성까지 길이 멀어서 초경(初境)의 봉화를 오후에 비로소 올리면 날이 저물어서야 아차산에 도달하는데, 바닷가이기 때문에 운무로 낮에도 어둡고 갠 때에도 늘 불빛이 적어서 도달하여 비칠 수 없으며, 혹 연기를 내어 서로 통하더라도 구름이 짙으면 또한 바라볼 수 없으니, 봉화가 날마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길주 이북은 신(臣)의 소관이므로 본영(本營)에서 더욱 경계해야 마땅하나, 단천 이남은 남도에 속하므로, 조정에서 본도의 감사와 남병사에게 분부하여 전처럼 허술한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북로의 봉화가 흔히 서로 통하지 않으니, 각별히 더욱 경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㉟ 영조 4년(1728)에 충용사 장봉익(張鵬翼)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수원부사는 독진의 방어사로서 6천의 병마가 있기는 하나, 경내에 봉수가 설치된 곳이 없으므로, 변방의 경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 이것은 매우 허술한 것입니다. 본부에서 남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독성산성이 있는데, 이곳에 그 중간 봉수를 설치하여 죽산의 좌찬봉수(佐贊烽燧)와 서로 응하게 한다면, 변방의 경보가 있으면 수원에서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신이 진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부사 신(臣) 송진명(宋眞明)에게 의논하였더니, 송진명도 옳다고 하고 이어서 신에게 서울로 돌아가거든 아뢰어서 창설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권하였으므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아뢴 바에 참으로 의견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㊱ 영조 5년(1729)에 무신 이행검(李行儉)이 아뢰기를, “팔도에 봉수를 설치한 것은 곧 변란에 임하여 경급을 알리려는 뜻인데, 지난해 3월의 변란 때에 홍적이 곳곳에서 별떼처럼 일어나 이미 자행하게 되었어도 봉수가 경급을 알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신이 그 변란 때에 여주에 대죄(待罪)⁹⁾하였다가 죽산영장(竹山營將)의 직임에 권차(權差)되어 여주·이천(利川)·양근(陽根)·죽산 네 고을의 군병을 거느리고 죽산 경내의 좌찬현(佐贊峴)에 진을 쳤을 때에 도둑의 무리가 죽산부(竹山府)에 가득 찼는데, 본부의 봉대가 진을 친 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나, 여느 때처럼 봉화를 올리고 경급을 알리는 것은 전혀 없으므로, 몹시 괴이하게 여겨 봉군을 불러다가 그 까닭을 따져 물었더니, 전연 몰랐으므로 과연 경급을 알리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문(講文)에 ‘적이 나타나면 횃불 두 번, 지경에 가까이 오면 횃불 세 번, 지경을 침범하면 횃불 네 번, 접전하면 횃불 다섯 번을 올리고, 구름이 짙으면 사람을 보내어 경급을 알리고 낮에는 연기를 피운다.’는 등의 일들을 가르치고, 전로(前路)에 전하여 알리게 하였으나, 다른 봉대에서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오래도록 태평하였으므로, 봉수가 있는 고을의 수령이 봉군만을 채울 뿐이고 강문을 가르치지 않은 탓이니, 한심할 뿐더러 설치한 본의가 참으로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을의 수령을 시켜 강문을 가르쳐 익히게 하라는 뜻으로 팔도의 감사·병사에게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어떠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의 말하기를, “병조에서는 봉대법(烽臺法)이 있으므로 전에 이것으로 경계하였으나, 아뢴 바가 옳으니 다시 더 경계하되, 이 뒤로 봉수군이 삼가지 않는 폐단이 있으면 각별히 죄를 논하고, 당해 수령도 마찬가지로 죄준다는 뜻을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

㊲ 병조에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목멱산봉수(木覓山烽燧)에서 봉화를 올리지 않은 곡절을 상세히 살펴 물어서 아뢰어야 한다는 뜻을 이미 먼저 아뢰었거니와, 봉장(烽將)과 패두(牌頭)를 불러서 물었더니, ‘어제 황혼 뒤에 갑자기 구름이 짙어져 대봉(對烽) 각 처를 바라볼 수 없었으므로,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다가 절로 때가 지났습니다. 전에도 이러한 때에는 본봉(本烽)에서도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으며, 어제처럼 봉화를 올리지 못한 것은 늘 있던 일이므로, 구름이 짙을 때의 전례에 따라 망을 보았으나 입계(入啓)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으로 말하면 본봉에 운무가 가리는 데 이르지 않는 않았으니, 본봉에서 대봉 사이에

9) 허물이 있어 벌을 내리기를 기다림. 여기서는 자격 없이 벼슬에 있으므로 으레 잘못을 저질러 죄받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벼슬에 있는 자의 겸사(謙辭)임.

구름이 짙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이 대봉의 구름이 짙기 때문에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다면 곧 본조에 알려야 할 것인데, 전례라고 핑계하여 알리지 않았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미열하다는 핑계로 버려둘 수 없으니, 본조에서 중하게 죄를 처벌하고, 이 뒤로는 날날이 본조에 알리도록 더욱 경계하며, 봉수의 단자는 그저 관례에 따라 써 넣지 못한다는 뜻을 분부하소서, 감히 아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수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는가? 더구나 이것은 인정(人定) 전의 일이고 인정 뒤의 일이 아니니, 인정의 종이 올릴 때까지도 봉화를 올리지 못하였으면 곧 병조에 알려야 할 일이며, 또 어제 저녁에 구름이 매우 짙지 않았다면 봉장이 대답한 것은 임시로 꾸며낸 말인 듯하다. 해소(該所)의 부장과 당해 봉장은 모두 중하게 결곤(決棍)하고, 패두와 서원(書員)도 유사(攸司)를 시켜 중하게 죄주도록 하라.” 하였다.

㉔ 영조 17년(1741)에 형조판서 박문수(朴文秀)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북도는 본디부터 백성이 아주 적어서 봉군을 얻기 어려우므로, 각 처의 정배(定配)된 사람으로 봉군을 채웠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봉군을 개나 돼지처럼 여겨 사람죽에 끼지 못하고 혼인을 통하지 못하므로, 봉군이 된 자는 마치 죽을 곳에 들어간 듯하여, 도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뇌물을 써서 면합니다. 이 때문에 각 고을에서는 채울 길이 없으니, 봉대가 허술한 것은 대개 이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이 겨우 봉무사(烽武士)로 변통하여 한산(閑散) 중에서 가장 착실한 자로 죄다 채웠으므로 지금은 착실하다고 하겠으나 듣건대, 봉무사들이 혹 다시 봉군으로 낮추어질 것을 염려하여 원망하는 꼬투리가 없지도 않다 하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각 고을에 엄하게 경계하도록 하고, 파총(把總)·초관(哨官)·친기위(親騎衛) 같은 것에 빈자리가 있으면 봉무사 중에서 건장한 자를 많이 뽑아서 차출하여 즐겨 나아갈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뢰 바가 옳다. 봉무사가 많이 원망한다 하니, 남병사(함경남도 병마절도사)·북병사에게 엄하게 경계하여 보람이 있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㉕ 영조 25년(1749)에 김상로(金尙魯)(이때 병조판서였다)가 경연에서 아뢰기를, “장백산의 북쪽은 천평(天坪)인데, 이 산 일대가 가장 염려스럽고, 신이 듣기로는 오을족보(吾乙足堡)에서 긴 골짜기를 따라 가면 곧바로 단천부(端川府)에 닿는다 합니다. 그 형편으로 말하면 번호(蕃胡)가 천평에 없다 하여 그 중간 봉수를 철폐하여서는 안되겠고, 오을족 이하의 중간 봉수를 철폐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고부터는 단천의 백성이 크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 모두가 놀라 소요합니다. 대저 천평에 번호가 없었던 지 이제 몇 해가 되었어도 중간 봉수를 그대로 두고 폐지할 것을 의논한 일이 없었으니, 옛사람의 깊고 먼 염려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신이 남병사 심해(沈海)와 이 일을 의논하였더니, 심해의 의견도 신의 의견과 바로 같았고, 이미 중간 봉수를 도로 설치하려는 뜻으로 이치를 논하여 장문(狀聞)¹⁰⁾하였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장청(서장으로 아뢰어 청함)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신을 시켜 살펴보게 한 데에는 뜻이 있었거니와, 백성이 바라는 것이 또한 이러한데, 어찌 그만두는 것을 탓하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같은 예로 곧 품처(稟處)하게 하라.” 하였다.

㉖ 영조 33년(1757)에 황해병사 최진해(崔鎭海)의 장계에 따라 웅진(甕津)의 덕월산(德月山)에 봉수 한 곳을 새로 설치하였다.

10) 외방에 나가 있는 사신(使臣)이 서장(書狀)으로 임금에게 아뢰는 것. 장계(狀啓).

㉟ 영조 39년(1763)에 장령 한필수(韓必壽)가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는 높은 산과 고개가 있고 구름과 안개에 막혀 가려서 경성까지 도달하는 때가 매우 드문데, 이것은 참으로 사세가 위낙 그러한 것이나, 조치가 진선(盡善)하지 못한 폐단도 있습니다. 마천령(磨天嶺) 이북은 신(臣)이 잘 알지 못하나, 대개 듣기로는 육진의 여러 고을에서는 사시나 오시에 봉연을 올려서 서로 응하여 단천(端川)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마운령(磨雲嶺) 이남에서는 비로소 봉화로 서로 응하는데, 대개 봉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서로 잇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성(利城)의 북쪽에 있는 곡구봉대(谷口烽臺)부터 그 고을의 남쪽에 있는 포항봉대(浦項烽臺)까지는 70여 리가 되므로, 아주 맑은 날이 아니면 번번이 바라볼 수 없는 폐단이 있습니다. 신이 듣건대, 이성 고을 뒷산에 봉대를 세울 만한 곳이 있는데, 남북을 서로 이을 수 있으므로, 전후의 병사가 여러 번 군관을 보내어 살펴보았으나, 그 고을에 폐단이 있으므로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다 합니다. 남병사를 시켜 다시 살펴보고 설치하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이조참판 서명신(徐命臣)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가 경성에 도달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신이 번임(蕃屏)의 직임. 곧 관찰사]에 대좌하였을 때에 보니, 한 달 안에 함흥에 도달하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는 편비(邊備)는 장수·비장(裨將)을 시켜 살펴 보게 하였더니, 두 봉수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의 아지랑이와 바다의 안개도 따라 막아 가려서 봉화가 끊어지는 것이 서너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형편을 상세히 논하여 장문하러 하였으나, 급히 갈렸으므로 장문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호군(護軍) 이이장(李彝章)이 아뢰기를, “북로의 봉수는 참으로 지극히 허술하니, 대신(沙甸)의 벼슬에 있는 신하(臣)이 청한 것이 옳습니다. 중신이 아뢴 끊어지는 봉수가 과연 세 곳 인데, 이것은 혹 더 설치하여 서로 이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저 관북(함경도)의 봉로는 다 해변의 절정이므로, 산의 아지랑이와 바다의 안개가 겹 때가 없어서 낮에 올리는 봉연은 문득 안개와 아지랑이에 섞여 마침내 불로 비추는 것만 못할 것이니,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일지라도 반드시 전하여지리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후의 도신(道臣)·수신(帥臣)이 우려한 까닭인데, 끝내 좋은 계책이 없으니, 이것이 매우 답답합니다.” 하고,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봉수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므로 태평한 때에 있어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대신(臺臣)과 여러 재신(宰臣)이 이미 두루 아뢰었으니, 도신·수신을 시켜 잘 헤아려서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정조 5년(1781)에 봉수군을 침학(侵襲)하여 잡역 일에 부리는 폐단을 더욱 경계하였는데, 병조판서 홍낙성(洪樂性)이 아뢴 바에 따른 것이다. 정조 20년(1796)에 화성봉대(華城烽臺)를 창설하였다. 정조 24년(1800)에 후주(厚州)에 봉대를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어면(魚面)·자작(自作)·갈파지(訖波知)·구갈파지(舊訖波知)의 네 봉대를 폐지하였다. 영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금 남병사 최경악(崔景岳)의 장계를 보니, ‘이제 후주 등에 여러 봉대를 설치한 뒤에는 어면 등 네 봉대가 이미 내지가 되었으니, 봉대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였으니, 청한 대로 시행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순조 14년(1814)에 명하여 영흥의 성력봉대(聖歷烽臺)를 철폐하였다. 이때 영흥부사(永興府使)가 상소 하여, ‘본부에 세 봉대가 있으나, 덕치(德峙)·웅망(熊望)이 직로로 서로 바라보이는데, 성력은 둘 사이에 끼여 있으니 곧 군터더기입니다.’ 하였으므로, 이 조치가 있었다.

㊧ 순조 16년(1816)에 장진부(長津府)의 노탄봉수(蘆灘烽燧)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하여 폐지하고 대신

참발(站撥)을 설치하였다. 좌의정 한용귀(韓用龜)가 아뢰기를, “지금 함경감사 이희갑(李羲甲)과 남병사 서춘보(徐春輔)의 장계를 보니, 장진부사(長津府使)의 첩정[상급 아문에 보내는 공문]을 날날이 들고서, ‘본부의 노탄봉수는 혼자 올리고 혼자 끄며 안팎으로 서로 응하는 곳이 본디 없으므로 두어도 이로울 것이 없는데, 고을의 참발소(站撥所)¹¹⁾는 없어서는 안될 것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였으므로, 변보가 이 때문에 늦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필요없는 봉수를 폐지하고 쓸모있는 참발을 설치하여 봉장의 요미(料米)를 발장(撥將)에게 옮겨 준다면, 일이 양쪽으로 매우 편리할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여쭙어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봉수를 철폐하고 참발을 설치하는 것이 실로 마땅하게 변통(變通)하는 데에 맞으며, 삼수(三水)의 전례도 이미 있으니, 장청(狀淸)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㉔ 순조 34년(1834)에 명하여 봉수를 잘 거행하라는 뜻으로 각도에 엄히 경계하였는데, 충용사 신경(申綱)의 계청(啓淸)에 따른 것이다.

㉕ 순조 35년(1835)¹²⁾ 5월에 함안의 파산봉수(巴山烽燧)와 함천의 미송봉수(美崇烽燧)를 설치하였는데, 경상감사 조병현(趙秉鉉)의 계청에 따른 것이다.

㉖ 철종 5년(1839)에 화개산봉대(華蓋山烽臺)를 옮겨 설치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경기수사 이용순(李容純)의 장계에, ‘본부[강화부(江華府)]를 가리킴의 화개산봉대[화개산은 교동에 있음]는 성묘[향교의 공자 사당을 가리킴]의 주막에 있으므로, 유생들이 옮겨 설치할 것을 거듭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쳐 하도록 분부하소서.’ 하였습니다. 그 미안한 것이 과연 유생들의 말과 같고, 그 옮겨 설치하려는 곳을 지도 위에서 보면, 형편이 지금의 봉대와 앞뒤에서 응하여 막히거나 돌 걱정이 조금도 없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㉗ 고종 5년(1868) 4월에 영종(永宗)·교동(喬桐)에 봉대(烽臺)를 설치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영종·교동은 한낱 작은 섬에 지나지 않으니, 방어하는 방도를 전담시키기 어렵고, 또 외국 배의 왕래도 감작스럽습니다. 봉대를 설치하여 심도[강화부의 별칭]와 서로 응하여 경급을 당하면, 가서 구원할 바탕으로 삼도록 진무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㉘ 고종 14년(1877) 2월에 명하여 이원현(李原縣)의 두 봉수를 합하여 선분(船盆) 뒷산에 한 봉대를 설치하였다. 삼군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함경감사 이회정(李會正)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원현감 장계환(張啓煥)의 첩보에, ‘본현에 두응치(斗應峙)와 고을 주봉(主峰)의 두 봉수가 있는데, 합하여 선분 뒷산에 한 봉대를 설치하면 봉화에 응하는 데에 차이가 없고 고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 하였으나,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삼군부를 시켜 여쭙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봉대 둘을 폐지하고 하나를 설치하면 봉화에 응하는 것이 물론 빠르고, 봉군의 폐단도 줄 것이니, 장청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11) 관선(官船)이나 관마(官馬)를 갖추어 두고 명령·보고의 전달이나 관원·관물의 전송(轉送) 등을 맡아 보는 곳.

12) 순조는 34년 11월에 승하하고 이어서 헌종이 즉위하였으므로 순조 35년은 없음. “경상감사 조병현의 계청에 따른 것이다.” 하였으므로, 조병현이 경상감사가 된 순조 34년 10월 이후의 일일 것이니, 헌종 원년의 오기(誤記)인 듯함.

㉔ 고종 20년(1883)에 명하여 종성부(鍾城府)의 오갈암봉대(烏渴巖烽臺)를 철폐하고, 세 봉대만을 두어 부회암(釜回巖)과 서로 응하게 하였다.

㉕ 고종 31년(1894)에 팔로(八路)의 봉수를 폐지하였다.

사. 增補文獻備考 卷124, 兵考 16, 烽隧 2

◆ 봉수(烽隧) 2

㉑ 《속대전(續大典)》

- 봉수 연대(煙臺)가 있는 곳의 봉군(烽軍) 등은 타역(他役)에 배정하지 않고 오로지 망보는 일만을 하게 한다.
- 부지런하고 성실한 품관(品官) 4인을 따로 감고(監考)로 정하고, 2번(番)으로 나누어 낮과 밤으로 번갈아 검거(檢擧)하게 한다.
- 봉화를 끊은 곳의 봉졸(烽卒)은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고, 구적(寇賊)이 이르러도 봉화를 올리지 않은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 거짓으로 봉화를 올린 자도 같은 율(律)을 적용한다.

목덕산봉수는 동에서 서까지 5거가 있는데, 제1거는 함경도·강원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양주의 아차산 봉수에 응하고, 제2거는 경상도·충청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광주(廣州)의 천림산봉수에 응하고, 제3거는 평안도·황해도·경기에서 육로로 온 것으로 모악동봉(母嶽東烽)에 응하고, 제4거는 평안도·황해도·경기에서 수로로 온 것으로 모악서봉(母嶽西烽)에 응하고, 제5거는 전라도·충청도·경기에서 온 것으로 양천의 개화산 봉수에 응한다.

◇ 제1거(第一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아차산(峨嵋山)〔양주(陽洲)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이다.〕

한이산(汗伊山)〔㉑여람(興覽)에는 대이산(大伊山)으로 되어있다.〕

잉읍현(荳邑峴)〔㉑여람에는 잉읍산(仍邑山)으로 되어있다. 포천(抱川)에 있다.〕

독현(禿峴)·미로곡(彌老谷)〔㉑여람에는 칭로곡(稱老谷)으로 되어있다. 영평(永平)에 있다.〕

적골산(適骨山)〔㉑여람에는 철원(鐵原)에 들어있다.〕

할미현(割眉峴)〔㉑비국등록(備局謄錄)에는 고모현(姑母峴)으로 되어있다. 철원에 있다. 이하는 강원감사(江原監司)의 소관이다.〕

- 소이산(所伊山) · 토수(土水)〔(보)여람에는 토빙(吐氷)으로 되어있다. 평강(平康)에 있다.〕
- 송고개(松古介) · 천천(箭川)〔화양(淮陽)에 있다.〕
- 쌍령(雙嶺) · 병풍산(屏風山) · 성북(城北)〔(보)여람에는 남곡북산(嵐谷北山)으로 되어있다.〕
- 소산(所山) · 봉도지(峰道只) · 철령(鐵嶺)〔안변(安邊)에 있다. 이하는 함경남병사의 소관이다.〕
- 사고개(沙古介) · 산성(山城)〔(보)여람에는 학산(鶴山)으로 되어있다.〕
- 사동(蛇洞)〔(보)비국등록에는 사동(巳洞)으로 되어있다.〕
- 장덕산(長德山)〔덕원(德源)에 있다.〕
- 소달산(所達山) · 천달산(天達山)〔(보)읍지(邑誌)에는 천불산(天佛山)으로 되어있다. 문천(文川)에 있다.〕
- 웅망산(熊望山)〔고원(高原)에 있다.〕
- 성황치(城皇峙)〔(보)읍지에는 성력산(聖歷山)으로 되어있다. 영흥(永興)에 있다.〕
- 덕치(德峙) · 왕금동(王金洞)〔정평(定平)에 있다.〕
- 비백산(鼻白山) · 성곶이(城串)〔(보)비국등록에는 성곶이(聲串)로 되어있다. 함흥에 있다.〕
- 초고대(草古臺) · 창령(倉嶺) · 고삼구미(藁三仇昧)〔(보)읍지에는 집삼미(執三昧)로 되어있다.〕
- 남산(南山)〔홍원(洪原)에 있다.〕
- 육도(六島)〔(보)여람에는 육도(陸島)로 되어있다. 북청(北靑)에 있다.〕
- 불당(佛堂) · 산성(山城) · 석옹(石茸) · 진조봉(眞鳥峰)〔(보)비국등록에는 진안봉(眞安峰)으로 되어있다. 이원(利原)에 있다.〕
- 읍주봉(邑主峰)〔(보)읍지에는 진조봉 아래에 읍주봉 · 을응치(乙應峙) 두 봉수가 있다 하였다.〕
- 성문(城門)〔(보)비국등록에는 성문현(城門峴)으로 되어있다.〕
- 증산(甞山)〔단천(端川)에 있다.〕
- 마흘내(𪛗訖乃)〔(보)여람에는 말흘라(末訖羅)로 되어있다.〕
- 오라퇴(吾羅退) · 호타리(胡打里) · 기리동(岐里洞)〔성진진(城津鎭)에 속한다. 길주(吉州)에 있다. 이하는 함경북병사(咸鏡北兵使)의 소관이다.〕
- 쌍포령(雙浦嶺)〔성진진에 속한다.〕
- 장고개(場古介)〔(보)여람에는 장동(場洞)으로 되어있다.〕
- 산성(山城) · 향교현(鄕校峴) · 녹번(碌番) · 고참현(古站峴)〔명천(明川)에 있다.〕
- 항포동(項浦洞) · 북봉(北峰) · 수만덕(壽萬德)〔경성(鏡城)에 있다.〕
- 중덕(中德) · 주촌(朱村) · 영강(永康) · 장평(長坪) · 나적동(羅赤洞) · 강덕(姜德) · 송곡현(松谷峴) · 칠전산(漆田山)〔부령(富寧)에 있다.〕
- 구정판(仇正坂) · 남봉(南峰) · 흑모로(黑毛老)〔폐무산보(廢茂山堡)에 있다.〕
- 고현(古峴)〔폐무산보에 속한다.〕
- 이현(梨峴)〔고풍산보(古豊山堡)에 속한다. 회령(會寧)에 있다.〕
- 봉덕(奉德)〔(보)읍지에는 봉현(奉峴)으로 되어있다. 보을하진(浦乙下鎭)에 속한다.〕

중봉(中峰)[보을하진에 속한다.]

송봉(松峰)[보을하진에 속한다.]

남봉(南峰) · 운두봉(雲頭峰)[(보)비국등록에는 보을하진에 들어있다.]

고연대(古煙臺)[(보)읍지에는 고연대(高煙臺)로 되어있다.]

오산(鰲山) · 오롱초(吾弄草) · 죽보(竹堡)[(보)읍지에는 죽포(竹苞)로 되어있다. 고령진(高嶺鎭)에 속한다.]

북봉(北峰)[고령진에 속한다.]

하을포(下乙浦)[(보)비국등록에는 활포(豁浦)로 되어있다. 고령진에 속한다.]

포항(浦項)[방원보(防垣堡)에 속한다. 종성(鍾城)에 있다.]

신기리(新岐里)[방원보에 있다.]

부회환(釜回還)[(보)비국등록에는 부회암(釜回巖)으로 되어있다. 방원보에 속한다.]

오갈암(烏渴巖)[(보)여람에는 오갈암(烏曷巖)으로 되어있다.]

삼봉(三峰)[여람에는 삼산(三山)으로 되어있다.]

남봉(南峰) · 북봉(北峰) · 장성문(長城門)[동관진(潼關鎭)에 속한다.]

북봉(北峰)[동관진에 속한다.]

보청포(浦淸浦)[(보)여람에는 보청포(浦淸浦)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보음포(浦音浦)로 되어있다. 동관진에 속한다.]

소동건(小童建)[(보)읍지에는 소동건(小童巾)으로 되어있다. 영달보(永達堡)에 속한다. 온성(穩城)에 있다.]

송봉(松峰)[영달보에 속한다.]

중봉(中峰)[영달보에 속한다.]

대탄(大灘)[(보)여람과 비국등록에 모두 견탄(犬灘)으로 되어있다. 비국등록에는 견탄 · 시건(時建) 두 봉수가 모두 유원진(柔遠鎭)에 들어있다.]

시건(時建) · 고성(古城)[유원진에 속한다.]

압강(壓江)[유원진에 속한다.]

평연대(坪煙臺)[(보)여람에는 유원평(柔遠坪)으로 되어있다. 유원진에 속한다.]

사장(射場) · 평연대(坪煙臺)[(보)여람에는 부평(府坪)으로 되어있다.]

포항(浦港) · 미전(美錢)[미전진(美錢鎭)에 속한다.]

송봉(松峰)[미전진에 속한다. (보)읍지에 실리지 않았다.]

전강(錢江)[미전진에 속한다.]

장성현(長城峴)[황자파보(黃疋坡堡)에 속한다. (보)읍지에 실리지 않았다.]

중봉(中峰)[경원(慶源)에 있다.]

마유(馬乳)[(보)비국등록에는 훈융진(訓戎鎭)에 들어있다.]

장항(獐項)[훈융진에 속한다.]

성상(城上)[훈융진에 속한다.]

- 후훈(厚訓) · 남산(南山) · 동림(東臨)〔Ⓜ비국등록에는 동림(東林)으로 되어있다. 안원보(安原堡)에 속한다.〕
- 수정(水汀)〔Ⓜ여람에는 수정(水貞)으로 되어있다. 건원보(乾原堡)에 속한다.〕
- 건가퇴(件加退)〔아산보(阿山堡)에 속한다.〕
- 백안(白顔)〔Ⓜ비국등록에는 백안봉(白顔峰)으로 되어있다. 아산보에 속한다.〕
- 동봉(東峰)〔아오지보(阿吾地堡)에 속한다. 경흥(慶興)에 있다.〕
- 서봉(西峰)〔Ⓜ여람에는 북봉(北峰)으로 되어있다. 무이보(撫夷堡)에 속한다.〕
- 포항현(浦項峴) · 망덕(望德) · 구신포(仇信浦)〔Ⓜ여람에는 구신포(仇申浦)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굴신포(屈伸浦)로 되어있다.〕
- 두리산(豆里山)〔Ⓜ비국등록에는 조산보(造山堡)에 들어있다.〕
- 남산(南山)〔조산보에 속한다.〕
- 우암(牛巖)〔서수라보(西水羅堡)에서 15리이다.〕 초기 지점이다.
- 간봉(間峰)〔이하 세 봉수는 행영(行營)까지만 알린다.〕
- 아오지보(阿吾地堡)의 동봉(東峰)〔위에 보인다.〕 · 금석산(金石山)〔Ⓜ읍지에는 금적곡(金迪谷)으로 되어 있고, 서쪽으로 피덕(皮德)에 응한다 하였다. 비국등록에는 온성(穩城)에 들어있다.〕 · 피덕(皮德)〔Ⓜ읍지에 피덕봉수는 행영에 알린다 하였다.〕
- 건원보(乾元堡)의 수정(水汀)〔위에 보인다.〕 · 진보(進堡)〔행영에 알린다.〕
- 회령(會寧)의 고연대(古煙臺) · 지덕(池德)〔Ⓜ읍지에는 지덕(地德)으로 되어있고, 서쪽으로는 오산(鰲山)에 응하고, 동북으로는 남효랑(南孝郎)에 응한다 하였다. 읍지에 보면 고연대는 곧 오산인 듯하다.〕 · 남효랑(南孝郎)〔Ⓜ읍지에 남효랑봉수는 행영에 알린다 하였다.〕
- 간봉(間峰)〔이하의 여러 봉수는 무산(茂山)에서 온다.〕
- 회령(會寧)의 운두봉(雲頭峰)〔위에 보인다.〕 · 호박덕(琥珀德)〔풍산보(豐山堡)에 속한다.〕 · 대암(大巖)〔풍산보에 속한다.〕 · 서현(西峴)〔양영보(梁永堡)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풍산보에 들어있다.〕 · 쟁현(錚峴)〔Ⓜ비국등록에는 쟁현(爭峴)으로 되어있고, 양영보에 들어있다. 무산(茂山)에 있다.〕 · 남령(南嶺) 초기 지점이다.
- 간봉(間峰)〔이하의 여러 봉수는 각진(各鎭)에서 온다.〕
- 경성(鏡城)의 강덕(姜德)〔위에 보인다.〕 · 차산(遮山)〔Ⓜ읍지에는 응봉(鷹峰)으로 되어있다. 어유간진(魚游澗鎭)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나적동(羅赤洞)〔위에 보인다.〕 · 하봉(下峰)〔오촌보(吾村堡)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장평(長坪)〔위에 보인다.〕 · 고봉(古峰)〔Ⓜ읍지에는 주온상봉(朱溫上峰)으로 되어있다. 주온보(朱溫堡)에 속한다.〕 · 불암(佛巖)〔Ⓜ읍지에는 주온하봉(朱溫下峰)으로 되어있다. 주온보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장평(長坪)〔위에 보인다.〕 · 청덕(淸德)〔Ⓜ비국등록에는 청덕(靑德)으로 되어있다. 보로지보(浦老知堡)에 속한다. Ⓜ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

하전과(下田坡)(남로지보(南老知堡)에 속한다. 보로지보인 듯하다. ㉔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 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영강(永康)(위에 보인다.) · 송봉(松峰)(㉔읍지에는 보화하봉(寶化下峰)으로 되어있다. 보화보(寶化堡)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 경성(鏡城)의 주촌(朱村)(위에 보인다.) · 모덕(牟德)(삼삼파진(森森坡鎭)에 속한다.) · 동봉(東峰)(㉔읍지에는 삼삼파상봉(森森坡上峰)으로 되어있다. 삼삼파진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 길주(吉州)의 향교현(鄕校峴)(위에 보인다.) · 최세동(崔世洞)(서북진(西北鎭)에 속한다.) · 동산(東山)(㉔읍지에는 서산(西山)으로 되어있다. 서북진에 속한다.) · 고봉(高峰)(서북진에 속한다.) · 서산(西山)(㉔읍지에는 장군파(將軍坡)로 되어있다. 서북진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峰) [이하의 여러 봉수는 오을족보(吾乙足堡)에서 온다.]

북청(北靑)의 석용(石茸)(위에 보인다.) · 자라이(者羅耳) · 사을이(沙乙耳) · 신설봉(新設峰)(㉔읍지에는 사을이하의 네 봉수가 있다.) · 후치(厚峙) · 허화(虛火) · 마저(馬底) · 이동(梨洞) · 삼봉(杉峰)(단천(端川)에 있다. ○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삼봉 · 슬고개(瑟古介) 두 봉수는 영조(英祖) 경오년(庚午年 1750년 영조 26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니, 폐봉(廢峰)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슬고개(瑟古介)(㉔비국등록에는 괏고개(藿古介)로 되어 있고, 쌍청보(雙靑堡)에 들어있다.) · 괏령가사(藿嶺家舍)(이하의 다섯 봉수는 영조 경오년에 도로 설치하였다.) · 고소리(古所里) · 장항(獐項) · 사기(沙器) · 일언(日彦) · 구자(口字)(쌍청보에 속한다.) · 검의덕(檢義德)(오을족보에 속한다.) · 마등령(馬騰嶺)(오을족보에 속한다.) · 은룡덕(隱龍德)(오을족보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峰) [이하의 여러 봉수는 어면보(魚面堡)에서 온다.]

단천(端川)의 슬고개(瑟古介)(위에 보인다.) · 천수령(天秀嶺) · 석용(石茸)(㉔비국등록에는 응덕(鷹德)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응덕 · 용연(龍淵)이 모두 남봉(南峰) 아래에 들어있다. 갑산(甲山)에 있다.) · 우두령(牛頭嶺)(용연(龍淵)이라고도 한다.) · 남봉(南峰) · 이질간(伊叱間) · 아질간(阿叱間)(동인보(同仁堡)에 속한다. ㉔비국등록에는 이하의 세 봉수가 삼수(三水)에 잘못 들어가 있다.) · 소리덕(所里德)(운룡보(雲龍堡)에 속한다.) · 하방금덕(何方金德)(혜산진(惠山鎭)에 속한다.) · 수영동(水永洞)(삼수부(三水府)에 있다.) · 서봉(西峰)(인차외보(仁遮外堡)에 속한다.) · 가남(家南)(나난보(羅暖堡)에 속한다.) · 서봉(西峰)(나난보에 속한다.) · 용동(甕洞)(가을파지진(茄乙坡知鎭)에 속한다.) · 용기봉(龍起峰)(㉔비국등록에는 구연대(舊煙臺)로 되어있고, 가을파지보(茄乙坡知堡)에 들어있다. ㉔읍지에는 용기봉(龍騎峰)으로 되어있다.) · 송봉(松峰)(비국등록에는 토지봉(兔知峰)으로 되어있다. 구가을파지보(舊茄乙坡知堡)에 속한다.) · 을산덕(乙山德)(㉔비국등록에는 기림봉(起林峰)으로 되어있다. 자작구비보(自作仇非堡)에 속한다.) · 용봉(龍峰)(㉔비국등록에는 십팔봉(十八峰)으로 되어있다. 어면보(魚面堡)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어면보의 용봉봉수까지만 봉화가 닿는 것은 뜻이 없을 듯하고, 용봉과 서로(西路)의 봉화가 닿는 강계(江界)의 여둔봉대(餘屯烽臺)는 지형(地形)이 대등하니, 장차 통봉(通烽)한다면 통군정봉수(統軍亭烽燧)와 고정주봉수(古靜州烽燧)의 예(例)와 같아질 것인데, 다만 산세(山勢)가 거듭 겹친다 하여 통할 수 없겠는가?]

◇ 제2거(第二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천림산(天臨山)〔(㉟) 《여람(輿覽)》에는 천천현(穿川峴)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備局謄錄)》에는 천산(穿山)으로 되어있다. 광주(廣州)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석성산(石城山)〔(㉟)여람에는 보개산(寶蓋山)으로 되어있다. 용인(龍仁)에 있다.〕

건지산(巾之山)〔죽산(竹山)에 있다.〕

망이성(望夷城)〔(㉟)읍지(邑誌)에는 망이산(望耳山)으로 되어있다. 충주(忠州)에 있다. 이하는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소관이다.〕

가섭산(加葉山)〔가섭산(加葉山)으로도 쓴다. 음성(陰城)에 있다.〕

마산(馬山)〔충주에 있다.〕

심항(心項)〔(㉟)비국등록에는 심사항(心士項)으로 되어있다.〕

오현(吾峴)〔(㉟)비국등록에는 오치(吾峙)로 되어있다. 청풍(淸風)에 있다.〕

소이산(所伊山)〔(㉟)비국등록에는 금이산(金伊山)으로 되어있다. 단양(丹陽)에 있다.〕

죽령산(竹嶺山)〔순흥(順興)에 있다. 이하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의 소관이다.〕

망전산(望前山)〔풍기(豊基)에 있다.〕

성내산(城內山)〔영천(榮川)에 있다.〕

사랑당(沙郎堂)〔순흥에 있다.〕

당북산(堂北山)〔안동(安東)에 있다.〕

용점산(龍岾山)〔봉화(奉化)에 있다.〕

창팔래산(昌八來山)〔(㉟)비국등록에는 창입래산(昌入來山)으로 되어있다. 영천에 있다.〕

녹전산(祿轉山)〔예안(禮安)에 있다.〕

개목산(開目山)〔안동에 있다.〕

봉지산(峰枝山)〔(㉟)여람에는 봉지산(烽枝山)로 되어있다.〕

감곡산(甘谷山) · 마산(馬山)〔의성(義城)에 있다.〕

계란현(鷄卵峴) · 성산(城山) · 대야곡(大也谷) · 승원(繩院) · 승목산(繩木山)〔의흥(義興)에 있다.〕

보지현(浦只峴) · 토을산(吐乙山)〔(㉟)여람에는 토현(吐峴)으로 되어있다.〕

여음동(餘音洞)〔(㉟)여람에는 여질동산(餘叱洞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여해동(餘亥洞)으로 되어있다. 신녕(新寧)에 있다.〕

구토현(仇吐峴)〔영천(永川)에 있다.〕

성산(城山) · 성황당(城隍堂) · 영계(永溪) · 방산(方山) · 주사봉(珠砂峰)〔경주(慶州)에 있다.〕

접포현(蝶布峴)〔(㉟)여람에는 내포점(內布岾)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접포산(蝶布山)으로 되어있다.〕

고위(高位) · 소산(蘇山)〔(㉟)여람에는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부로산(夫老山)〔언양(彦陽)에 있다.〕

위천(渭川)〔(㉔)여람에는 원적산(圓寂山)으로 되어있다. 양산(梁山)에 있다.〕

계명산(鷄鳴山)〔동래(東萊)에 있다.〕

황령산(荒嶺山)〔(㉔)여람에는 황령산(黃嶺山)으로 되어있다. 부산진(釜山鎭)에 속한다. 동남으로 간비오(干飛鳥)와 만난다. 아래에 보인다.〕

귀봉(龜峰)〔(㉔)비국등록에는 석성(石城)으로 되어있다. 다대포진(多大浦鎭)에 속한다.〕

응봉(鷹峰)〔다대포진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동래(東萊)의 간비오(干飛鳥)에서 온다.〕

안동(安東)의 봉지산(峰枝山)〔위에 보인다.〕 신석산(新石山)〔(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신석산(申石山)으로 되어있다.〕 · 약산(藥山) · 신법산(神法山)〔(㉔)여람에는 남각산(南角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각산(角山)으로 되어있다. 진보(眞寶)에 있다.〕 · 광산(廣山)〔영해(寧海)에 있다.〕 · 대소산(大所山) · 별반산(別畔山)〔(㉔)비국등록에는 부반산(副畔山)으로 되어있다. 영덕(盈德)에 있다.〕 · 도리산(桃李山)〔청하(淸河)에 있다.〕 · 오봉(烏峰)〔(㉔)비국등록에는 오산(烏山)으로 되어있다. 흥해(興海)에 있다.〕 · 지을(知乙) · 대동배(大冬背)〔(㉔)여람에는 동을배곶이(冬乙背串)로 되어있다. 영일(迎日)에 있다.〕 · 발산(鉢山)〔장기(長鬐)에 있다.〕 · 뇌성(磊城) · 복길(福吉)〔(㉔)여람에는 복길(卜吉)로 되어있다.〕 · 독산(秃山)〔(㉔)비국등록에는 독촌(秃村)으로 되어있다. 경주(慶州)에 있다.〕 · 하서지(下西知) · 남목(南木)〔(㉔)읍지(邑誌)에는 남옥(南玉)으로 되어있다. 울산(蔚山)에 있다.〕 · 천내(川內) · 가리하산(加里下山)〔(㉔)비국등록에는 가라산(加羅山)으로 되어있다. 읍지에는 가리(加里) · 하산(下山) 두 봉수로 되어있다. 서생포진(西生浦鎭)에 속한다.〕 · 이길(爾吉)〔(㉔)여람에는 시길(示吉)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이길(爾吉)로 되어있다.〕 · 아이(阿爾)〔여람에는 아시포(阿示浦)로 되어있고, 울산(蔚山)에 들어 있으며, 비국등록에는 아미산(峨眉山)으로 되어있다. 기장(機張)에 있다.〕 · 남산(南山) · 간비오(干飛鳥)〔동래(東萊)에 있다. 서쪽으로 황령산(荒嶺山)과 만난다. 위에 보인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거제(巨濟)의 가라산(加羅山)에서 온다.〕

충주(忠州)의 마산(馬山)〔위에 보인다.〕 · 대림성(大林城)〔(㉔)여람에는 대림산(大林山)으로 되어있다.〕 · 주정산(周井山)〔연풍(延豐)에 있다.〕 · 마골치(麻骨峙) · 탄항(炭項)〔문경(聞慶)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의 소관(所管)이다.〕 · 선암(禪巖) · 남산(南山)〔(㉔)여람에는 성산(城山)으로 되어있다. 함창(咸昌)에 있다.〕 · 소산(所山)〔상주(尙州)에 있다.〕 · 서산(西山) · 회룡산(回龍山)〔(㉔)비국등록에는 용문산(龍門山)으로 되어있다.〕 · 소산(所山)〔금산(金山)에 있다.〕 · 성황산(城隍山)〔(㉔)여람에는 감문산(甘文山)으로 되어있다. 개령(開寧)에 있다.〕 · 남산(南山)〔선산(善山)에 있다.〕 · 석고개(石古介) · 건대산(件臺山)〔(㉔)비국등록에는 건대산(件代山)으로 되어있다. 인동(仁同)에 있다.〕 · 박집산(朴執山) · 각산(角山)〔성주(星州)에 있다.〕 · 성산(星山) · 이부로산(伊夫老山) · 망산(望山)〔(㉔)비국등록에는 망봉산(望峰山)으로 되어있다. 고령(高靈)에 있다.〕 · 미송산(彌崇山)〔(㉔)읍지에는 미송산(美崇山)으로 되어있다. 함천(陝川)에 있다.〕 · 미타산(彌他山)〔초계(草溪)에 있다.〕 · 가막산(可幕山)〔의령(宜寧)에 있다.〕 · 파산(巴山)〔(㉔)읍지에는 지고산(指高山)으로 되어있다. 함안(咸安)에 있다.〕 · 가을포(加乙浦)〔(㉔)비국등록에는 가라포(加羅浦)로 되어있다. 진해(鎭海)에 있다. 창원(昌原)의 여포봉수(餘浦烽燧)와 서로 응한다.〕 · 곡산(曲山)〔고성(固城)에 있다.〕 · 천치(天峙)〔(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천왕점(天王帖)으로 되어있다.〕 ·

우산(牛山) · 미륵산(彌勒山) · 가라산(加羅山)[거제(巨濟)에 있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 [이하의 여러 봉수는 본진(本鎭)에서만 받는다.]

- 당포진(唐浦鎭)의 한배곶이(閑背串)[거제(巨濟)에 있다.]
- 조라포진(助羅浦鎭)의 가을곶이(柯乙串)
- 지세포진(知世浦鎭)의 놀일곶이(訥逸串)
- 옥포진(玉浦鎭)의 옥산(玉山)
- 울포진(栗浦鎭)의 별망(別望)[(㉔)비국등록에는 남망산(南望山)으로 되어있다.]
- 이상은 모두 가라산봉수(加羅山烽燧)와 만난다.]

간봉(間烽) [사랑진(蛇梁鎭)에서 온다.]

진주(晉州)의 각산(角山)[아래에 나오는 금산로(錦山路)에 보인다. 읍지에는 실리지 않았다.] · 좌이산(佐耳山)[고성(固城)에 있다.] · 사랑진(蛇梁鎭)의 주봉(主峰) · 우산(牛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 [이하의 두 봉수(烽燧)에서는 외양(外洋)에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진(本鎭)에 알린다.]

가배량진(加背梁鎭)의 별망(別望)[고성(固城)에 있다.]

소비포보(所非浦堡)의 별망(別望)[고성(固城)에 있다.]

간봉(間烽) [천성보(天城堡)에서 일로(一路)로 온다.]

성주(星州)의 각산(角山)[위에 나온 가라산로(加羅山路)에 보인다.] · 마천산(馬川山)[대구(大丘)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의 소관(所管)이다.] · 성산(城山) · 말을응덕(末乙應德)[성주(星州)에 있다.] · 소이산(所伊山)[(㉔)여람에는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현풍(玄風)에 있다.] · 태백산(太白山)[(㉔)여람에는 함산(含山)으로 되어있다. 창녕(昌寧)에 있다.] · 여통(餘通)[영산(靈山)에 있다.] · 소산(所山)[(㉔)비국등록에는 금이산(金伊山)으로 되어있다.] · 안곡산(安谷山)[(㉔)읍지에는 안국산(安國山)으로 되어있다. 칠원(漆原)에 있다.] · 성황당(城隍堂)[창원(昌原)에 있다.] · 고산(高山)[웅천(熊川)에 있다.] · 사화랑(沙火郎) · 천성보(天城堡)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 [사화랑에서 온다.]

진해(鎭海)의 가을포(加乙浦)[위에 나온 가라산로(加羅山路)에 보인다.] · 창원(昌原)의 여포(餘浦)[(㉔)여람에는 여음포(餘音浦)로 되어있다.] · 사화랑(沙火郎)[위에 보인다.]

간봉(間烽) [천성보(天城堡)에서 일로(一路)로 온다.]

영천(永川)의 성황당(城隍堂)[위에 나온 응봉로(鷹峰路)에 보인다.] · 시산(匙山)[하양(河陽)에 있다.] · 성산(城山)[경산(慶山)에 있다.] · 법이산(法伊山)[(㉔)비국등록에는 법이산(法耳山)으로 되어있다. 대구(大丘)에 있다.] · 북산(北山)[(㉔)여람에는 팔조현(八助峴)으로 되어있다. 청도(淸道)에 있다.] · 남산(南山) · 분항(盆項)[밀양(密陽)에 있다.] · 성황(城隍)[(㉔)여람에는 추화산(推火山)으로 되어있다.] · 남산(南山) · 백산(柏山) · 자암(子菴)[(㉔)여람에는 자암산(子巖山)으로 되어있다. 김해(金海)에 있다.] · 산성(山城)[(㉔)여람에는 분산(盆山)으로 되어있다.] · 성화야(省火也)[(㉔)여람에는 성화례산(省火禮山)으로 되어있다.] · 천성보(天城堡)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 [남해(南海)의 금산(錦山)에서 온다.]

충주(忠州)의 망이성(望夷城)(위에 나온 가라산로(加羅山路)에 보인다.) · 소흘산(所屹山)(㉔여람에는 소을산(所乙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소이산(所伊山)으로 되어있다. 진천(鎭川)에 있다.) · 거질대산(巨叱大山)(청주(淸州)에 있다.) · 소이산(所伊山)(문의(文義)에 있다.) · 계족산(鷄足山)(회덕(懷德)에 있다.) · 환산(環山)(옥천(沃川)에 있다.) · 월이산(月伊山) · 박달라산(朴達羅山)(영동(永同)에 있다.) · 소이산(所伊山)(황간(黃澗)에 있다.) · 놀이항(訥伊項) · 고성산(高城山)(금산(金山)에 있다. 이하는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의 소관(所管)이다.) · 귀산(龜山)(㉔읍지에는 귀성산(龜城山)으로 되어있다. 지례(知禮)에 있다.) · 거말흘산(渠末屹山)(㉔여람에는 거말흘산(渠末屹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거말흘산(渠末屹山)으로 되어있다. 거창(居昌)에 있다.) · 금귀산(金貴山) · 소현산(所峴山)(㉔비국등록에는 소흘산(所屹山)으로 되어있다. 합천(陝川)에 있다.) · 금성산(金城山)(삼가(三嘉)에 있다.) · 입암산(笠巖山)(단성(丹城)에 있다.) · 광제산(廣濟山)(진주(晉州)에 있다.) · 망진(望晉) · 안현산(鞍峴山)(㉔여람에는 안점(鞍帖)으로 되어있다. 사천(泗川)에 있다.) · 각산(角山)(진주(晉州)에 있다. 고성(固城)의 좌이산(佐耳山)과 서로 응한다.) · 대방산(臺防山)(㉔여람에는 대방산(臺方山)으로 되어있다.) · 금산(錦山)(남해(南海)에 있다.) 남해에서 시작한다.(북쪽으로는 대방산봉수로 가고, 서쪽으로는 본현(本縣)의 소을산봉수(所乙山烽燧)로 가서 순천(順天)의 돌산도봉수(突山島烽燧)와 만난다. 제5거(第五炬)에 보인다.)

간봉(間烽) [이하의 여러 봉수는 본읍(本邑) · 본진(本鎭)에서만 받는다.]

- 남해(南海)의 원산(猿山) · 금산(錦山)(위에 보인다.)
- 미조항진(彌助項鎭)의 별봉대(別烽臺) · 금산(錦山)(위에 보인다.)
- 사천(泗川)의 삼천보 별망(三千堡別望)(거제(巨濟)에 있는데, 영등진(永登鎭)과 번갈아 별망을 지키며, 본진(本鎭)에서만 받고 만다.]

◇ 제3거(第三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모악동봉(母嶽東烽) · 해포(海浦)(옛 이름은 봉현(蜂峴)이다. 고양(高陽)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독산(秃山)(옛 이름은 소질달산(所叱達山)이다.) · 대산(大山)(㉔비국등록에는 대모산(大母山)으로 되어있다. 파주(坡州)에 있다.)

도라산(道羅山)(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도라산(都羅山)으로 되어있다. 장단에 있다.)

송악국사당(松嶽國師堂)(개성부(開城府)에 있다.)

고성산(古城山)(금천(金川)에 있다. 이하는 황해병사(黃海兵使)의 소관이다.)

남산(南山)(평산(平山)에 있다.)

봉자산(奉子山) · 독발산(秃鉢山) · 회산(回山)(서흥(瑞興)에 있다.)

소변산(所卞山)(㉔여람에는 소을마산(所乙馬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소마산(所馬山)으로 되어있다.)

- 건지산(巾之山)〔(Ⓜ)여람에는 건지산(乾之山)으로 되어있다. 봉산(鳳山)에 있다.〕
- 고매치(古每峙)〔(Ⓜ)읍지에는 고매치(古梅峙)로 되어있다. 황주(黃州)에 있다. 비국등록에는 중화(中和)에 들어있다.〕
- 천주산(天柱山)·운봉산(雲峰山)〔중화(中和)에 있다. 이하는 평안감사(平安監司)의 소관이다.〕
- 화사산(花寺山)〔(Ⓜ)비국등록에는 화산(花山)으로 되어있다. 평양(平壤)에 있다.〕
- 잡약산(雜藥山)〔(Ⓜ)여람에는 약산(藥山)으로 되어있다.〕
- 부산(斧山)·독자산(獨子山)〔순안(順安)에 있다.〕
- 미두산(米豆山)〔영유(永柔)에 있다.〕
- 도연산(都延山)〔(Ⓜ)여람에는 도영산(都迎山)으로 되어있다. 속천에 있다.〕
- 소리산(所里山)〔(Ⓜ)읍지에는 소니산(小尼山)으로 되어있다. 안주에 있다.〕
- 오도산(吾道山)〔(Ⓜ)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오도산(悟道山)으로 되어있다.〕
- 구청산(舊靑山)〔신청산(新靑山)은 수로(水路)의 봉수에 알린다. 제4거(第四炬)에 보인다.〕
- 병온산(竝溫山)〔박천(博川)에 있다.〕
- 동을랑산(冬乙郎山)〔가산(嘉山)에 있다.〕
- 칠악산(七嶽山)〔(Ⓜ)여람에는 칠악산(漆嶽山)으로 되어있다. 정주(定州)에 있다.〕
- 마산(馬山)·구령산(仇寧山)·소곳이(所串)〔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소산(所山)으로 되어있다. 괵산(郭山)에 있다.〕
- 송족산(松足山)〔(Ⓜ)읍지에는 통경산(通京山)으로 되어있다.〕
- 서망일봉(西望日峰)〔선천(宣川)에 있다.〕
- 원산(圓山)〔일명 두리산(豆里山)이다.〕
- 학현(鶴峴)·옹골산(熊骨山)〔(Ⓜ)읍지에는 운암산(雲暗山)으로 되어있다. 철산(鐵山)에 있다.〕
- 증봉(甞峰)〔일명 장화산(長化山)이다. 비국등록에는 견봉(甄峰)으로 되어있다.〕
- 용골산(龍骨山)〔일명 용호산(龍虎山)이다. 용천(龍川)에 있다.〕
- 갈산(葛山)〔인산진(麟山鎭)에 속한다. 의주(義州)에 있다.〕
- 백마산(白馬山)·통군정(統軍亭)〔본부(本府) 고정주(古靜州)의 해로(海路)의 봉수와 만난다. 제4거에 보인다.〕
- 석계(石階)〔건천보(乾川堡)에 속한다.〕
- 금동(金洞)〔(Ⓜ)여람에는 수구(水口)로 되어있다. 수구진(水口鎭)에 속한다.〕
- 부개(浮箇)〔(Ⓜ)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부동(浮洞)으로 되어있다. 옥강진(玉江鎭)에 속한다.〕
- 금동(金洞)〔(Ⓜ)여람에는 금동전동(金同田洞)으로 되어있다. 방산진(方山鎭)에 속한다.〕
- 정자산(亭子山)〔청성진(淸城鎭)에 속한다.〕
- 노토탄(老土灘)〔청수진(淸水鎭)에 속한다.〕
- 전왕구비(田往仇非)〔구령진(仇寧鎭)에 속한다. 삭주(朔州)에 있다.〕
- 권적암(權狄巖)〔구령진에 있다.〕

이봉산(二峰山)〔㉔여람에는 갑암(甲巖)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일봉산(一峰山)으로 되어있다. 갑암보(甲巖堡)에 속한다. 창성(昌城)에 있다.〕

운두리산(雲頭里山)〔운두리보(雲頭里堡)에 속한다.〕

선두동(船豆洞)〔㉔여람에는 묘동(廟洞)으로 되어있다. 묘동보(廟洞堡)에 속한다.〕

어정탄(於汀灘)〔어정보(於汀堡)에 속한다.〕

서가동(徐加洞)〔㉔여람에는 서개동(徐介洞)으로 되어있고, 읍지에는 서가동(徐哥洞)으로 되어있다. 창주진(昌洲鎭)에 속한다.〕

고림성(古林城)〔대길호리보(大吉號里堡)에 속한다.〕

소근고개(小斤古介)〔소길호리보(小吉號里堡)에 속한다. 벽동(碧潼)에 있다.〕

호조리(胡照里)〔벽단진(碧團鎭)에 있다.〕

추라구비(秋羅仇非)〔㉔여람에는 추구비(楸仇非)로 되어있다. 추구비보(楸仇非堡)에 속한다.〕

금창산(金昌山) · 두음지(豆音只)〔대파아보(大坡兒堡)에 속한다.〕

송림(松林)〔소파아보(小坡兒堡)에 속한다.〕

동연대(東煙臺)〔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광평(廣坪)으로 되어있다. 광평진보(廣坪鎭堡)에 속한다. 위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초산(楚山)에 들어 있다.〕

동연대(東煙臺)〔㉔여람에는 아이(阿耳)로 되어있다. 아이진(阿耳鎭)에 속한다. 초산(楚山)에 있다.〕

고연대(古煙臺)〔산양회진(山羊會鎭)에 속한다.〕

북산(北山) · 합자산(蛤池山) · 동천(銅遷)〔가을현동보(加乙軒洞堡)에 속한다. 위원(渭原)에 있다.〕

신연대(新煙臺) · 남파(南坡)〔㉔여람에는 남파산(南坡山)으로 되어있다. 위 두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직동보(直同堡)에 들어있다.〕

사장구비(舍長仇非)〔오로량진(吾老梁鎭)에 속한다.〕

임리(林里)〔오로량진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강계(江界)에 들어있다.〕

봉천대(奉天臺)〔고산리진(高山里鎭)에 속한다. 강계(江界)에 있다.〕

마시리(馬時里)〔㉔읍지에는 마실리(馬實里)로 되어있다.〕

허린포(許麟浦)〔㉔읍지에는 허린포(許隣浦)로 되어있다.〕

분토(分土)〔㉔위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고산리진(高山里鎭)에 들어있다.〕

주토(朱土)〔벌등진(伐登鎭)에 속한다.〕

재신동(宰臣洞)〔만포진(滿浦鎭)에 속한다.〕

차가대(車加大)〔㉔읍지에는 이차가대(伊車加大)로 되어있다. 비국등록에는 만포진에 들어있다.〕

여둔대(餘屯臺)〔만포진에 속한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아홉 봉수는 강계(江界)에서만 받고 만다.〕

강계(江界)의 허실리(許實里)〔㉔비국등록에는 허실리(虛實里)로 되어있다.〕 · 금마홀(金馬訖)〔㉔여람에는 금마홀(金馬訖)로 되어있다.〕 · 안흥도(安興道)〔추파진(楸坡鎭)에 있다.〕 · 안명수가북(安明守家北)〔종포진

(從浦鎭)에 속한다. 비국등록에는 추파진에 들어있다.] · 이현(梨峴)[상토진(上土鎭)에 속한다.] · 송봉(松峰)
〔㉔비국등록에는 상토진에 들어있다.〕 · 김성민가북(金成民家北)〔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김성민(金成敏)으로 되어있다. 외질괴진(外叱怪鎭)에 속한다.〕 · 오리파(吾里波)[읍지에는 오리파(五里坡)로 되어있다.] · 여둔대(餘屯臺)[위에 보인다.]

간봉(間峰) [이하는 이봉산봉수(二峰山烽燧)에서 일로(一路)로 온다.]

안주(安州)의 청산(靑山) · 성황당(城隍堂) · 심원산(深原山)[박천(博川)에 있다.] · 덕산(德山)[영변(寧邊)에 있다.] · 울고개(栗古介) · 농오리(籠吾里)[태천(泰川)에 있다.] · 고성(姑城)〔㉔여람에는 고성(古城)으로 되어 있다. 귀성(龜城)에 있다.〕 · 소곶이(所串) · 고성두산(古城頭山)[삭주(朔州)에 있다.] · 오리동(吾里洞)〔㉔여람에는 오리동(梧里洞)으로 되어있다.〕 · 건전동(件田洞) · 연평산(延平山) · 이봉산(二峰山)[위에 보인다.]

◇ 제4거(第四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모악서봉(母嶽西峰) · 고봉(高峰)[고양(高陽)에 있다. 이하는 경기감사(京畿監司)의 소관(所管)이다.]

형제봉(兄弟峰)[교하(交河)에 있다.]

덕적산(德積山)〔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풍덕(豐德)에 들어있다.〕

송악성황산(松嶽城隍山)[개성부(開城府)에 있다.]

미라산(彌羅山)[백천(白川)에 있다. 이하는 황해수사(黃海水使)의 소관이다.]

봉재산(鳳在山) · 각산(角山)[연안(延安)에 있다.]

백석산(白石山) · 간월산(看月山) · 정산(定山) · 주지곶이(注之串)〔㉔여람에는 주지곶이(走之串)로 되어있다.〕

성곶이(聲串)[평산에 있다.]

피곶이(皮串)[해주(海州)에 있다.]

용매(龍媒) · 연평도(延坪島) · 수압도(睡鴨島) · 남산(南山) · 화산(花山) · 사곶이(沙串)〔㉔여람에는 사포곶이(沙浦串)로 되어있다.〕

식대산(食大山)[강령(康翎)에 있다.]

견라산(堅羅山) · 구월산(九月山) · 추치(推峙) · 탄항(炭項)[웅진(甕津)에 있다.]

검물여(檢勿餘)〔㉔여람에는 검물여산(今勿餘山)으로 되어있다. 소강진(所江鎭)에 속한다.〕

대점(大帖)〔㉔읍지(邑誌)에는 남산(南山)으로 되어있다.〕

개룡산(開龍山) · 대곶이(大串)〔㉔여람에는 대량곶이(大梁串)로 되어있다. 장연(長淵)에 있다.〕

청석(淸石)〔㉔여람에는 청석산(靑石山)으로 되어있다.〕

미라산(彌羅山) · 송독(松嶽) · 올곶이(兀串) · 고리곶이(古里串)[풍천에 있다.]

소산(所山) · 건지산(巾之山)〔㉔여람에는 건지산(乾只山)으로 되어있다. 은울(殷栗)에 있다.〕

감적산(甘積山)[안악(安岳)에 있다.]

금복지(今卜只)〔㉟여람과 비국등록읍지에 모두 금음복산(今音卜山)으로 되어있다. 장련(長連)에 있다.〕

우산(牛山)〔삼화(三和)에 있다. 이하는 삼화방어사(三和防禦使)의 소관이다.〕

소산(所山)〔용강(龍岡)에 있다.〕

조사지(漕士池)〔㉟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조사지(曹士池)로 되어있다. 함중(咸從)에 있다.〕

오곶이(吾串) · 토산(兎山)〔증산(甞山)에 있다.〕

철화(鐵和)〔평양(平壤)에 있다.〕

마항(馬項) · 불곡(佛谷)〔㉟읍지에는 석북(石北)으로 되어있다.〕

대선곶이(大船串)〔순안(順安)에 있다.〕

소산(所山)〔㉟읍지에는 와룡산(臥龍山)으로 되어있다. 영유(永柔)에 있다.〕

여을외(餘乙外)〔㉟비국등록에는 여외포(餘外浦)로 되어있다. 숙천(肅川)에 있다.〕

식포(息浦) · 동을랑산(冬乙郎山)〔㉟읍지에는 노강(老江)으로 되어있다. 안주(安州)에 있다.〕

호혈(虎穴) · 사읍동음(沙邑冬音)〔정주(定州)에 있다. 이하는 선천방어사(宣川防禦使)의 소관이다.〕

사음산(舍音山) · 자성산(慈聖山) · 진해곶이(鎭海串)〔㉟비국등록에는 진해곶이(陳海串)로 되어있다.〕

도치곶이(都致串) · 방축포(防築浦)〔곽산에 있다.〕

청암산(靑菴山)〔㉟비국등록에는 청암산(靑巖山)으로 되어있다.〕

해안(海岸)〔선천(宣川)에 있다.〕

동소곶이산(東所串山) · 백량산(白梁山)〔㉟읍지에는 백량산(柏梁山)으로 되어있다. 철산(鐵山)에 있다.〕

취가산(鷺家山) · 소곶이산(所串山) · 석을곶이(串)〔용천에 있다.〕

소위포(少爲浦)〔㉟여람에는 사위포(沙爲浦)로 되어있다.〕

진곶이(辰串)〔미곶이진(彌串鎭)에 속한다.〕

용안산(龍眼山)〔용천에 있다.〕

우리암(于里巖)〔㉟비국등록에는 우음산암(于音山巖)으로 되어있다. 양하진(楊下鎭)에 속한다. 의주(義州)에 있다.〕

기이성(岐伊城)〔㉟비국등록에는 기리산(岐里山)으로 되어있다. 인산진(麟山鎭)에 속한다.〕

고정주(古靜州)〔본주(本州)의 통군정(統軍亭)에서 육로(陸路)의 봉수와 만난다. 제3거(第三炬)에 보인다.〕 초기 지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네 봉수는 본읍(本邑)에서만 받는다.〕

○ 용천(龍川)의 용호봉(龍虎烽) · 용안산(龍眼山)〔위에 보인다.〕

○ 선천(宣川)의 대목산(大睦山) · 동소곶이산(東所串山)〔위에 보인다.〕

○ 곽산(郭山)의 금로곶이(金老串) · 방축포(防築浦)〔위에 보인다.〕

○ 정주의 고당산(古堂山) · 도치곶이(都致串)〔위에 보인다.〕

○ 가산(嘉山)의 고당현(古堂峴) · 사읍동음(沙邑冬音)〔위에 보인다.〕

○ 안주(安州)의 신청산(新靑山)〔구청산(舊靑山)은 육로(陸路)의 봉수에 알린다. 제3거(第三炬)에 보인다.〕 ·

호혈(虎穴)[위에 보인다.]

○ 숙천(肅川)의 마갑산(麻甲山)[(㉟)읍지에서 마천산(摩天山)으로 되어있다.] · 아산(牙山)[(㉟)읍지에는 아산(峨山)으로 되어있다.] · 여을외(餘乙外)[위에 보인다.]

○ 영유(永柔)의 미두산신봉(米豆山新峰) · 소산(所山)[위에 보인다.]

○ 순안(順安)의 금강산(金剛山) · 대선곶이(大船串)[위에 보인다.]

○ 평양(平壤)의 승령산(承令山) · 수화산(秀華山) · 불곡(佛谷)[위에 보인다.]

○ 증산(甞山)의 서산(西山) · 토산(兔山)[위에 보인다.]

○ 강서(江西)의 정림산(正林山) · 함종(咸從)의 굴령산(窟嶺山) · 조사지(漕士池)[위에 보인다.]

○ 용강(龍岡)의 대덕산(大德山) · 소산(所山)[위에 보인다.]

간봉(間峰) [이하의 네 봉수는 병영(兵營)에서만 받는다.]

황주(黃州)의 비파곶이(琵琶串) · 월호산(月呼山)[(㉟)여람에는 월호산(月乎山)으로 되어있다. 안악(安岳)에 있다.] · 소산(所山) · 이현(梨峴) · 감적산(甘積山)[위에 보인다.]

간봉(間峰) [수정 봉수(修井烽燧)는 교동(喬桐)에서 받는다.]

연안(延安)의 각산(角山)[위에 보인다.] · 교동(喬桐)의 수정산(修井山) · 연안(延安)의 간월(看月)[위에 보인다.]

◇ 제5거(第五炬)

다음의 차례로 응하여 온다.

개화산(開花山)[양천(陽川)에 있다. 이하는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소관(所管)이다.]

냉정산(冷井山)[김포(金浦)에 있다.]

남산(南山)[(㉟)여람에는 송악산(松岳山)으로 되어있다. 통진(通津)에 있다.]

강화(江華)의 남산(南山)[이하의 강화유수(江華留守)의 소관이다.]

하음산(河陰山) · 교동(喬桐)의 규산(圭山)[(㉟)여람에는 화개산(華蓋山)으로 되어있다.]

강산(綱山)[(㉟)여람에는 망산(綱山)으로 되어있다. 강화(江華)에 있다.]

진강산(鎭江山) · 대모성산(大母城山) · 수안산(守安山)[통진(通津)에 있다. 이하는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소관이다.]

백석산(白石山)[김포(金浦)에 있다.]

추곶이(柎串)[부평(富平)에 있다.]

성산(城山)[일명 지학산(支鶴山)이다. (㉟)여지고와 읍지에는 모두 문학산(文鶴山)으로 되어있다. 인천(仁川)에 있다.]

정왕산(正往山)[옛 이름은 오질이(吾叱耳)이다. 안산(安山)에 있다. ㄱ 읍지에 “오질이도(吾叱耳島)에서 정왕산으로 옮겼다.” 하였다.]

해운산(海雲山)[남양(南陽)에 있다.]

염불산(念佛山) · 흥천산(興天山)[수원(水原)에 있다.]

괴태곶이(槐台串)[(㉔)여람과 비국등록(備局謄錄)에는 모두 괴태길곶이(槐台吉串)로 되어있다. 양성(陽城)에 있다.]

망해산(望海山)[직산(稷山)에 있다. 이하는 충청병사(忠淸兵使)의 소관이다.]

연암산(燕巖山)[아산(牙山)에 있다.]

대학산(大鶴山)[(㉔)비국등록에는 대계산(大鷄山)으로 되어있다. 천안(天安)에 있다.]

쌍령산(雙嶺山)[공주(公州)에 있다.]

고등산(高登山)[(㉔)여람에는 고등산(高燈山)으로 되어있다.]

월성산(月城山) · 노성산(魯城山)[노성(魯城)에 있다.]

황화대(皇華臺)[은진(恩津)에 있다.]

강경대(江景臺) · 광두원(廣頭院)[용안(龍安)에 있다. 이하는 전라우수사(全羅右水使)의 소관이다.]

소방산(所防山)[(㉔)여람과 비국등록에는 모두 소방산(所方山)으로 되어있다. 함열(咸悅)에 있다.]

불지산(佛智山)[임피(臨皮)에 있다.]

오성산(五聖山) · 화산(花山)[(㉔)읍지에는 의송산(宜松山)으로 되어있다. 옥구(沃溝)에 있다. 또 서천(舒川)의 운은산봉수(雲銀山烽隧)와 만난다.]

계화리(界火里)[(㉔)읍지에는 계화도(界火島)로 되어있다. 부안(扶安)에 있다.]

점방산(占方山) · 월고리(月古里) · 소응포(所應浦)[무장(茂長)에 있다.]

고리포(古里浦) · 홍농산(弘農山)[영광(靈光)에 있다.]

고도도(古道島)[(㉔)여람에는 고도도(高道島)로 되어있다.]

차음산(次音山) · 해제(海際)[함평(咸平)에 있다.]

웅산(瓮山) · 고림산(高林山)[다경포진(多慶浦鎭)에 속한다. 무안(務安)에 있다. (㉔)비국등록에는 나주(羅州)에 들어있고, 직관고(職官考)에는 다경포진이 영광(靈光)에 들어있다.]

유달산(鎭達山)[목포진(木浦鎭)에 속한다.]

군산(群山)[나주(羅州)에 있다.]

황원성(黃原城)[해남(海南)에 있다.]

점찰산(僉察山)[(㉔)여람에는 점찰산(占察山)으로 되어있다. 진도(珍島)에 있다.]

여귀산(女貴山) · 관두산(館頭山)[해남(海南)에 있다.]

달마산(達摩山)[일명 갈두산(葛頭山)이다. (㉔)읍지에는 달마산(達摩山)으로 되어있고, 비국등록에는 달모산(達矛山)으로 되어있고, 또 갈두봉수(葛頭烽隧)가 있다. 영암(靈巖)에 있다.]

완도(莞島)[강진(康津)에 있다.]

좌곡산(佐谷山) · 원포(垣浦)[(㉔)여람에는 남원포(南垣浦)로 되어있다.] · 천관산(天冠山)[장흥(長興)에 있다. 이하는 전라좌수사(全羅左水使)의 소관이다.]

전일산(全日山) · 장기산(帳機山)[흥양(興陽)에 있다. 이하의 세 봉수가 비국등록에는 모두 순천(順天)에 들어 있다.]

천등산(天燈山)〔㉔여람에는 천등산(天燈山)으로 되어있다.〕

마북산(馬北山) · 팔전산(八田山)〔㉔여람과 읍지에는 모두 팔전산(八顛山)으로 되어있다.〕

백야곶이(白也串)(순천(順天)에 있다.)

돌산도(突山島)(방답진(防踏鎭)에 속한다. 남해(南海)의 소흘산봉수(所屹山烽隧)와 만난다. 제2거(第二炬)에 보인다.) 시작 기점이다.

간봉(間烽)〔이하의 아홉 봉수는 본읍(本邑)에서만 받는다.〕

○ 순천(順天)의 성황당(城隍堂) · 광양(光陽)의 건대산(件對山)〔㉔여람에는 건대산(件臺山)으로 되어있다.〕 · 순천(順天)의 진례산(進禮山) · 돌산도(突山島)(위에 보인다.)

○ 흥양(興陽)의 수덕산(蓆德山)〔㉔읍지에는 수덕산(愁德山)으로 되어있다.〕 · 장기산(帳機山)(위에 보인다.)

○ 강진(康津)의 수인산(修仁山) · 장흥(長興)의 억불산(億佛山) · 전일산(全日山)(위에 보인다.)

○ 보성(寶城)의 진흥산(眞興山)〔㉔읍지에는 정흥산(正興山)으로 되어있다.〕 · 전일산(全日山)(위에 보인다.)

○ 진도(珍島)의 굴라포(屈羅浦) · 여귀산(女貴山)(위에 보인다.)

○ 진도(珍島)의 상당곶이(上堂串) · 여귀산(女貴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옥구(沃溝)의 화산봉수(花山烽隧)에서 일로(一路)로 온다.〕

양성(陽城)의 괴태곶이(塊苔串)(위에 보인다.) · 창택곶이(倉宅串)(면천(沔川)에 있다. 이하는 충청수사(忠淸水使)의 소관이다.) · 고산(高山)(당진(唐津)에 있다.) · 안국산(安國山)(해미(海美)에 있다.) · 태안(泰安)의 주산(主山)〔㉔비국등록에는 서산(瑞山)의 주산(主山)으로 되어있다.〕 · 백화산(白華山) · 도비산(島飛山)〔㉔여람에는 도비산(都飛山)으로 되어있다. 서산(瑞山)에 있다.〕 · 고구(高丘)(홍주(洪州)에 있다.) · 고산(高山)(결성(結城)에 있다.) · 흥양산(興陽山)(홍주(洪州)에 있다.) · 조침산(助侵山)(보령(保寧)에 있다.) · 옥미봉(玉眉峰)(남포(藍浦)에 있다.) · 칠지산(漆枝山)(비인(庇仁)에 있다.) · 운은산(雲銀山)(서천(舒川)에 있다.) · 옥구(沃溝)의 화산(花山)(위에 보인다.)

간봉(間烽)〔이하의 여러 봉수는 특별히 설치되었다.〕

강화(江華)의 진망산(鎭望山)(위에 보인다.) · 말질도(末叱島) · 보음도(浦音島) · 장봉도(長烽島)(수영(水營) 남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시작 기점이다.

양성지가 이르기, “강계(江界)는 산 바깥에 끼어 있으므로, 큰 적(敵)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성이 포위 당하여 구원이 끊어질 것이니, 매우 염려스럽다. 부의 남쪽에 있는 적유령(狄踰嶺)은 참으로 남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봉화를 두지 않고 다만 강변에서 시작하여 의주로만 가므로 두루 알 수 없을 듯하니, 마땅히 연대(煙臺)를 더 두어 적유령을 거쳐 희천을 지나 영변의 봉화와 서로 응하게 해야 하겠다.” 하였다.

유성룡이 이르기, “중국지방은 요동으로부터 서쪽으로 연대를 높이 쌓고 참호를 깊이 파되 5리나 10리 사이를 두고 끊임없이 잇달았으므로, 오랑캐(虜)의 군사가 경도에 가까이 오는 것을 모두 미리 알아서 중도에서 저지하여 요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대의 둔보(墩堡)와 변경의 성지의 제도가 다 형세를 이루지 못하였다. 전에 고산리첨사(高山里僉使) 김응서(金應瑞)가 벽돌을 구워 연대 두 곳을 높이 만들었는데, 이제 까지도 튼튼하므로, 강변 사람들이 믿고 든든하게 여기니, 이제 형세가 급한 곳을 살펴서 고쳐 쌓거나 새로

만들어, 형세가 연락되어 의주까지 도달하게 해야 하겠다. 그러면 변방의 형세가 절로 튼튼해질 것이다.” 하였다.

김석주가 이르기를, “강변의 봉구는 만포에서 시작하여 강을 따라 내려가서 의주에 이르러 다시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서 경성에 이르고, 한 가닥은 외질괴(外叱怪) · 상토(上土) · 등공구비(登公仇非) · 이동(梨洞)을 거쳐서 강계에 이르러 그치는데, 이것은 강계로 하여금 강변에 경급(警急)이 있는 것을 알고 만포를 응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신광(神光) · 우현(牛峴)의 여러 진을 새로 만든 것은 이미 내지에 있으며, 또 여러 봉수가 서로 알리는 일이 없어서 경급이 있더라도 미처 전비를 수습하지 못할 걱정이 있을 듯하니, 이것은 제때에 미치도록 조치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다.” 하였다.

이익이 이르기를, “예전 봉수의 제도는 변방에서 안으로 통달하기도 하고, 경성에서 밖으로 통달하기도 하였으니, 도병을 징발하기 위한 것인데, 주유왕(周幽王)이 봉화를 올린 일에서 알 수 있다. 구씨(丘氏)의 《연의[衍義] 구준(邱濬)이 지은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에 홍등(紅燈)의 제도가 있는데, 풍우의 방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방법은 양의 뿔과 물고기의 머리뼈를 불에 녹여 꼭두서니를 물들여서 만드는데, 풍우를 피할 수 있고, 완급의 구별은 다소로 조절한다 하였으니, 그 말이 지극히 옳다. 우리나라는 병자호란 때에 산승을 시켜 뱃부리를 따라 나와서 제도(諸道)에 알리게 하였으니, 그 일이 어찌 아주 다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아. 大東地志 卷十 慶尚道烽隧

竹嶺順興○北準丹陽所伊山

望前山巖基

城內山榮川

沙郎堂順興

堂北山安東

龍帖山奉化

昌八來山榮川

祿轉山禮安

開目山 峯枝山 甘谷山安東

馬山 鷄卵峴 城山 大也谷 蠅院義城

繩木山 甫只峴 吐乙山義興

餘音洞新寧

仇吐峴 城山 城隍堂 永溪方山永川

朱砂峯 蝶布峴 高位山 蘇山慶州

夫老山彦陽

渭川山梁山

鷄鳴山 荒嶺山東萊○東南合于干飛鳥見下

龜峯 鷹峯多大鎮○初起右陸路

(間烽)

新石山西合于峯枝山見上

藥山安東

神法山眞寶

廣山 大所山寧海

別畔山 盈德

桃李山清河

知乙山 烏山興海

大冬背迎日

鉢山 磊城山 福吉長_嶺

禿山 下西知慶州

南木川 川內 加里山蔚山

下山 爾吉西生鎮

阿爾 南山機張

干飛鳥東萊○初起○西合于荒嶺山見上○右沿海○以上五十七處左兵營所管

(間烽)

炭項西準延_嶺之鷄立嶺

禪巖山聞慶

南山咸昌

所山 西山 回龍山尙州

所山金山

城隍山開寧

籃山 石峴善山

件臺山 朴執山仁同

角山 星山 伊夫老山星州

望山高靈

美崇山陝川

彌_拉山草溪

可莫山宜寧

巴山咸安

加乙浦鎭海

曲山 天峙 牛山 彌勒山固城

加羅山巨濟○初起○以上二十六處右兵營所管

(間烽)

高城山金山○西準黃澗之訥伊項

龜山知禮

巨未訖山 金貴山居昌

所峴山陝川

金城山三嘉

笠巖山丹城

廣濟山 望晉山晉州

鞍帖山泗川

角山 臺防山晉州錦山南海○初起○西準本縣所乙山西合于全羅道順天突山島

(間烽)

馬川山大邱○西合于星州角上見上

城山大邱

末應德山星州

所伊山玄風

太白山昌寧

餘通 所山靈山

安谷山漆原

城隍山昌原

高山 沙火郎 天城鎭熊川○初起

(間烽)

匙山河陽○北合于永川城隍堂見上

城山慶山

法伊山大邱

北山 南山清道

盆項 城隍 南山 柏山密陽

子庵山 山城 省火也金海○南準熊川天城鎭見上○以上三十七處右兵營所管

(間烽)

佐耳山固城○西合于晉州角山見上

蛇梁鎮主峯固城○東準本縣牛山見上

餘音浦昌原○西準熊川沙火郎見上○西準鎮海加乙浦見上

所屹山南海○東準本縣錦山○西準順天突山島見上

(權設)

閑背串固城唐浦鎮

柯乙串助羅浦鎮

訥逸串知世浦鎮

玉林山玉浦鎮

登山栗浦堡○右四處巨濟

猿山南海○合于錦山

舊~~望~~非浦別望固城

加背梁別望巨濟

彌助項別望南海○合于錦山

三千堡別望固城○以上十處只報本邑本鎮

共一百三十四處

(元烽三十四 間烽九十 權設十)

大東地志 卷十四 全羅道烽燧

廣頭院龍安北準恩津江景臺

所防山咸悅

佛智山 五聖山臨陂

花山沃溝北準舒川雲銀山

界火島 月古里扶安

所應浦 古里浦茂長

弘農山 古道島 次音山靈光

海際 瓮山咸平

高林山務安

群山羅州

鎭達山務安

黃原海南

僉察山 女貴山珍島

館頭山海南

達摩山靈岩

莞島 佐谷山 垣浦康津○右二十五處右水營所管

天寇山 全日山長興

帳機山 天燈山 馬北山 八嶽山興陽

白也串 突山島順天東準南海所乙山○右八處左水營所管○以上沿海
(權設)

城隍堂順天

件代山光陽

進禮山順天南準突山島

修德山興陽南準張機山

修因山康津

億佛山長興東準全日山

正興寺東峯寶城南準全日山

屈羅浦 上堂津右二處珍島竝東合女貴山

共四十三處

(元烽三十三處權設十處)

大東地志 卷十六 江原道烽燧

割眉峴鐵原南準京畿道永平適骨山

所伊山鐵原

吐氷 松峴 箭川平康

雙嶺 屏風山 城北 所山 峯道只 鐵嶺淮陽北準成鏡道安邊沙峴

○右十一處江原監營所營也

大東地志 卷二十 咸慶道烽燧

沙峴南準淮陽鐵嶺

鶴城山 蛇洞安邊

長德山 所達山德源

天達山文川

熊望山高原

隍峙 德峙永興

王金洞 鼻白山定平

城串 草古臺 倉嶺 執三仇未咸興
 南山洪原
 陸島 佛堂 山城 石耳北青
 眞鳥峯 城門利原
 龜山^ㄱ訖乃 吾羅堆 胡打里端川
 右二十六處南兵營所管
 岐里洞 雙浦嶺古州城津
 場峴 山城 鄉校峴 綠磬古州
 古站峴 項浦洞 北峯明川
 壽萬德 中德 朱村 永康 長坪 羅赤洞 姜德 松谷峴鏡成
 漆田山 九正阪 南峯 黑毛老富寧
 古峴會寧古^ㄴ山
 梨峴 奉德 中峯會寧芑下
 松峯 南峯 雲頭峯 古煙臺 鰲山 吾弄草會寧
 竹苞 北峯 下乙浦會寧亭嶺
 浦項 新岐里鍾城防垣
 烏曷岩 三峯 南峯 北峯鍾城
 長城門 北峯 甫青浦鏡城潼關
 小童巾 松峯 中峯穩城永達
 犬灘 時建穩城
 古城 壓江 坪煙臺穩城柔遠
 射場 坪煙臺 浦項穩城
 美錢 錢江穩城美錢
 長城峴穩城黃拓坡
 中峯 馬乳慶源
 獐項 城上康源訓戒
 厚訓 南山慶源
 東林慶源安原
 水河慶源乾原
 件加堆 伯顏慶源阿山
 東峯慶源阿吾地
 西峯 浦項 望德慶興
 屈申浦 豆里山慶興撫夷

南山慶源造山

牛岩慶源西水羅○初起

○右七十五處北兵營所管

(間烽)

琥珀德茂山巒山東合雲頭峯見上

大岩茂山巒山

西峴茂山梁永萬洞

錚峴 南嶺茂山○初起

○者羅耳南合石耳見上

沙乙耳 梨洞北青

○厚致嶺南合梨洞見上

虛火耳 馬底嶺北青

石耳 牛頭嶺 南峯 伊間甲山

阿間甲山同仁

所里德甲山雲龍

何方金德甲山惠山

水氷洞三水

西峯三水仁遮外

家南峯 西峯三水羅暖

甕洞三水芑坡知

松峯 新峯三水舊芑坡知

○遮山鏡城魚游澗

下峯鏡城吾村古峯鍾城溫

松峯鏡城寶化

東峯鏡城森右五處本鎮初起

○崔世洞吉州西北

東山 高峯 西山右西北○初起

(權設)

進堡慶源準源水汀

金迪谷 小白山 皮德 回仲洞鍾城右報行營

共一百四十處

(元烽一百一處間烽三十四處權設五處)

大東地志 卷四 京畿道烽燧

峨嵋山楊州西準京都木覓山第一炬

汗伊山楊州

苐邑峴 禿峴抱川

彌老谷 適骨山永平北準鐵原割尾峴

○天臨山廣州北準本覓山第二炬

石城山龍仁巾之山竹山南準忠州望夷山

○母岳東所京都東南準木覓山第三炬

漣浦 禿山高陽

大山坡州

都羅山長湍

松岳國師堂開城北準金川古城山

○母岳西所東南準木覓山第四炬

高峯高陽

兄弟峯交河

德積山 松岳城隍堂西準白川彌羅山

○右十八處京畿監營所管○母岳二所不入

○開花山陽川東準木覓山第五炬

冷井山金浦

南山通津○右三處統禦營所管

南山 河陰山江華

華蓋山喬桐

鎮江山 大母山 江華

○右五處鎮撫營所管

守安山通津

白石山金浦

柎串富平

城山仁川

正往山安山

海雲山 念佛山南陽

興天山水原

槐台串陽城東準稷山望海山西準沔川倉宅串

○右九處統禦營所管

(權設)

建達山西準興天山

案山水原

望山江華北準華蓋山

未島 曳音島 長峯島喬桐○初起

修井山喬桐北準延安角山

共四十二處

(元烽三十五處權設七處)

경기도 한성부

木覓山自東至西凡五所○第一所直報兵曹○詳烽燧

毋岳東所兩西陸路

西所兩西水路

경기도 수원부

興天山西南八十里

建達山西南三十里

案山府東城

경기도 광주부

天臨山一云月川峴西三十里

경기도 개성부

國師堂 城隍堂右二處在松岳山上

德積山南二十里

경기도 강화부

南山府南

河陰山西二十里

望山西南二十里

鎮江山西南三十里

大母山南三十里

大東地志 卷六 忠清道烽隧

望夷山忠州北準竹山巾之山

迦葉山陰城

馬山 心項山忠州

衣峴清風

所伊山丹陽南準順興竹山

(間烽)

大林山忠州合于馬山

周井山延_崇

鷄立_嶺延_崇東準聞慶炭項

(間烽)

所屹山鎮川北合望夷山見上

巨大_嶺清州

所伊山文義

鷄足山懷德

環山 月伊山沃川

朴達山永同

所伊山 訥伊項黃澗東準金山高城山

(元烽)

望海山稷山西準陽城稷台串

燕岩山牙山

大鶴山天安

雙_嶺 高登山 月城山公州

魯城山魯城

皇華臺 江景臺恩津南準龍安廣頭院

○右二十七處兵營所管

(間烽)

倉宅串沔川東北準陽城稷台串

高山唐津

安國山海美

北山瑞山

白華山泰安

都飛山瑞山

高邱城山洪州

高山結城

興陽串洪州

助侵山保寧

玉眉峯藍浦

漆枝山庇仁

雲銀山舒川南準沃溝花山

○右沿海十三處水營所管

(權設)

望海亭水營

元山島 外煙島 於青島洪州

○右四處只報水營

共四十四處

(元烽十五處間烽二十五處權設四處)

大東地志 卷十八 黃海道烽燧

古城山金川南準開城松岳國師堂○陸路

南山 奉子山 禿鉢山平山

回山 所_ナ山瑞興

巾之山鳳山

古每峙 天柱山黃州北準中和雲峯山右九處兵營所管

○彌羅山東準開城松岳城隍堂○變路

鳳在山白州

角山 白石山 看月山 定山 注之串延安

聲串平山

皮串 龍媒島 水鴨島 延平島海州

九月里 密峙康翎

炭項 檢勿餘 大帖 開龍山瓮津

大串 青石山 彌羅山 松燾 兀串長淵

古里串 所_ナ山_ナ川

乾止山殷栗

今_ナ只長連北準三和牛山右二十七處水營所管

(權設)

甘積山西準今卜只見上

梨峴 所山 月呼山安岳

琵琶串黃州右只報兵營

(權設)

堅羅山南準九月里見上

食大山康翎

沙串 花山 南山海州 右只報監營

共四十六處

(元烽三十六處權設十處)

大東地志의 平安道 烽隧

1. 平壤

畫寺山南二十六里

雜藥山西十四里

斧山北三十里右陸路

鐵和西一百二十里甌山界海邊

馬項西一百五里

佛谷山西北一百里右水路

秀華山西七十里

承令山西三十里右間烽只報巡營

2. 中和

雲峯山西三里

3. 咸從

漕士池西二十三里

吾串西北二十里

窟嶺山東五里

4. 龍岡

所山西三十里

大德山只報本邑

5. 甑山

甑山西十四里

西山只報本邑

6. 順安

獨子山西二十里

大船串鎭里面海邊

西金剛山西北二十里報本邑

7. 江西

正林山西十里只報本邑

8. 安州

烽燧所里山南四十五里

悟道山南二十里

舊青山西二十里

冬乙郎山西六十里

虎穴西四十里右水路

城_舊堂東五里間烽

新青山西十五里右二處只報本府

9. 肅川

烽燧都延山南二十里

餘乙外西十五里

息浦西十五里

牙山西三十里

麻甲山西十里只準本府

10. 永柔

烽燧臥龍山一云所山見上

米豆山見上

米豆山新烽

11. 三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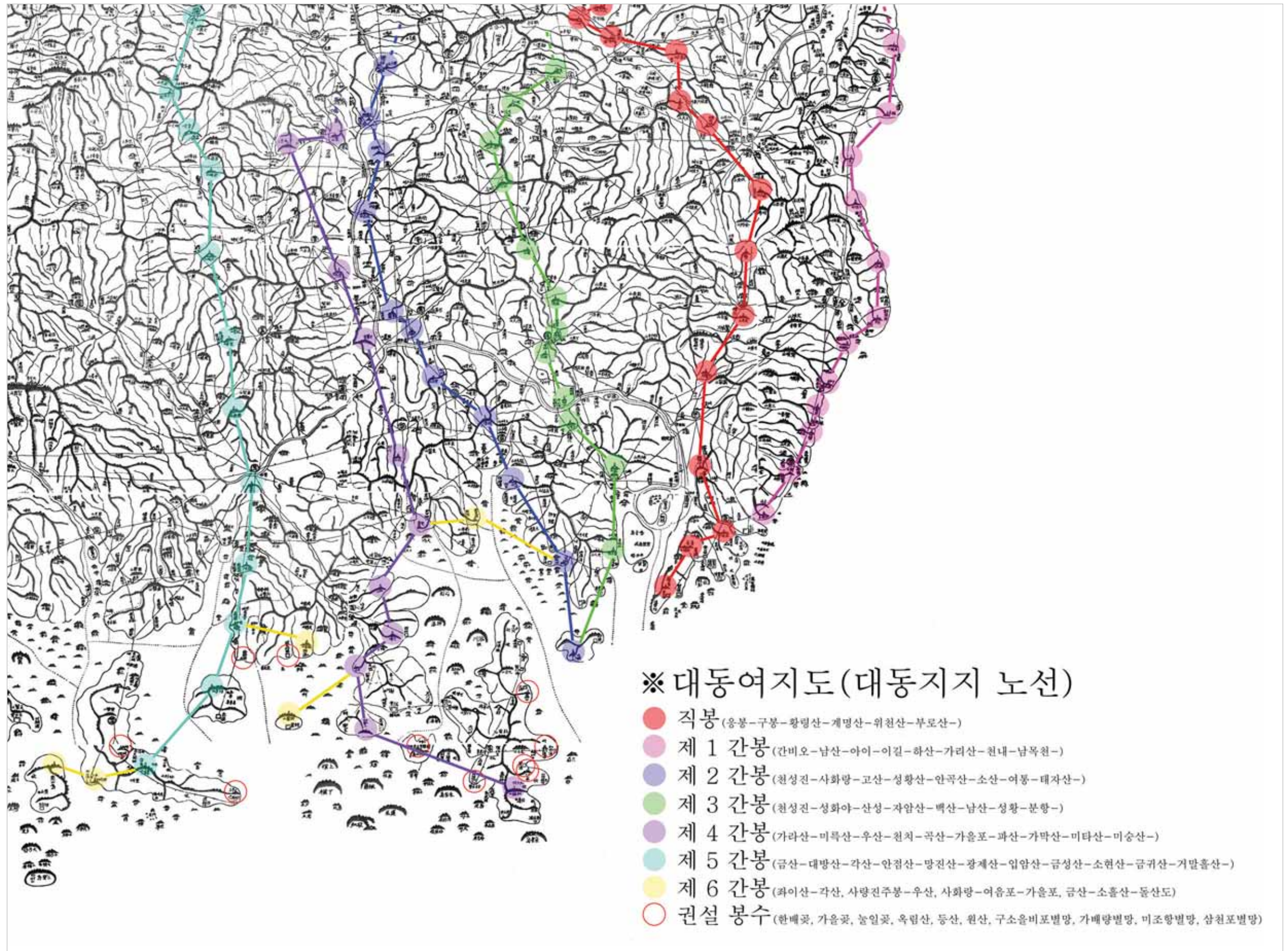
牛山見上

大堂頭山西四十里海邊海望間烽

【그림 18】 조선시대 봉수망(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재정리)



【그림 19】 대동여지도의 봉수노선



【그림 20】 청구도의 봉수노선



5. 봉수 비치물목

조선의 봉수제는 평상시 매일 이른 시간 각 도 극변초면의 봉수에서 1거의 거화를 시행토록 운영되었다. 이렇게 거화된 봉수는 점차 육지내륙의 내지봉수를 거쳐 당일 초저녁이면 최종 경봉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봉수제를 운영하기 위한 봉수대에는 각종 봉수시설과 비치물목을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용도별로 각종 봉수시설과 그 비치물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거화시설품

晝煙夜火의 봉수제에서 매일 1거의 炬火를 위한 각종 施設과 材料 등의 비품은 각 봉수마다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거화재료는 1회용 소모성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를 갖추어 놓지 않으면 봉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봉수의 거화를 위한 시설과 비치물목은 약 80여 종의 각종 물목에 대한 명칭과 수량·단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 炬火施設은 대부분 1개소 내지 5개소의 연대·연굴·화덕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외에 별도로 망보는 시설이었던 望德을 1개소씩 갖추고 있었다. 이는 매일 앞쪽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다음 봉수로 전하기 위한 1거의 거화를 위해 망을 보는 수직은 각 봉수마다 있었기 때문이다.

○ 炬火備品은 각종 거화재료를 바탕으로 불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품이다. 여기에는 부싷돌(火石)·부쇠(火鐵)·부쇠돌(火鐵石) 등 7종의 비품이 확인된다. 이중 부쇠는 8기의 봉수에서 1개 내지 2개 혹은 5개씩 갖추고 있었던 필수 거화비품이었다. 화약심지(火繩)는 6기의 봉수에서 1개 내지 2개 혹은 5개씩 갖추고 있었는데, 이는 봉수마다 鳥銃·三穴銃 등의 화기류를 비치하고 있었기에 거화 외에 방호에 필수적인 비품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용도상 불씨를 담아두는 용기였던 (種)火盆도 일부 봉수에서 확인된다.

○ 炬火材料는 25종의 각종 재료가 확인된다. 여기에는 싸리나무(柎)·소나무(松)·삼(麻)·산솔갱이·떨나무(積柴·柴木)·쑥(艾)·풀(草) 외에 말똥(馬糞)이나 소똥(牛糞)과 석회(灰)·당겨(粗糖)·가는 모래(細沙) 등 거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이중 싸리나무·산솔갱이·떨나무·쑥·풀 등은 봉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지만, 말똥이나 소똥과 灰·당겨·가는 모래 등은 주위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었다.

이들 재료들은 봉수군이 켜를 서기 위해 봉수로 가기 전 비번 시 틈틈이 민가에서 준비하였다가 운반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산을 오르내리면서 운반하여야 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거화재료는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소나무로서 8기의 봉수에서 확인되는 (明)松炬이다. 이외 소량이지만 가는 모래·쭉·풀·삼해(麻紐炬)·산솔갱이(生松)나 산솔갱이 가지(生松枝)·土木 등이 보조원료로서 사용되었다.

거화재료의 수량은 대부분 5단위이다. 이는 조선의 봉수제가 5炬를 근간으로 평화 시의 1거 외에 비상 시 5거를 위한 거화재료를 상시적으로 비축해 놓고 있어야만 했다.

(2) 방호시설품

봉수제가 운영되던 조선시대에 봉수는 그 자체가 군사통신시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군사요새지였다. 따라서 자체방호나 방화에 필요한 각종 무기와 비품을 갖추고 있었다. 이중 자체방호에 필요한 무기는 중앙은 軍器寺, 지방은 각 진에서 대장(橫看)에 따라 정교하게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군사들의 개인 휴대 군기는 중앙은 병조, 지방은 수령과 절도사가 항상 검열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봉수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방호(화)비품 및 무기는 약 40종이다.

개인 방호비품인 철갑옷(鐵甲褙)·머리가리개(紙俺頭)·방패 등과 무기류인 장전·활(弓子) 등의 궁시류, 조총·삼혈총 등의 화기류, 단창·장창 등의 창류, 고리칼(還刀), 낫(鎌子), 도끼(斧) 등의 각종 무기류와 방호용 투석도구인 수마석·무릉석·무우석·조외석 및 말목·해자말목·활집(弓家)등의 방호시설과 밧줄(條所) 외에 방화비품인 멸화기와 기타 사다리(前梯) 등 용도별로 많은 비품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 비품들 중 편전·조총·고리칼 등 3종의 비품은 비록 봉수마다 수량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봉수에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방호무기였다. 또한, 조총과 고리칼은 조선 후기 모든 봉수에서 비록 수량의 차이는 있지만 봉수군이 켜를 서는 동안 휴대하였던 개인 호신용 무기였다.

모든 봉수에서 보편적으로 비치하고 있었던 장전·조총·고리칼 및 멸화기 등은 비록 소량이지만 수량의 단위가 대부분 다섯 개이다. 이를 통해 조선의 봉수제가 5炬를 근간으로 5인 근무에 적합한 개인 호신용 방호 비품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일부 특수지역의 봉수군들은 개인 휴대무기인 조총을 들고 고리칼을 패용한 채 켜를 섰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봉수 방호시설로서 주위에 무수하게 말목을 두르거나 혹은 해자를 파서 말목을 두르는 등 자체 방어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

(3) 신호전달체계 물품

조선시대의 봉수는 성립 초기 연기와 횃불을 이용한 단순한 신호수단 외에 신호의 비치와 각 봉수마다

연통시설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신호전달체계를 강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전기와 달리 주·야간의 시각과 청각에 의지한 다양한 신호전달 수단의 활용이 특징이다. 봉수의 각종 물품을 검토하면 신호전달 수단으로 唐火箭·唐大箭·불화살(火箭) 등의 화살을 비치하고 있었다. 또한, 백기·대기·대백기·상방고초기·오색표기·오색신기 등의 각종 깃발과 북(鼓·小鼓·大鼓), 징(鉦), 팽과리(鐙), 놋팽가리(鎗鐙), 나팔(戰角·竹叭螺) 등 14종의 각종 악기 등이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되어 해당 봉수마다 비치되어 있었다.

신호전달비품을 분석하면

- ① 가장 많이 비치하고 있었던 신호전달비품은 唐火箭·唐大箭·불화살 등의 화살류로, 용도상 주로 시각에 의존하였던 비품이다. 용도는 운무나 우천 등의 기상 여건으로 햇불이나 연기에 의한 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불가할 때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② 白旗·大旗·大白旗 등의 깃발 1면씩은 주로 주간에 시각에 의존하였던 비품이다.
- ③ 북은 크기별로 小鼓·中鼓·大鼓 등으로 구분되어 용도상 청각에 의존하여 사용되었던 악기인 만큼 필요 시 주·야 구분 없이 활용되었을 것이다.
- ④ 재질에 따라 팽가리, 놋팽가리 등으로 구분된 징은 북과 함께 군중에서 신호용으로 많이 쓰인 악기이다.
- ⑤ 재질에 따라 뿔·대나무 등으로 구분된 나팔은 대개 봉수에서 각각 1雙 혹은 1木이나 1箇씩 구비하고 있었던 악기이다.

이상으로 조선 후기에는 봉수마다 신호전달 수단으로 화살·깃발 외에 북, 징, 팽과리, 喇叭 등의 악기를 각 봉수마다 형편에 맞게 비치하고 있었다.

(4) 생활·주거시설품

생활·주거시설은 조선시대 봉수에서 상시로 쉼을 섰던 봉수군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약 35종이 확인된다.

비상 시를 대비하여 봉수마다 1石에서 10石까지 비축하고 있었던 쌀(待變糧米) 외에 밥솥(食鼎)·가마솥(釜子)·수저(匙子)·沙鉢 등의 취사비품과 물통(水曹)·물독(水瓮·水缸)·표주박(瓢子) 등의 음수용 비품 및 난방을 위한 화로(爐口)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근무 시 풍우와 더위와 추위를 피하고 숙식을 하기 위한 기와집(瓦家)·초가집(草家) 외에 곳집(庫舍)·임시가옥(假家)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취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솥은 모든 봉수에서 확인되는 필수비품이었는데, 크기와 용도상 밥솥(食鼎)·작은솥(小鼎)·가마솥(釜子)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 후기 봉수에 상주하면서 교대로 쉰 봉수군 인원은 수저·사발·물독·표주박 등의 개인 생활 비품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이들 비품의 단위가 5인 것을 통해 조선 후기 각 봉수마다 번을 쉰 인원은 5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군의 생활시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와집·초가집 등의 가옥이다. 또한 임시가옥 외에 곳집·장대기와집 등의 시설이 필요하였다. 또한 개인 생활비품 수를 통해 근무인원이 5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가옥의 일부는 봉수의 거화·신호전달·방호(화) 및 생활과 관련한 각종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가. 『輿地圖書』에 나타난 烽燧備置物目

1) 梁山

渭川烽臺一庫 自官門外子方位北距20里 卯坐西向 南自東萊鷄鳴山烽燧40里來準 北至彥陽夫老山烽燧40里距應別將1人 監考1人 軍100名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1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1部 弓子1張 桶兒1 環刀2柄 槍1柄 鳥銃2柄 藥升1 大白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柄 防牌6 鉛丸30箇 火鐵2箇 火石2箇 火桶5 鎌子5柄 條所3件里 稜杖20箇 古月羅15箇 法首木5箇 前梯1 食鼎1坐 待邊糧1石 草席5立 柳器2部 瓢子5 水瓮5坐 盤5立 匙5指 接匙1 竹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 同花注乙5件里 種火盆5坐 滅火器5 水槽6 炬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積柴5訥 土木5訥 煙草5訥 橋注乙1件里 炭5石 灰5石 細沙5石 槽糠5石 草炬50柄 槽桶5 叉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2間 庫舍2間 空石10立 斧子1柄 懸瓢5 釜子1坐 抹木無定數 三穴銃1柄 校子弓1張 掩心1坐 掩頭1坐 紙甲靑1箇 鐵甲靑1 五色表旗5面 鎗鈴1 小鼓1 槓子1坐

2) 三嘉

金城烽(在縣北40里 前望丹城笠巖烽30里 後望陝川所峙烽50里)

煙臺5 煙窟5 火德1 望德1 鳥銃1柄 勝子銃1柄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5部 桶兒5箇 片箭5部 環刀5柄 弓子5 長槍5柄 大旗1面 火藥5兩 火繩1沙里 戰角1 木斧子20箇 鐵斧子1柄 防牌6 鉛丸30箇 火鐵2箇 火桶5 鎌子3柄 條所3巨里 稜杖20箇 古月羅10箇 法首木5 箭梯1 無稜石5訥 同火注乙3 種火盆1坐 排帶木6 滅火器5 水槽6 抹木無數完植 懸瓢子5 斧子1坐 空石5立 草席2立 柳器1部 瓢子5 水瓮5 匙子5指 沙鉢5立 爐口1坐 食鼎1坐 待邊糧米 加入糧米10石 草家2間 假家2間 馬糞5石 牛糞5石 叉5同 草50訥 槽桶5 槽糠5石 細沙5石 灰5石 炭5石 橋注乙1沙里 煙草5訥 吐木5訥 積柴5訥 同煙3柄 炬炬50訥 松炬50訥

나. 『慶尙道邑誌』

1) 咸安

巴山烽燧 在郡南15里 南應鎮海加乙浦 北報宜寧可莫山 相距60里

別將1人 監官1人 望漢1名 烽軍100名 烟臺1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5柄 火箭9柄 片箭5桴 長箭5桴 校子弓5張 環刀5柄 火藥1斤9兩 鉛丸150箇 爐口1坐 食鼎1坐

2) 金山(김천)

高城山烽燧 在郡南10里 南應知禮龜山 相距40里 西報忠清道黃澗訥伊山烽燧 相距30里

烟臺5 烟窟5 火德1 望德1 鳥銃5柄 火箭9箇 唐火箭9箇 長箭5部 片箭5部 校弓子5張 桶兒5箇 環刀5柄 槍5柄 白大旗1面 火藥25兩 火繩5沙里 南飛蓋5部 戰角1箇 火鐵5箇鉛丸150箇 條所5巨里 木斧子25柄 柳筒1 防牌6坐 鎌子3柄 火桶5箇 稜杖25 古道牙25 法首木6 箭梯1 無陵石5訥 東火注乙3 種火盆1 排帶木6 滅火器5 耳藥桶5箇 核子抹木無數完置 懸瓢子5 釜子1坐 空石5立 草席2立 瓢子5 水瓮5 小盤5 匙子5箇 貼匙1竹 沙鉢5立 爐口1坐 食鼎1坐 待邊糧米1石 瓦家6間 牛糞5石 馬糞5石 父草5同 草炬50柄 糟糖5石 炭5石 灰5石 轆注乙1巨里 馬草5同 積柴5訥 柎炬50柄 松炬50柄 同炬3柄 斧鐵子1柄 別將1人 軍人5名 守直
所山烽燧 在郡北29里 來應開寧城隍山 相距10里 北報尙州回龍山 相距40里 什物數爻與高城山烽燧同 別將1人 軍人5名 守直

다. 『獻山誌』(1786년)의 烽燧 備置物目

『獻山誌』「彥陽本縣誌」烽燧什物條

煙臺1 煙窟5 火德1 望德2 火箭9柄 唐火箭9柄 長箭3部 片箭1部 桶兒1箇 槍2柄 火藥 5兩9錢 鉛丸30箇 弓2張 環刀2柄 大白旗1面 火繩1沙里鳥銃2柄 木斧子20柄 藥升1 戰角1 火鐵2箇 防牌6坐 火桶5 米1石 柳器1部 鎌子4柄 條所3巨里 法首木5 前梯1目 井1坐 釜1坐 稜杖20箇 古道羅15箇 草席2立 瓢子5介 水瓮5坐 盤5立 匙5箇 接匙1竹 沙鉢5立 爐口1坐 無稜石5訥 同化注乙3巨里 滅火器5 水槽6 種火盆1 柎炬50柄 排 大木6 松炬50柄 積柴5訥 火因草5訥 土木5訥 橋注乙1巨里 草炬50柄 同炬3柄 炭5石 灰5石 細沙5石 糟糠5石 父5同 馬糞5石 牛糞5石 瓦家4間 斧1柄 槽桶5坐 核子抹木無數完置 三穴銃1柄 空石5立 懸瓢子5箇 俺頭俺身各1部 火綿1 藥升1箇 鉦1面 長槍2柄 五色表旗5面 火鐵石10箇 鼓1坐 柎1坐 生松1訥 黑角弓2張

【표 6】『여지도서』에 나타나 위천·금성봉수대 시설 및 비치물품

1. 거화시설 및 비품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연대	烟臺		1	5	
연굴	烟窟		5	5	
화덕	火德		1	1	
망덕	望德		1	1	
통아	桶兒	筒·分	1	5	
화약	火藥	斤·兩	5	5	
부싷돌	火石	개 箇	2		
부쇠	火鐵	개 箇	2	2	
화통	火桶		5	5	
종화분	種火盆	좌 坐	5	1	
화승	火繩	사리 沙里	1	1	

2. 거화재료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싸리나무해	杻炬	柄·訥	50	50	
배대목	排大木	개 介		6	
당겨	粗糖	석 石	5	5	
소나무해	松炬	병 柄	50	50	
초거	草炬	병 柄	50		
땃나무	積柴	눌 訥	5	5	
풀	草	눌 訥		50	
토목	吐木	눌 訥	5	5	
사를 풀	烟草	눌 訥	5	5	
해	同烟	병 柄	3	3	
탄	炭	석 石	5	5	
석회	灰	석 石	5	5	
가는 모래	細沙	석 石	5	5	
쑥	艾	동 同	5	5	
말똥	馬糞	석 石	5	5	
소똥	牛糞	석 石	5	5	

3. 방호비품 및 무기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교주을	橋(驕)注乙	사리 沙里	1	1	
장전	長箭	부 部	5	5	
편전	片箭	부 部	1	5	
조총	鳥銃	병 柄	2	1	
교궁자	校弓子	장 張	1		
철갑옷	鐵甲■		1		
승자총	勝字銃	병 柄		1	
창	槍	병 柄	1	5	
연환	鉛丸	개 箇	30	30	
활	弓子	장 張	1	5	
환도	還刀	병 柄	2	5	
쇠도끼	鐵斧子	병 柄		1	
방패	防牌	립 立	6	6	
낫	鎌子	병 柄	5	3	
밧줄	條所	거리 巨里	3	3	
법수목	法手木	개 箇	5	5	
사다리	前梯		1	1	
능장	稜杖	개 箇	20	29	
고월라	古月羅	개 箇	15	10	
멸화기	滅火器	건 件	5	5	
도끼	斧子	개 箇	20	20	
말목	抹木		무정수	무정수	
삼혈총	三穴銃	병 柄	1		
머리가리개	俺頭	좌 坐	1		
몸가리개	俺心甲	좌 坐	1		
종이갑옷	紙甲■	건 件	1		
약승	藥升	대 大	1		
무릉석	武陵石	눌 訥	5	5	
화주을	火注乙	건 件	5	3	

4. 신호물품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불화살	火箭	箇·柄	9	9	
당화전	唐火箭	箇·柄	9	9	
대기	大旗	면 面		1	
대백기	大白旗	면 面	1		
뿔나팔	戰角	목 木	1	1	
5색 표기	五色表旗	면 面	5		
작은북	小鼓	면 面	1		
놏광과리	鑪錚	좌 坐	1		

5. 생활시설

용 어	한자어	단 위	위천봉수	금성봉수	비 고
비상용쌀	待變糧米	석 石	1	10	
밥솥	食鼎	좌 坐	1	1	
유기	柳器	부 部	2	1	
물통	水曹	말 抹	6	6	
가마솥	釜子	좌 坐	1	1	
초석	草席	립 立	5	2	
거는 표주박	懸瓢子	개 箇	5	5	
대야	盤	립 立	5		
수저	匙	지 指	5	5	
접시	接匙	죽 竹	1		
사발	沙鉢	립 立	5	5	
노구	爐口	좌 坐	1	1	
물	水瓮	좌 坐	5	5	
횡자	橫子	좌 坐	1		
구유통	槽桶	좌 坐	5	5	
가마니	空石	립 立	10	5	
초가	草家	간 間		2	
가가	假家	간 間		2	
기와집	瓦家	간 間	2		
창고	庫舍	간 間	2		

라. 울산 남목봉수 관련 고문서

- 지정 :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6호(2000년 11월 9일)
- 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746, 峰護寺의 朴好壽 씨 소장
- 내용

- 이 고문서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3호인 주전봉수대의 운영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1858년(철종 9년)~1896년(고종 33년)간의 것으로 모두 11점이며, 한지(韓紙)에 필사(筆寫)한 것이다.

고문서에는 울산부사(蔚山府使)가 박춘복(朴春福)·박명대(朴命大) 부자(父子)에게 내린 주전봉수대 별장(別將) 임명장과, 별장과 인근 동수(洞首)에게 근무를 철저히 하고 군포(軍布)를 잘 징수하라는 전령문(傳令文), 그리고 미포·정자 등 봉수대 인근 마을로부터 군량(軍糧)형식으로 거둔 금전의 내역을 기록한 문서와 울산 부에서 주전봉수대에 내려준 조총 등 무기와 술 등 장비의 목록, 그리고 별장이 이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 문서들이 있다. 이 고문서를 통해 주전봉수대는 수령(守令, 울산부사)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봉수군(烽戍軍)은 봉수를 담당하면서 유사 시에는 적군을 맞아 싸우는 군사(軍士) 역할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수군 역(役)은 봉수대 인근 주민들이 담당하였고, 군량 등 운영경비도 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고문서는 현재 아쉽게도 서목의 일부가 찢겨나가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존 서목에 대해 해제가 이루어진 물목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봉수대의 운영과 실상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거화시설 및 재료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연대 烟臺		1	배대목 排帶木	개(介)	28
연굴 烟窟		1	징 錚	좌(坐)	1
화덕 火德		1	작은북 小鼓	면(面)	1
망덕 望德		1	가는 모래 細沙	석(石)	5
불화살 火箭	개(介)	9	소나무해 松炬	병(柄)	50
당대전 唐大箭	개(介)	9	초거 草炬	병(柄)	50
통아 桶兒	분(分)	9	땃나무 柴木	가리(加里)	5
화약 火藥	근(斤)	2근 13냥	쑥해 叉炬	병(柄)	51
백대기 白大旗	면(面)	1	말똥 馬糞	석(石)	5
연초 煙草	가리(加里)	5	소똥 牛糞	석(石)	5
뿔나팔 戰角		1	참회석 眞灰	석(石)	5
부쇠 火繩	개(介)	2	탄 炭	석(石)	5
부싷돌 火石	개(介)	2	깃발 五方高超旗	면(面)	5
싸리나무해 柎炬	병(柄)	50	당거 糖	석(石)	5

※ 방호물품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큰화살 大箭	개(介)	18	종이갑옷 紙甲衣	건(件)	1
무우석 無隅石	석(石)	5	긴 화살 長箭	부(部)	5
물소뿔활 黑角弓	장(張)	1	짧은 화살 片箭	부(部)	1
삼혈총 三穴銃	병(柄)	1	교자궁 校子弓	장(張)	4
머리가리개 紙掩頭	건(件)	1			

※ 시설 및 무기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조총 鳥銃	병(柄)	5	사다리 前梯		1
접장목 接杖木	개(介)	20	조외석 鳥外石	석(石)	5
활줄 弓條	조(條)	5	높은 다라목 高多羅木	개(介)	15
환도 環刀	병(柄)	5	멸화기 滅火器	건(件)	5
나무도끼 木斧子	개(介)	20	도끼 斧子	좌(坐)	1
방패목 防牌木	립(立)	20	말목 抹木		無數
낫 鎌子	병(柄)	3	긴창 長槍	병(柄)	5
밧줄 條所	거리(巨里)	10	활집 弓家	건(件)	5
긴밧줄 長所	거리(巨里)	10			

※ 생활시설 및 비품

내 용 물	단위	수량	내 용 물	단위	수량
나무통 木桶	좌(坐)	5	수저 匙子	분(分)	7
쌀 米	석(石)	1	접시 接匙	죽(竹)	1
초석 草席	립(立)	2	사발 沙鉢	립(立)	7
공석 空石	립(立)	7	밥솥 食鼎	좌(坐)	1
유기 柳器	면(面)	1	큰독 大甕	좌(坐)	2
가는 새끼줄 細繩	사리(沙里)	1	작은독 小甕	좌(坐)	5
취사목 炊木	가리(加里)	3	장대기와집 將臺瓦家	간(間)	3
휴대용 표주박	립(立)	5	봉군초가 烽直草家	간(間)	3
거는 표주박 懸瓢子	립(立)	5	대나무통 竹桶	개(介)	5
소반 小盤	개(介)	7	말구유 馬槽	좌(坐)	5



IV. 참고자료

1. 참고문헌
2. 참고자료
3. 참고용어

1. 참고문헌

□ 史料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圖經』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東史綱目』
- 『萬機要覽』
- 『備邊司謄錄』
- 『增補文獻備考』
- 『烽隧調査表』
- 『經國大典』
- 『續大典』
- 『大典通編』
- 『各司謄錄』
- 『朝鮮王朝實錄』
- 『練藜室記述』
- 『受教輯錄』
- 『史記』
- 『後漢書』
- 『舊唐書』
- 『唐六典』

□ 地誌書

- 『慶尙道地理志』
- 『世宗實錄』 地理志
- 『慶尙道續撰地理誌』
- 『新增東國輿地勝覽』
- 『東國輿地志』
- 『輿地圖書』
- 『輿圖備志』
- 『大東地志』
- 『湖西邑誌』
- 『獻山誌』
- 『慶尙道邑誌』
- 『嶺南邑誌』
- 『湖南邑誌』
- 『嶠南誌』

□ 古文書

- 『茂山鎮兵馬萬戶晴明日記』
- 『延安兼任新溪縣令五烽燧風變日記』
- 『豐川都護府使書目』
- 『長連縣監陰晴日記』
- 『兎山兼任谷山都護府使陰晴日記』
- 『行藍浦縣監書目』
- 『丹陽郡守書目』
- 『安東大都護府使書目』
- 『開目山烽燧壬辰三月陰晴日記』
- 『開目山烽燧壬辰六月陰晴日記』
- 『開目山烽燧壬辰七月陰晴日記』
- 『開目山烽燧壬辰八月陰晴日記』

- 『開目山烽燧壬辰十二月陰晴日記』
- 『堂北山烽燧壬辰四月陰晴日記』
- 『堂北山烽燧癸巳五月陰晴日記』
- 『堂北山烽燧癸巳九月陰晴日記』
- 『馬山日記甘谷山傳通』
- 『彥陽縣夫老山烽臺瞭望日記』
- 『南牧川烽燧別將書目』
- 『海南縣監牒呈』
- 『南木烽燧別將書目』

□ 古地圖

- 『全羅左道順天古突山鎮地圖』(奎10493)
- 『全羅順天防踏鎮地圖』(奎10510)
- 『順天府地圖』(奎10511)
- 『羅州智島鎮地圖』(奎10491)
- 『靈光荏子鎮地圖』(奎10442)
- 『長興府會寧鎮地圖』(奎10443)
- 『珍島府地圖』(奎10461)
- 『青山鎮地圖』(奎10515)
- 『萬頃縣古群山鎮地圖』(奎10432)
- 『茂長縣地圖』(奎10469)

□ 地圖

- 『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 『海東地圖』
- 『東輿圖』
- 『大東輿地圖』
- 『青邱圖』

- 『朝鮮後期地方地圖』(慶尙道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 『한국의 옛지도』, 1985, 영남대학교박물관.
- 『韓國의 古地圖』, 李燦, 1991, 汎友社.
- 『東輿圖』, 김정호, 2003, 서울대학교 규장각.

□ 學位論文

- 方相鉉, 1976, 『朝鮮前期 通信制度의 研究』, 慶熙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朴世東, 1987, 『朝鮮時代 烽燧制 研究』, 嶺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盧泰允, 1991, 『朝鮮時代 烽燧制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周洪, 2001, 『京畿地域의 烽燧研究』, 祥明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李貴惠, 2001, 『釜山地方의 烽燧臺 研究』,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이상호, 2004, 『조선 후기 울산지역 봉수군에 대한 고찰』,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李喆永, 2006, 『朝鮮時代 沿邊烽燧에 관한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洪性雨, 2007, 『慶南地域 烽燧臺의 構造에 관한 一考察』, 慶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金周洪, 2011, 『朝鮮時代의 內地烽燧』, 忠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研究論文

- 許善道, 1968, 「烽燧」, 『韓國軍制史』, 陸軍本部.
- 孫弘烈, 1975, 「高麗末期의 倭寇」, 『史學志』 第9輯, 檀國大學校 史學會.
- 方相鉉, 1980, 「朝鮮前期의 烽燧制」, 『史學志』 第14輯, 檀國大學校 史學會.
- 리종선, 1985, 「고려시기의 봉수에 대하여」, 『력사과학』 제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許善道, 1985, 「近世朝鮮前期의 烽燧制(上)」, 『韓國學論叢』 第7輯,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南都泳, 1986, 「朝鮮時代 軍事通信組織의 發達」, 『韓國史論』 9, 國史編纂委員會.
- 許善道, 1986, 「近世朝鮮前期의 烽燧(下)」, 『韓國學論叢』 第8輯, 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陳庸玉, 1987, 「봉수제도의 발달」, 『한국전기통신100년사』.
- 윤영섭, 1988, 「리조초기 봉수의 분포」, 『력사과학』 제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李元根, 1988, 「朝鮮 烽燧制度考」, 『蕉雨 黃壽永博士 古稀紀念 美術史學論叢』, 通文館.
- 윤영섭, 1990, 「리조시기의 봉수제도에 대하여」, 『력사과학논문집』 제15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元慶烈, 1991, 「驛站과 烽燧網」, 『大東輿地圖의 研究』, 成地文化社.
- 李元根, 1991, 「烽燧概說」,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下,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 朴相侑, 1994, 「朝鮮時代의 烽燧運營體系와 遺蹟現況」, 『清大史林』 第6輯, 清州大學校史學會.
- 나동욱, 1995, 「강서구 천가동 연대산봉수대 지표조사」, 『博物館研究論集』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 南都泳, 1997, 「馬政과 通信」, 『韓國馬政史』, 마사박물관.
- 신재완, 1999, 「保寧의 烽燧臺」, 『保寧文化』 第8輯, 保寧文化研究會.
- 金周洪, 2001, 「朝鮮時代의 烽燧制」, 『實學思想研究』 19·20, 母岳實學會.
- 金南옥, 2002, 「고려 후기 烽卒의 신분」, 『韓國史學報』 제13호, 高麗史學會.
- 金周洪, 2002, 「慶尙地域의 烽燧(Ⅰ)」, 『聞慶 炭項烽燧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中原文化研究所.
- 金周洪, 2002, 「慶尙地域의 烽燧(Ⅱ)」, 『實學思想研究』 23輯, 母岳實學會.
- 金용욱, 2003, 「조선조 후기의 烽燧制度-해안봉수대를 중심으로-」, 『法學研究』 第44卷 第1號·通卷52號, 釜山大學校 法學研究所.
- 金周洪, 2003, 「울산지역의 봉수」, 『울산관방유적(봉수)』, 울산문화재보존연구회.
- 金周洪, 2003, 「韓國의 沿邊烽燧(Ⅰ)」,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叢書2), 한국성곽연구회.
- 金周洪, 2003, 「海東地圖의 烽燧標記形態 考察」, 『학예지』 제10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나동욱, 2003, 「경남지역의 봉수」, 『울산관방유적(봉수)』, 울산문화재보존연구회.
- 이지우, 2003, 「조선시대 경남지역 烽燧臺의 변천」, 『경남의 역사와 사회 연구』(연구총서Ⅷ),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 임정준, 2003, 「蔚珍地域의 烽燧 調査報告」, 『史香』 창간호, 울진문화원부설 울진역사연구소.
- 金周洪, 2004, 「韓國烽燧의 構造·施設과 地域別 現況 考察」,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叢書 5), 한국성곽연구회.
- 金周洪, 2004, 「韓國의 沿邊烽燧(Ⅱ)」,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金周洪, 2004, 「韓國 沿邊烽燧의 形式分類考(Ⅰ)」, 『實學思想研究』 27輯, 母岳實學會.
- 나동욱, 2004, 「釜山 慶南地域 봉수대의 구조와 시설」,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이지우, 2004, 「朝鮮時代 慶南地域 烽燧臺의 運用實態」, 『加羅文化』 第18輯, 慶南大學校博物館 加羅文化研究所.
- 이철영, 2004, 「천내봉수대의 현황과 보전방안」, 『울산지역 봉수체계와 천내봉수대의 보전방안』,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 車勇杰, 2004, 「한국 봉수의 성격·기능·특징」, 『한국성곽연구회 정기학술대회』(叢書 5), 한국성곽연구회.
- 이철영, 2005, 「조선시대 봉수군의 주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제6호, (사)한국주거학회.

- 김성미, 2006, 「창녕 여통산 봉수대 발굴조사 개보」, 『한국성곽학보』 제9집, 한국성곽학회.
- 이철영, 2006, 「조선시대 연변봉수의 배치형식 및 연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49, 제15권5호, 韓國建築歷史學會.
- 金周洪, 2007, 「韓國 沿邊烽燧의 形式分類考」, 『한국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
- 金周洪, 2007, 「韓國 內地烽燧의 構造·形態 考察」, 『학예지』 제1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김태호, 2007, 「우리 고장 봉수대」, 『淸道文化』 제9집, 청도문화원.
- 홍성우, 2007, 「慶南地域 內地烽燧臺 考察」, 『학예지』 제14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김성미, 2008, 「창녕지역의 봉수 고찰」, 『한국성곽학보』 제13집, 한국성곽학회.
- 노명구, 2008, 「조선 후기 군사 깃발」, 『학예지』 제15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이철영, 2008, 「조선시대 동해안지역 연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57, 제17권2호, 韓國建築歷史學會.
- 이철영, 2008, 「울진 표산봉수의 복원 연구」, 『한국성곽학보』-제14집-, 한국성곽학회.
- 최형국, 2008, 「朝鮮後期 軍事 信號體系 研究」, 『학예지』 제15집,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김주홍, 2009, 「南海岸 地域의 沿邊烽燧」, 『慶南研究』 創刊號,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이철영, 2009, 「조선시대 내지봉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67, 제18권6호, 韓國建築歷史學會.
- 홍성우, 2009, 「慶南地域 山城 內 烽燧臺의 檢討」, 『咸安 武陵·安谷山城』, 함안박물관.
- 이철영, 2010, 「朝鮮時代 慶尙道地域 烽燧 研究」, 『大韓建築學會支會聯合論文集』 제12권4호, 大韓建築學會支會.
- 김주홍, 2012, 「조선시대 내지봉수의 시설 고찰」,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김현식, 2012, 「기장 남산봉수대 1차 발굴조사의 성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이창엽, 2012, 「기장 남산봉수대의 정비방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이철영, 2012, 「기장 남산봉수대의 구조에 관한 복원적 고찰」,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魏 堅, 2012, 「居延漢代烽燧의 初步研究」,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向井一雄, 2012, 「日本の 烽燧通信」,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許慧君, 2012, 「明代長城烽燧의 初步研究」, 부산광역시 기장군·(사)한국성곽학회, 『기장 남산봉수 조명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 調查報告書

- 圓寂山烽燧臺 保存會, 1991, 『梁山圓寂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報告』(慶南 梁山郡 상北面).
- 거제시, 1995, 『옥녀봉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5, 「강서구 천가동 연대산봉수대 지표조사」, 『박물관연구논집』 3.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7, 『密陽 推火山·終南山烽燧臺 復元資料收集基礎調查報告』.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釜山廣域市 機張郡 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書』.
- 남해군, 1999, 『금산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東亞大學校 博物館, 1999, 『佐耳山烽燧臺 地表調查報告書』.
- 남해군 창선면, 2000, 『대방산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1, 『統營 彌勒山烽燧臺』.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盈德大所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報告書』.
-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2, 『巨濟 江望山烽燧臺 精密地表調查報告書』.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3, 『晉州 廣濟山烽燧臺 試掘調査 報告書』.
-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3, 『우가산 유포봉수대』.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固城郡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 釜山博物館, 2004, 『爾吉烽燧臺』.
- 울산과학대학 건설환경연구소, 2004, 『蔚山 川內烽燧臺 學術調査報告書』.
-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2004, 『서생 나사봉수대』.
- 南道文化財研究院, 2005, 『光陽市の 支石墓와 護國抗爭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固城 曲山烽燧 試掘調査 報告書』.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山淸 笠巖山烽燧臺 地表調査結果報告』.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南海 雪屹山烽燧臺 地表調査 結果報告』.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6, 『晉州 廣濟山烽燧臺』.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6, 『울진군 봉수대 지표조사보고서』.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7, 『固城 天王岾烽燧臺 試掘調査 報告書』.
- 경남대학교박물관, 2007, 『統營 閑山島 望山 別望烽燧臺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宜寧 彌陀山烽燧臺』.
- 大邱大學校 中央博物館, 2007, 『盈德 烽燧臺 地表調査 報告書』.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7, 『咸安 巴山烽燧臺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7, 『巨濟 江望山烽燧臺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7, 『昌寧 餘通山烽燧臺 遺蹟』.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8, 『烽火山烽燧臺 地表調査報告書』.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창녕 태백산봉수대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우리문화재연구원, 2008, 『하동군 금성면 두우배후단지 예정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청도 오례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 대성동고분박물관, 2010, 『金海 盆山城烽燧臺』.
- 삼강문화재연구원, 2010, 『거제 지세포봉수대 시굴조사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1, 『의성 영니산봉수지』.

□ 單行本 및 略報告書 및 會議資料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90, 『韓國의 城郭과 烽燧』(하).
- 成地文化社, 1991, 『大東輿地圖의 研究』.
- 손영식, 1996, 『전통 과학 건축』, 대원사.
- 진용옥, 1997, 『봉화에서 텔레파시 통신까지』, 지성사.
- 의성문화원, 1999, 『義城의 烽燧臺』.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김난옥, 2000, 『고려시대 천사 천역양인 연구』, 신서원.
- 徐仁源, 2002, 『朝鮮初期 地理志 研究』, 해안.
- 김주홍 외, 2003, 『한국의 봉수』, 눈빛.
- 울산문화재 보존연구회, 2003, 『울산관방유적(봉수)』.
- 韓國學中央研究院, 2005, 『古文書集成』 82-寧海 務安朴氏篇(I)武毅公(朴毅長)宗宅-.
- 慶北大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營總』.
- 김주홍, 2007, 『한국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
- 김주홍, 2010, 『조선시대의 연변봉수』, 한국학술정보.
- 대경문화재연구원, 2008. 7, 『울진 표산봉수대 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용역 약보보고서』.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9, 『의성 영니산봉수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 경상문화재연구원, 2010, 『남해 · 하동 개발촉진지구 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발(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집』.

□ 日書

- 和田一郎, 1920, 「烽臺屯及煙臺屯」,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 宗高書房.
- 松田甲, 1928, 「李朝時代の 烽燧」, 『朝鮮』 254.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 平川 南・鈴木靖民 編, 1997, 『烽(とぶひ)の道』, 青木書店.

2. 참고자료

경상도지리지 慶尙道地理志

1425년(세종 7) 편찬된 경상도의 지지(地誌). 1책. 필사본. 규장각 소장.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道誌이며, 조선시대 지리지 중 가장 오래된 책이다. 1424년 세종이 당시 대제학이었던 변계량에게 지지 편찬의 명을 내려 전국 지리지인 『新撰八道地理志』를 1432년 완성하였다. 경상도 지리지는 이 과정에서 편찬된 도별 지지 중의 하나로 경상도관찰사 하연, 대구군사 금유, 인동현감 김빈 등이 편찬하였다. 내용은 예조에서 각 도에 보낸 13규식을 기준으로 하여 각 읍별로 연혁·계역·산천·관방·공물·성곽·진영·교통·호구·고적·토의·기후·염분·목장 등 자연·인문 전반에 대한 지역사정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독립된 지리지로 작성된 최초의 것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며 조선 전기의 경상도지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 慶尙道續撰地理志

1469년(예종 1) 편찬된 경상도의 지지(地誌). 1책. 필사본.

이 책은 1453년 시작되어 1477년(성종 8) 완성된 『八道地理志』의 편찬과정에서 작성된 도별 지지이다. 김해부사 이맹현, 경주교수 주백손, 성주교수 장계이, 안동교수 조옥 등이 편찬하였다. 이 책은 『경상도지리지』와 함께 조선 전기의 경상도지역 사정을 체계적으로 전해주는 자료이다. 또한 가장 오래된 도별 지지 중의 하나로서, 조선 초기의 지지 편찬과정과 그 특성을 알려주는 자료로서 그 의의가 크다.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實錄地理志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世宗莊憲大王實錄』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있는 전국 지리지. 8권 8책.

1424년 세종이 당시 대제학이었던 변계량에게 지지 편찬의 명을 내려 전국 지리지인 『新撰八道地理志』를 1432년 완성하였다. 그 뒤 이를 다소 수정, 정리하여 1454년(단종 2) 3월에 『세종실록』 중에 실록지리지로 포함되어 완성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현존하는 最古의 조선 초기의 전국 지리지로서 사서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토의 위치와 연혁에 치중하여 지명의 설명과 나열을 중요시한 『삼국사기』 지리지 체제를 탈피하여 인문지리, 자연지리, 경제·군사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의 지리지 편찬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뒤의 지리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지방 명칭의 변천, 행정 단위의 陞降 등이 기록된 연혁·소관조 등의 행정관계 사항과 호구·군정·공부·전결·토산 등의 경제·재정관계 사항, 명산·군영·성곽·목장·관방조 등의 군사 관계 사항, 성씨·인물조 등 주민들의 신분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여 조선 초기에는 통치체제 확립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5세기 조선시대의 경제·사회·군사·재정·교통·산업·지방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지리학과 지방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이행(李荇)·윤은보(尹殷輔)·신공제(申公濟)·홍언필(洪彦弼)·이사균(李思鈞) 등이 중종의 명에 따라 1530년(중종 25)에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보하여 만든 조선 전기의 전국 지리지. 55권 25책. 목활자본.

현전하는 것은 대부분 임진왜란 후 1611년(광해군 3)에 다시 간행한 목판본이다. 원래의 <동국여지승람>은 세종 대에 편찬된 지리지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세조 대부터 시작하여 1477년에 양성지(梁誠之) 등이 완성한 <팔도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詩文)을 첨가하여 1481년(성종 12)에 50권으로 완성했다. 이 책은 1485년(성종 16)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해, 1499년(연산군 5) 임사홍(任士洪)·성현(成俔) 등에 의해 2차에 걸쳐 교정과 보충이 이루어졌으며, 중종 대에는 새로운 보충작업이 시도되었다. 제1책의 서두에는 이행의 진전문(進箋文)·서문(序文)·교수관원직명(敎修官員職名)과 옛 구본(舊本) <동국여지승람>의 노사신(盧思愼)의 진전문, 서거정(徐居正)의 서문·교수관원직명·찬수관(撰修官) 및 목록이 있다. 책 끝에는 3차·2차·1차 수교를 담당했던 홍언필·임사홍·김종직의 발문이 실려 있어 수교과정을 살필 수 있다.

경도 앞에는 「팔도총도」, 각 도의 첫머리에는 도별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지도들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 사실적인 지도라기보다 祭禮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한 생략된 지도로서 사실적인 가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공간적 인식 증대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내용은 각 도의 연혁과 관원을 개괄한 후 진관 소속별로 목·부·군·현의 건치연혁 및 관원·군명·성씨·풍속·형승·산천·토산·성곽·봉수·궁실·누정·학교·역원·창고·불우·사묘·능묘·고적·명환·인물·우거·효자·열녀·제영 등의 조목 아래 해당 내용을 나열식으로 기술했다. 앞에 1차본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기록한 후, 새로 증보된 내용은 각 항목의 끝에 '신증'이라 밝히고 첨기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의 사회와 지역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이다. 더욱이 간행본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널리 보급되어 조선 후기까지도 이 책이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이 책은 경제·군사·행정적인 측면보다 인물·예속·시문 등이 강화되어 있어 조선 사회의 유교적·문화적 성격으로의 변모를 보여주며, 세종 대의 지리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동국여지지 東國輿地志

1656년(효종 7) 유형원(柳馨遠)이 편찬한 전국 지리지. 9권 10책. 필사본.

1660년대 후반까지 후보하였다. 내용은 권1 경도(京都)·한성부·개성부, 권2 경기, 권3 충청도, 권4 상하(上下) 경상도, 권5 상하 전라도, 권6 황해도, 권7 강원도, 권8 함경도, 권9 평안도로 되어 있다. 이 중 권4의 상(上)에 해당하는 경상도 35개 군현의 읍지가 결여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7세기 이래 실학과 지리학의 주요한 흐름이 된 강역·위치·지명 등 역사지리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지리지에 결합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자국(自國)·자기(自己) 중심적인 공간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역(疆域)을 중시한 결과 북부지방과 만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둘째, 지역을 위주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지를 편찬하여, 지역의 실상에 접근하는 지지를 편찬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실적인 국토인식은 산천, 형승, 고적, 인물 관계 기록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셋째, 실증적이고 실용적인 지지 편찬방식이 돋보이는데, 이 책은 지역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화하려 하였다. 군현마다 저자가 상세하게 수정한 곳, 앞으로 보충해야 할 곳, 가보지 못한 곳 등을 나누어 표시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동국여지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私撰 全國地理志로서 16세기 후반부터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私撰邑誌의 성과를 종합한 책이다. 저자는 읍지가 지니는 지방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시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과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

이 책은 역사 지리적 측면을 중시하고, 국토를 실증적이고 사실적으로 인식하며, 실용적인 지리지를 편찬하여 사회개혁안의 자료로 삼고자 하였던 실학자 유형원의 사고가 담겨 있으며, 신경준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실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여지도서 輿地圖書

1757년(영조 33)~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成冊)한 전국 읍지(邑誌). 55책. 필사본.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營誌 : 監營誌 6, 兵營誌 7, 水營誌 3, 統營誌 1)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은 1757년 홍양한(洪良漢)이 임금에게 아뢰는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팔도감사에게 명을 내려 각 읍에서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 읍지의 호구조의 기준 연도가 1759년(己卯帳籍)인 점으로 볼 때, 1760년 이후에 수집된 읍지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 목적은 편성된 지 270여 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수(改修)·속성(續成)에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읍지 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룩됨을 볼 수 있다. 각 읍의 첫머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어 있는 점이다. 여지도(輿地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여지도서』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여지도서』는 공식적 기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의 지방 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동지도 海東地圖

지도는 영조 때 제작된 전국 군현을 총망라한 대표적인 전국 군현지도집이다.

이 지도책은 조선전도 팔도 도별지도 전국 군현지도에 천하도(天下圖), 중국십삼성도, 유구도, 왜국도, 요계관방도 등을 포함시켜 단순한 군현지도집만이 아닌 주요관방지도(국경방비지역지도)와 주변의 중국·유구·일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도책이다. 채색필사본으로 8책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후기 숙종 대 이래 영조, 정조시대를 거치며 국가는 변화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전국 지리지나 관찬지도를 제작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동지도도 제작되었다. 전국 군현을 망라한 해동지도의 군현지도는 지도집을 제작하기 위해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군현지도집의 지도를 편집한 회화식 군현지도집이며, 경기·전라·경상 등의 일부 군현지도에는 건치연혁·산천·토산·서원·향교·풍속 등에 관한 설명문을 포함시켜 지리지적 항목을 추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연려실기술 燃藜室記述

조선 후기의 학자 연려실 이공익(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야사총서(野史叢書)이다.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59권 42책이다.

저자가 부친의 유배지인 신지도(薪智島)에서 42세 때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타계(他界)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였다. 400여 가지에 달하는 야사에서 자료를 수집·분류하고 원문을 그대로 기록하였다. 원집(原集) 33권, 속집(續集) 7권, 별집(別集) 19권 등 3편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먼저 태조 이래의 역대 왕별로 왕실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다시 재위기간 중에 있었던 정치적 특기 사항을 싣고 있다. 그 다음 그때 활약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 원칙은 정승을 지낸 자, 문형(文衡)을 장악한 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등 여러 부류로 나누어 서술하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물평을 한꺼번에 싣도록 했다. 이것이 원집(原集)이다.

속집은 숙종조 47년간(1674~1720)의 일들을 원집의 형식대로 적었다. 별집은 조선시대의 역대 관직을 비롯하여 각종 전례(典禮)·문예·천문·지리·변어·역대 고전 등 항목별로 그 연혁을 수록하고 역시 인용한 책 이름을 부기하였다.

저자가 생존 시부터 원집과 별집의 전사본이 널리 퍼져 正本이 없으므로, 저자는 본문에 여백을 두고 그때 그때 새로운 사실을 덧붙여 나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선시대 사서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저작인 이 저서는 객관적인 紀事本末體로 기록되었다는 점과 사건이 조금도 가해지지 않은 명석(明皙)한 사관(史觀)에 입각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공정한 필치로 엮여졌다는 점에서 가히 역사서의 백미편(白眉篇)이라 할 수 있다.

경상도읍지 慶尙道邑誌

1833년(순조 33)경에 편찬된 경상도 71개 군현의 읍지를 합편한 지지(地誌). 20책. 채색지도가 첨부된 필사본. 규장각 소장.

제8책의 김산·고성·영덕·의성의 읍지는 견본인데, 1872년경에 편찬된 『영남읍지』의 내용을 전사하여 보충하였기 때문에 책의 내용과 양식 등이 다르다. 각 읍의 책머리에는 채색의 읍지도가 있고, 이어서 건치 연혁·군명·관직·성지·산천·도서·풍속·방리·호구·전부·군액·성지·임수 등 총 4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18세기 중엽에 전국 각 읍의 읍지를 합편한 『여지도서』 이후 70여 년 만에 편찬된 도지로서 19세기 전반의 경상도지방 실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좋은 자료이다. 『여지도서』와 비교해 볼 때 성지(城池)·임수·관방·진보·총묘·장시·환적(宦蹟)·과거·비판(碑板)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고, 호구와 도서가 독립항목으로 분리되는 등 사회·경제·군사에 관련된 내용이 크게 보강되었다. 또한 수록 내용도 일반 읍지에 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호구·전부 등 통계적인 내용이 1831~183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성도 뛰어나다.

증보문헌비고 增補文獻備考

활자본. 250권 50책. 『文獻備考』라고도 한다.

최초의 편찬은 1770년(영조 46)에 홍봉한(洪鳳漢) 등이 왕명을 받아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刑)·전부(田賦)·재용(財用)·호구(戶口)·시적(市積)·선거(選舉)·학교(學校)·직관(職官)의 13고(考)로 분류하여 100권으로 만들어 『동국문헌비고』라 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어긋난 점과 누락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에 따라 법령과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1782년(정조 6) 왕명으로 이만운(李萬運) 등에게 이를 바로잡아 보편(補編)토록 하였다. 이것이 제2차의 편찬이며, 9년여에 걸쳐 『동국문헌비고』의 13고(考)에 대해 오류를 바로잡고 누락된 것을 채우는 한편, 새로이 물이(物異)·궁실(宮室)·왕계(王系)·씨족(氏族)·조빙(朝聘)·시호(諡號)·예문(藝文)의 7고(考)를 증보하여 146권을 편성하고 이를 『增補東國文獻備考』라 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간행되지 못하고 100여 년 뒤인 고종 광무 연간에 이르러 제3차 보편을 하였다. 즉, 1903년(광무 7)에 특별히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고 박용대(朴容大) 등 30여 명의 문사들에게 명하여 이를 보수하게 한 것이다.

박용대 등은 5년여에 걸쳐 『增補東國文獻備考』에 수록된 20고 중에서 물이는 상위에, 궁실은 여지(輿地)에, 시호는 직관에 포함시키고 왕계는 제계(帝系)로 고쳐서 씨족(氏族)에 포함시켰다. 또 조빙을 교빙(交聘)으로 고쳐 상위·여지·제계·예·악·병·형·전부·재용·호구·시적·교빙·선거·학교·직관·예문의 16고 250권으로 편성하고 이를 『증보문헌비고』라 이름 붙여 1908년(융희 2)에 간행하였다.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백과사전으로서 제도·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대동지지 大東地志

김정호(金正浩)가 쓴 한국 지리서, 필사본. 30권 15책. 고려대학 소장본은 저자의 친필로 추정된다.

1861년(철종 12) 편찬에 착수하여 1866년까지 보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의 지도 제작은 지리서 저술과 짝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책은 『靑邱圖』 『東輿圖』 『대동여지도』로 진전시켜 온 지도 제작과 『東輿備志』 『輿圖備志』라는 지리서 제작의 성과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다. 또한 조선 지지 편찬의 전통과 실학적 지리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한국 지리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고 평가된다.

서두에 총 목차와 범례 및 인용서적을 두었다. 권1에서 권24까지가 중심내용인 『八道地志』인데, 먼저 도성의 각종 궁궐과 관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이하 한성부, 경기도의 4유수부(留守府), 팔도의 각 군현별로 연혁·고읍·방면·산수·형승·성지·영아·진보·봉수·창고·역참·진도·교량·목장·토산·궁실·누정·묘전·능침·단허·사원·전고 등을 수록하였다.

나머지는 〈山水考〉 〈邊方考〉 〈程里考〉 〈歷代志〉로 구성되었다. 이 중 권25·26의 〈산수고〉와 〈변방고〉는

전하지 않는다. <정리고>는 전국의 도로와 교통 행정, 중국·일본 등과의 교통로를 담았다. <역대지>는 단군 이래의 역사지리에 대한 것으로 역대 지명의 위치 추정, 지명 변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남지 嶠南誌

조선시대 경상도에 관한 지리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리지들은 官撰地理志와 私撰地理志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나라에서 편찬위원을 임명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책이 만들어지게 된다. 반면에, 후자는 개인적인 관심에서 편찬된 것이다. 관찬이건 사찬이건 조선시대의 지리지 편찬작업은 광무 3년(1899)에 있는 각 관읍지(官邑誌) 제작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그 이후의 지리지 편찬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방편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남지는 원래 고종 4년(1867)에서 고종 10년(1873)까지 경상도관찰사로 있던 김세호(金世鎬)가 경상도 71개 군현지(郡縣誌)를 모아 편찬한 경상도 지리지였는데,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39년에 성주(星州)의 정원호(鄭源鎬)가 김세호 본에 증보, 첨삭을 가하여 전 76권 15책으로 편찬, 인쇄한 것이다.

해방 이전까지로 보면, 경상도의 마지막 도지가 『교남지』이다.

경국대전 經國大典

조선 세조(世祖)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成宗) 때 완성된 조선시대 통치의 기본 법전. 조선 건국 전후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교지(教旨)·조례(條例) 중 영구히 준수할 것을 모아 엮음. 6권 4책. 인본(印本).

조선왕조 500여 년간 이용된 기본 법전으로, 조선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 법전이다. 조선 초기부터 이루어져 오던 법전 편찬이 세조와 성종대에 이르러 집대성하여 완료되었으며, 조선봉건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의 법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 종합적 성격을 가진다. 편찬에 참여한 관료들도 최항, 노사신, 강희맹, 서거정 등 당대의 거유(巨儒) 문인 학자이다. 역사와 법제사 연구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각 부문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며, 조선사회를 전반적으로 해명하고 그 성격과 특징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기초자료로 중요하다.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太祖)에서 철종(哲宗)에 이르는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편찬·기록한 1,893권 888책. 태조·정종·태종까지의 실록은 필사본, 세종실록 이후는 활자본.

책 이름을 〈태조실록〉·〈세종실록〉 등으로 부르기도 하나 원래는 해당 왕의 묘호(廟號)·시호(諡號) 등을 합해 완전한 책명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체(史體)는 각 왕을 중심으로 연월일 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 형식은 일찍이 중국의 양(梁)나라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중국의 역대 왕조는 대대로 이 선례를 따라 실록을 편찬했다.

대전회통 大典會通

6권 5책. 목판본.

1865년(고종 2) 왕명에 따라 조두순·김병학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 아래에 추보한 뒤 출판했다. 체제는 주관제도(周官制度)와 〈대명회전 大明會典〉을 모방하여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나누어 편집했다. 이전 31, 호전 29, 예전 62, 병전 53, 형전 39, 공전 14개 항목으로 총 228개 조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국대전〉·〈속대전〉·〈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편찬한 것이므로 이들 법전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본문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새로 보록한 것은 ‘보’(補)자를 음각(陰刻)하여 구별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반의 각종 제도와 습관을 이해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으며, 특히 일종의 행정 법전으로서 관리가 준수해야 할 각종 규준(規準)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육부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사항을 나누지 않았으며, 사인(私人)에 대한 포고와 관리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의례, 금제(禁制)를 모두 일괄하여 규정함으로써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또 조종(祖宗)의 유법(遺法)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당시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법조문을 존속시키거나 대외적 체면을 중요시하여 실행 불가능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대전회통〉은 조선 후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심화된 중세체제의 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써 그 정비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전 편찬이 요청되어 편찬한 것이었다. 즉 임진왜란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농촌의 사회구성뿐 아니라 아울러 봉건적 신분관계도 변동하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중세체제를 이념적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주자학에 대응해 실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이 대두함으로써 봉건체제가 크게 동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흐름에 대응해 1746년(영조 22)에는 〈경국대전〉 이후의 모든 법전을 모아 〈속대전〉을 편찬했고, 1786년(정조 10)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후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갔고, 이러한 체제

위기에 대한 수습책의 일환으로써,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삼정의 개혁을 위해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따라서 <대전회통>은 체제위기에 대응하여 통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선의 모든 법전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치는 방대한 법제사회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만기요람 萬機要覽

조선 순조 8년(1808) 경에 시임(時任) 호조판서(戶曹判書) 서영보(徐榮輔)와 부제학(副提學) 심상규(沈象奎)가 비국유사당상(備局有司堂上)으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들어 찬진(撰進)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다. 초본(草本)을 그대로 이용했으나 간행하지는 않았다. 완성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관찬 사서의 기록이나 수록된 통계자료로 볼 때 1808년(순조 8) 무렵으로 짐작된다. 책의 권수는 사본(寫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집옥재본(集玉齋本)을 기준으로 보면 재용편은 6편 62절목, 군정편은 5편 23절목으로 분류·서술했다. 각 항목마다 간략한 연혁과 각종 통계자료, 법규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관청과 제도의 실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군정편의 권1은 5위(五衛)·호위청·비변사 등 군무를 관장하는 주요기관의 설립경위와 제도의 변화과정과 기능, 직제에 관해 기록했다. 경영진식(京營陣式)에서는 국왕이 5군영을 사열할 때 각 군영의 배치를 설명했고, 형명제도(形名制度)에서는 각종 군기(軍旗) 및 신호용 기구를 설명했다. 조점(操點)은 군사조련에 관한 내용, 봉수(烽燧)와 역체(驛遞)에서는 군사상의 교통·통신에 관한 내용을 서술했다. 비변사에서는 조선 후기의 가장 중요한 관서의 하나인 비변사의 직제, 회의규정, 각종 관할 사항의 각종 규정과 재정 등에 대하여 밝혔다. 권2에는 병조의 설치경위와 임무, 직제, 정원,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과 구체적 사례와 서식을 기록했다. 용호영과 훈련도감에 대해서도 설치연혁 및 정원, 선발·조련과 각종 규정,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3은 금위영·어영청·충용청의 설치연혁, 정원 및 배치, 취재(取才), 조련과 구체적 임무, 재정 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권4는 관방(關防)·해방(海防)·주사(舟師)에 관해 서술되어 있다. 관방에서는 한성을 비롯해 개성부·수원부·강화부·광주부와 전국 8도의 성곽을 비롯한 방어시설, 주요방어요충지를 기록했다. 해방에서는 해안방어를 위한 요충지를 기록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일본에 이르는 해로를 명하고 있다. 주사에서는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경기수영(京畿水營)·삼도통제영을 비롯한 각처의 수영에 관해 속읍(屬邑)·속진(屬鎭)·병선(兵船)·병력 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전선(戰船)의 개조 연한 등을 밝혔다. 권5는 육진개척(六陣開拓)·백두산정계(白頭山定界)·폐사군사실(廢四郡事實)·원주사실(原州事實)·가도시말(加島始末) 등으로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래 일어난 국방관계의 주요사실들을 정리했다.

이 책은 국왕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편찬해 조선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군사제도를 살펴볼 수 있고,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운영상황도 실려 있어 18~19세기 사회경제사·정치사·군사제도사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이다.

지승 地乘

地乘은 군사요지인 일부의 관방처와 전국의 군현을 총 6책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식 지도책으로 각 책의 크기는 세로×가로가 27.0×19.0cm이다. 1책에는 경기도, 2책에는 충청도, 3책에는 경상도, 4책에는 전라도, 5책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6책에는 함경도와 강원도가 수록되어 있다.

필사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776년에 尼城과 楚山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충청도의 尼山과 평안도의 理山이 변경된 이후의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어 빨라도 1776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1787년에 신설되는 장진이나 1789년에 이동하는 수원의 읍치, 1795년에 始興으로 변경되는 경기도의 衿川, 1800년에 魯城과 利原으로 변경되는 충청도의 尼城과 함경도의 利城 등의 지명 변화가 본 지도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참고용어

- 1) 봉수(烽燧) : 횃불(烽)과 연기(燧)로써 밤·낮으로 신호(急報)를 보내던 통신방법이다. 고려 의종 3년(1149)에 서북면 병마사(兵馬使) 조진약(曹晉若)의 상주(上奏)에 의거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되 평상시에는 한번씩 올리고 2급(急)에는 2거(炬), 3급(急)에는 3거(炬), 4급(急)에는 4거(炬)씩 올렸다. 봉수대에는 방정(防丁) 2명, 백정(白丁) 20명을 두고 각각 평전(平田) 1결(結)을 주도록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123-1, 병고 15, 봉수 1). 조선시대에는 세종 대에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는데 평시에는 봉화를 1거(炬), 적의 모습이 나타나면 2거(炬), 적이 국경에 접근하면 3거(炬), 국경을 넘어서면 4거(炬), 접전을 하면 5거(炬)를 올렸다. 그러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연락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봉졸(烽卒)들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 또 각 지방에서 신호가 오면 서울에서는 수직금군(守直禁軍)(五員)이 병조에 보고하였고 지방에서는 오장(伍長)이 관할 진장(鎭將)에게 보고하였음(《만기요람》 군정편1, 봉수).
- 2) 5거제 : 세종 원년 5월 병조의 계(啓)에 따라 정하였다. 즉 종전에는 무사 시(無事時)에 1거(擧), 유사 시에 재거(再擧)하였으나 앞으로는 왜적(倭賊)이 해중(海中)에 있으면 재거(再擧), 근경칙(近境則) 3거(擧), 병선(兵船)과 전투하면 4거(擧), 적(賊)이 육지에 내려오면 5거(擧)로 하고, 또 육지의 적변(賊變)에서는 적이 경외(境外)에 있으면 재거(再擧), 근경칙(近境則) 3거(擧), 범경칙(犯境則) 4거(擧), 적과 더불어 전투하게 되면 5거(擧)로 한다는 것이다. 낮에는 봉화 대신 연기로 하고 부주의하여 봉화를 관망한 봉화간(烽火干)에 대해서는 소재지 관청에서 의율과죄(依律科罪) 한다고 하였다. 봉화불 올리는 자를 간(干) 혹은 척(尺)이라 하였는데 신랑역천(身良役賤)이었다(《세종실록》, 세종 원년 5월 경오). 모든 봉수대에는 5개의 봉화소(烽火所)가 있으므로 사태의 완급에 맞는 갯수의 봉화를 사용하여 거화(擧火)하였음.
- 3) 오장(伍長) : 봉수대에서 봉수군과 함께 거처하면서 그들을 감시·감독하는 일을 맡은 봉수대의 책임자였다. 세종 28년경부터 봉수대에 감고(監考)를 두었으며 그 후 감고가 《경국대전》에서는 오장(伍長)으로 개칭되었다. 서울에 있는 남산봉수대에는 전국의 봉수(통신)가 집결되는 곳으로서 오장(伍長) 대신 오원(五員)(司直 이하 司勇까지)을 두었다. 《대전통편》에서는 오원(五員) 대신 수직금군(守直禁軍)이 병조(兵曹)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 봉화소에 사고가 있으면 지방관에게 즉시 알리고 무사하면 10일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였다. 세종 29년 3월 병조의 보고에 의한 의정부의 계(啓)에 따라 감고(監考)와 봉화(烽火) 해망인호(海望人戶)에게는 공부(貢賦) 이외의 잡역은 모두 면제하고 감고가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6년마다 1차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권115-16, 세종 29년 3월 병인). 감고(監考)나 오장(伍長)의 신분은 봉수군보다는 우위였겠지만 양인신분(良人身分)인 듯하고 봉수대 부근에서 사는 사람으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속대전》 병전, 봉수조(烽燧條)에 있는 감고(監考)는 품관(品官)으로서 조선 전기의 감고(伍長의 전신)와는 신분이 달랐지만, 봉수대의 감독업무를 맡은 점에서는 그 직무가 유사하였음.

- 4) 목멱산(木覓山) : 서울 남산을 말하며 인경산(引慶山)이라고도 한다. 목멱이란 이름은 고구려 서울 평양의 목멱산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이 목멱산봉수대는 조선 봉수체계의 중심으로서 각 지방에서 전해오는 봉수를 최종적으로 받는 곳이다. 목멱산봉수대는 모두 5개소로 되어 있으며 제1소(臺)는 함경·강원도에서 오는 신호를 양주(楊州)(현 성동구)의 아차산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고, 제2소에서는 경상도에서 오는 신호를 광주(廣州)의 천천현(穿川峴)(청계산 근처)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으며, 제3소에서는 평안·황해도지역의 육로에서 오는 신호를 모악산(母岳山)(서대문) 동봉(東峰)을 통해서 전달받았다. 또한 제4소에서는 평안·황해도지역의 해로(海路)에서 오는 신호를 무악산 서봉(西峰)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제5소에서는 전라·충청도 지역에서 오는 신호를 양천(陽川)의 개화산(開花山)봉수대를 통해서 전달받았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5·16, 한성부, 봉수). 봉수대는 전국 각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3,646명의 봉수군이 있었다고 함.
- 5) 낭분(狼糞) : 변경에서 봉화(烽火)를 올릴 때 이리의 똥을 쓰는데, 그 연기가 위로 곧장 올라가고, 바람이 불어도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됨.
- 6) 남소(南所) : 사소(四所)의 하나. 사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순찰하는 임무를 맡은 네 곳으로서, 동소(東所)·서소(西所)·북소(北所)·남소(南所)임. 《예종실록》 6권 원년 6월 29일조에 보면, 동소는 창덕궁(昌德宮)의 순청(巡廳)이고, 서소는 운종가(雲從街)의 순청이고, 북소는 의금부(義禁府)이고, 남소는 용양위(龍梁衛)라고 하였음.
- 7) 보(保) : 군인 등 국역(國役)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살림이나 자장(資裝)을 돕도록 맡겨주는 실역(實役)에 종사하지 않는 장정(壯丁)을 말하는 것인데, 본디 정병(正兵)에게는 1보(一保 : 장정 두 사람)를 맡겨주는 등의 규정이 있었으나, 뒤에는 쌀·배 등으로 수납하여 관에 대급(代給)하기도 하였음.
- 8) 연대 : 조선조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국경지대에 설치한 봉수대(烽燧臺). 적이 나타나면 연기와 햇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신호(信號)를 쏘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서 성(城)이나 보(堡)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음. 그 모양은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尺), 빗변 한 변의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壕字)를 파고, 목익(木戱 : 나무 말뚝)을 여러 겹으로 세웠음.

연대 측면에는 연대 상부에 오르기 위한 나선형의 오름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대 상부의 중앙에는 원형 혹은 방형의 연소실이 마련되어 있다. 연대의 평면은 보통 원형, 방형, 말각방형 등임.

- 9) 연굴(煙窟) : 봉수대의 불을 피우는 시설 중 연기가 빠지는 굴로 연조와 같은 의미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내지봉수에 쓰이는 용어로 아궁이, 봉조, 화덕이라고도 함.
- 10) 연통(煙筒) : 봉수대에서 연조 상부에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설치한 시설.
- 11) 참발소(站發所) : 관선(官船)이나 관마(官馬)를 갖추어 두고 명령·보고의 전달이나 관원·관물의 전송(轉送) 등을 맡아 보는 곳.
- 12) 봉수군(烽燧軍) : 봉수를 알리는 일을 맡아보던 군사를 말한다. 봉졸, 봉군, 봉화간, 간망군, 수망인, 후망인, 해망인, 연대군, 수직군 등과 같은 말.
- 13) 음칭일기(陰晴日記) : 일종의 날씨관련 기록이다. 기후에 따라 통신방법을 달리해야 했던 당시 날씨 상황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일기는 조선 후기 봉수를 관장하는 각도의 부·목·군·현에서 상부기관에 음칭일기, 청명일기(晴明日記), 풍변일기(風變日記) 명으로 시행한 것을 말한다.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 일기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1832년(순조 32) 개목산봉수별장 권 모가 안동대호부에 보고한 안동 개목산봉수 음칭일기 6건이 있음.
- 14) 봉대(烽臺) : 봉수와 봉화를 달리 말하는 조선 후기의 용례로 봉수대의 약칭.
- 15) 봉돈(烽墩) : 횃불과 연기로 대응봉수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설치한 약간 높직하고 평평한 땅 또는 시설물을 말하는 용어이다. 수원화성의 봉돈이 대표적임.
- 16) 멸화기(滅火器) : 봉수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이다.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확인된 멸화기는 없지만, 봉수 비치물목에서 많이 확인됨.
- 17) 내지봉수(內地烽燧) : 연변봉수와 경봉수를 연결하는 내륙 소재의 봉수로 달리 복리봉화(腹裏烽火)라고도 함.
- 18) 권설봉수(權設烽燧) : 조선 후기 군사적으로 중요하였던 영, 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본읍으로만 연락하도록 운용되었던 봉수이다. 권설봉수의 기록은 대동지지에서 잘 확인됨.
- 19) 거화법(炬火法) : 봉수는 봉(횃불·炬)과 수(연기·煙)로 국경과 해안의 안위를 약정된 거수에 따라 전하던 군사통신체계이다. 거화법의 종류에는 횃불을 드는 거화(炬火),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보고하는 치고(馳告), 화포나 나팔로써 전달하는 신포(信砲), 깃발로써 신호하는 현기(懸旗) 등이 있음.

- 20) 방호벽(防護壁) : 봉수군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연조의 불이 산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방화용시설을 말한다. 원장, 방화석축, 방화장, 방화벽 등과 같은 의미.
- 21) 별장(別將) : 조선시대 무관으로 주로 장군들이었다. 훈련도감에 2명이 있었고, 어영청과 호위청 등 군사기관에는 모두 별장이 있었다. 훈련도감(2명)과 어영청(1명)은 정3품 무관이었고 용호영의 금군 별장은 중2품의 고관이었다. 수어청의 별장 2명은 여주목사와 이천부사가 겸임하였으므로 문관 출신 별장도 있는 셈이다. 관리영에도 2명의 별장이 있었다. 한편 지방의 산성이나 나루터에도 별장 1명씩이 있었는데 이들은 '부사용'의 직급으로서 가장 직위가 낮은 중9품이었다. 별장은 지방의 산성, 포구 등의 수비를 담당한 중9품의 무관직을 뜻함.
- 22) 감관(監官) :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회계 등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벼슬아치를 지칭하는 관원을 뜻한다. 성을 축조할 때 감독하는 관원 또는 봉수대의 봉줄을 감독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
- 23) 감동(監董) : 옛 성역(城役)을 비롯한 국가공역을 맡아 감독하는 일 또는 관원.
- 24) 통아(桶兒) : 짧은 화살을 쏠 때 살을 넣어서 시위에 메어 쏘는 가느다란 나무통. 화살은 이통을 거쳐 나가고 통은 앞에 떨어짐.
- 25) 유거(杻炬) : 싸리나무를 묶어서 만든 화.
- 26) 조소(條所) : 줄바. 짚이나 삼 따위로 꼬아 만든 바.
- 27) 공석(空石) : 아무것도 담지 아니한 빈 섬.
- 28) 초석(草席) : 짚, 왕골, 부들 따위로 엮어 만든 자리.
- 29) 사리(沙里) : 국수, 새끼, 실 따위를 형클어지지 않게 사리어 놓은 뭉치.
- 30) 거리(巨里) : 끈, 새끼, 철사 따위의 길이를 헤아릴 때, 열 발을 단위로 이르는 말.
- 31) 토목(吐木, 土木) : 토막나무.

慶南地域의 烽燧

—경남, 부산, 울산지역 문헌자료—

발행일 2012년 11월 30일

발 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Tel. 055)211-9011
Fax. 055)211-9029
www.gaya.go.kr

제 작 컴엔시 Tel. 053)252-6336

발간등록번호 11-1550160-000014-01

ISBN 978-89-299-0001-4 93910